

연구보고 2008-02

지방자치단체별 육아지원 실태와 효과 분석

유 희 정
이 경 숙
최 진

육아정책개발센터

머 리 말

그간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정책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게 주목된 적은 없었으나 정책 기획과 집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비중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차별적인 육아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어떤 세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사업 수행은 효율적인지, 그리고 지역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파악 및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없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에 의해서 육아지원 정책의 격차가 생겨난다면 보편적 서비스를 특징으로 하는 육아지원정책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 특히, 2008년도 육아정책 예산이 GDP의 0.47%에 이를 정도로 증가되었지만 예산지원이 육아지원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투입되었는지에 대한 성과 평가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육아지원정책의 수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행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 결과의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지원정책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첫째, 16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육아지원정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과 유아 1인당 유아교육지원액을 산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지원 정책의 격차를 가늠해보았다. 둘째,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유치원장과 보육시설장, 학부모들의 인지도와 만족도를 조사 분석하고 셋째, 16개 지방자치단체별 육아지원정책의 투입 대비 산출 효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하여 조사에 참여해주신 유치원장, 유치원 학부모, 보육시설장, 보육시설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육아지원정책의 세부적인 내용과 영유아 1인당 비용산출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지방정부와 시도 교육청 정책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 효과 분석 방법론에 대해 자문해 주신 전문가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개발센터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08년 12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조복희**

연구 요약

1. 서론

1. 연구 목적

- 육아지원정책의 수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행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 결과의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지원정책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2. 연구내용

- 구체적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지원정책을 국고보조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 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운용 및 지원 사업 규모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 보육비·교육비 지원을 포함하여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취원하고 있는 아동 1인당 투입되는 비용을 산출하여 비교분석하였다.
 - 자료포락분석(DEA기법)을 활용하여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인력과 산출간의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지원정책을 예산, 운영 및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정책 산출로 범주화하여 수요자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 일본, 호주, 미국 등 선진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 및 재정배분 역할과 지방자치단체 육아지원정책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다.

3. 연구방법

- 문헌연구를 통하여 16개 지방정부의 특수시책과 시도교육청 사업을 예산과 관리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16개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한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유치원장 450, 보육시설 시설장 459, 유치원 학부모 400, 보육시설 학부모 554명에 대한 정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II.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지원정책 실태

1. 육아지원정책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 국비와 지방비의 예산 부담 비율은 보육예산이 2008년 1:1.4이며 유아교육예산은 2008년 유아교육 지방이양으로 국비 약 1억원을 제외한 1조 589억원의 예산이 모두 지방비로 충당되고 있다.
- 지방정부 특수시책 예산은 2008년 3,750억원으로 전체 보육 예산의 8.7%를 차지한다. 서울이 1,437억원인 반면 광주는 10억으로 지방자치단체별 편차가 크다.

2.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운용 및 사업 현황

- 2008년도는 134개 시·군·구가 자체 보육계획을 수립하였고, 108개 군·구 교육청이 자체 유아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다.
- 2008년 지방정부들은 3개에서 25개 사이의 시·도 단위의 특수시책 사업을 실시하였고, 군·구 단위에서는 평균 8.4개에서 34.7개 사이의 특수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방정부의 특수시책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에서 수행되는 기본적인 재정지원 이외의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종사자 교육과 인프라 구축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 시도교육청은 각종 유아교육비, 담임수당, 중일제 및 시간연장제 관련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도교육청별로 특화된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과 종사자 교육 및 장학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별 아동1인당 비용지원 현황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 평균값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2008예산기준)

단위 :원

구분	평균값	최고값	최저값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 총액*	인건비 지원시설	935,075	1,035,991	818,190
	인건비 미지원시설	738,672	796,157	719,504
영유아 1인당 월 인건비**	인건비 지원시설	364,215	644,671	444,661
	인건비 미지원시설	11,402	59,980	757
영유아 1인당 월 운영비	인건비 지원시설	7,277	22,353	205
	인건비 미지원시설	4,166	19,529	1,873
영유아 1인당 월 환경개선비	인건비 지원시설	6,610	15,379	369
	인건비 미지원시설	1,007	7,421	0
영유아 1인당 월 평가인증 지원비	모든시설	1,699	4,537	570

*와 **는 0세아 기준

*보육료 동일

시도교육청별 유아 1인당 지원액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유아 1인당 지원액 현황(2008예산기준)

단위: 원

구분	평균값	최고값	최저값	
유아 1인당 지원총액*	국공립	376,195	519,222	261,575
	사립	9,643	20,216	2,598
유아 1인당 인건비**	국공립	248,589	340,622	165,862
	사립	64,708	159,727	4,770
유아 1인당 운영비	국공립	64,708	159,727	4,770
	사립	4,045	11,721	866
유아 1인당 월 시설비	국공립	24,919	86,438	623
	사립	1,349	3,086	0
유아 1인당 목적사업비 등	국공립	41,539	101,705	1,600
	사립	5,150	15,858	0

*와 **는 3세아 기준, 제주시제외

III. 주요국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지원정책

- 최근의 주요국 육아지원정책은 가족지원과 육아지원을 통합하여 접근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 일본은 중앙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 있는 육아지원정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최근에는 중앙정부의 종합적인 육아지원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내용과 목표치를 수립하여 완성시키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 호주 역시 연방정부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주정부들은 주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역별로 나름대로의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과 지방의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육아지원관련 사무소 등을 운영하면서 현장밀착형·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 미국 연방정부는 법률 제정과 재정지원과 관련된 각종 기금 사업들을 수행한다. 주정부들은 연방정부의 기본적인 육아지원 규정을 따르지만 주정부마다 차별적인 육아지원기관 질적 평가체계나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고 대학 및 복지 기관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민/관 협력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IV.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지원정책 효과 분석

1. 정책의 객관적 성과 분석

- 16개 지방정부의 보육정책의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8개 지방정부가 효율적이며 8개 지방정부는 67.0%에서 99.9%의 효율성을 나타냈다. 16개 지방정부를 효율성 점수와 준거집단으로 참조된 횡수를 종합하여, 효율성이 가장 높은 3개 집단, 다소 높은 5개 집단, 다소 낮은 5개 집단, 가장 낮은 3개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6개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정책의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11개 시도교육청이 효율적이며 5개 시도교육청은 63.9%에서 71.3%의 효율성을 나타냈다. 16

개 시도교육청을 효율성 점수와 준거집단으로 참조된 횡수를 종합하여, 효율성이 가장 높은 5개 집단, 높은 6개 집단, 낮은 5개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정책의 주관적 만족도 분석

- 16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육아지원정책별로 수요자들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재정지원과 운영지원 정책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지역 특수한 정책을 만들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영역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족도 수준이 낮았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분야는 보육시설 평가인증과 유치원 장학이었다.
- 수요자 집단별 만족도는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재정지원, 보육/교육과정 전문성, 관리감독, 지역 특수한 정책 모두에 대해서 집단별로 보육시설 시설장과 유치원 원장보다는 보육시설 학부모와 유치원 학부모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다.
- 보육시설 시설장과 학부모들은 현재의 보육정책 결정에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바람직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보육시설 시설장은 중앙정부 정책과 보육시설 시설장의 영향력 증대를, 학부모는 전문가/학자와 학부모/학부모 단체의 영향력 증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었다.
- 유치원 원장과 학부모들은 현재의 유아교육정책 결정에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바람직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유치원장은 중앙정부 정책과 전문가/학자 또는 유치원장의 영향력 증대를, 학부모는 전문가/학자와 학부모/학부모 단체의 영향력 증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었다.

V.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지방자치단체들의 육아지원 사업 활성화는 정책 수행의 효율성과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지역 간 격차를 완화시키면서도 지역 내 특수한 요구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영유아 대상 비용지원이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과 인건비 미지원 보육시설,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에 따라 4가지 형태가 각각 차별적이기 때문에 모든 영유아대상 비용지원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중복 지원을 통한 불균등 지원을 완화시킬 수 있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도 특수시책과 군·구 특수시책 사업 간 기능분담 및 역할 조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호주, 중국과 다르게 아직까지 중앙정부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육아지원정책 수요자들이 정책에 자신들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수렴될 필요가 있다.
- 효율성과 만족도를 종합한 결과, 효율성과 만족도가 모두 높은 경우는 3개 지방정부와 4개 시도교육청이다. 만족도는 높으나 효율성이 낮은 경우는 5개 지방정부와 2개 시도교육청이며, 효율성은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경우는 5개 지방정부와 7개 시도교육청이다. 그리고, 효율성과 만족도 모두가 낮은 경우는 3개 지방정부와 3개 시도교육청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정책적 통제가 필요하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내 육아 서비스 수요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지방자치단체의 배려가 요청된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효율적 재원 배분과 수요자 만족도의 조화를 통한 정책 집행 능력 제고가 요청된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
3. 연구 방법	3
4. 용어정의	9
II.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지원정책 실태	12
1. 육아지원정책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12
가. 예산 지원	12
나. 사업운영 지원	15
2.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운용 및 사업 현황	19
가.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운용 현황	19
나.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현황	23
3. 지방자치단체별 아동1인당 비용지원 현황	46
가.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	46
나. 유아 1인당 지원액	60
III. 주요국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지원정책	65
1. 일본의 육아지원정책	65
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65
나. 지방자치단체 정책 사례	69
2. 호주의 육아지원정책	77
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77
나. 지방자치단체 정책 사례	82
3. 미국의 육아지원정책	86
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86
나. 지방자치단체 정책 사례	91

IV.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지원정책 효과 분석	98
1. 정책의 객관적 성과 분석	98
가. 상대적 효율성 평가	98
나. 측정 설계	101
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효율성	104
2. 정책의 주관적 만족도 분석	110
가. 지방자치단체 수요자별 정책 만족도	110
나. 지방정부의 정책 만족도	123
다. 시도 교육청의 정책 만족도	127
 V.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언	 133
 참고문헌	 140
부 록	146

표 목 차

<표 I-3-1> 자료포락분석 방법을 통한 상대적 효율성 분석 연구	4
<표 I-3-2> 육아지원정책 객관적 평가지표 구성	6
<표 I-3-3> 육아지원정책 주관적 평가자 현황	7
<표 I-3-4> 육아지원정책 주관적 평가지표	8
<표 II-1-1> 보육예산지원에서 국고 및 지방비 비중(2008)	13
<표 II-1-2> 육아지원예산(2006-2008)	13
<표 II-1-3> 보육정책에서 중앙과 지원정부 간 기능분담(2008)	16
<표 II-1-4> 유아교육정책에서 공통/특수사업	18
<표 II-2-1> 지방비 예산액 및 비중(2006-2008)	20
<표 II-2-2> 지방정부 특수시책 예산액 및 비중(2006-2008)	21
<표 II-2-3> 지방자치단체별 유아교육예산 및 시도교육청 부담률 (2008)	22
<표 II-2-4>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보육 및 유아교육정책 수립 현황 (2007-2008)	23
<표 II-2-5> 지방정부 특수시책 현황(2003-2008)	24
<표 II-2-6> 지방정부의 보육료 지원 특수시책 현황(2008)	26
<표 II-2-7> 지방정부의 인건비 지원 특수시책 현황(2008)	27
<표 II-2-8> 지방정부의 기타 인건비 지원 특수시책 현황(2008)	29
<표 II-2-9> 지방정부의 시설운영비 지원 특수시책 현황(2008)	30
<표 II-2-10> 지방정부의 환경개선 지원 특수시책 현황(2008)	32
<표 II-2-11> 지방정부의 기능보강 지원 특수시책 현황(2008)	32
<표 II-2-12> 지방정부의 교사교육 지원 특수시책 현황(2008)	33
<표 II-2-13> 지방정부의 평가인증 지원 특수시책 현황(2008)	34
<표 II-2-14> 지방정부의 인프라 구축사업 특수시책 현황(2008)	35
<표 II-2-15> 시도교육청별 추가 교육비 지원 현황(2008)	36
<표 II-2-16> 시도교육청별 추가 인건비 지원 현황(2008)	37
<표 II-2-17> 시도교육청별 시설운영비 지원 현황(2008)	38

<표 II-2-18> 시도교육청별 종일제 지원 현황(2008)	39
<표 II-2-19> 시도교육청별 환경개선비 지원 현황(2008)	40
<표 II-2-20> 시도교육청별 기능보강비 지원 현황(2008)	40
<표 II-2-21> 지방정부별 유치원 지원 현황(2008)	41
<표 II-2-22> 시도교육청별 종사자 연수 현황(2008)	42
<표 II-2-23> 시도교육청별 장학 및 평가제도 현황(2008)	43
<표 II-2-24> 시도교육청별 인프라 구축 현황(2008)	45
<표 II-3-1> 보육시설 구분 기준	46
<표 II-3-2>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 항목 구성	47
<표 II-3-3>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2008예산기준)	48
<표 II-3-4> 서울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2008예산기준)	49
<표 II-3-5> 부산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2008예산기준)	49
<표 II-3-6> 대구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2008예산기준)	50
<표 II-3-7> 인천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2008예산기준)	51
<표 II-3-8> 광주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2008예산기준)	51
<표 II-3-9> 대전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2008예산기준)	52
<표 II-3-10> 울산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2008예산기준)	53
<표 II-3-11> 경기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2008예산기준)	53
<표 II-3-12> 강원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2008예산기준)	54
<표 II-3-13> 충북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2008예산기준)	55
<표 II-3-14> 충남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2008예산기준)	55
<표 II-3-15> 전북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2008예산기준)	56
<표 II-3-16> 전남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2008예산기준)	57
<표 II-3-17> 경북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2008예산기준)	57
<표 II-3-18> 경남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2008예산기준)	58
<표 II-3-19> 제주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2008예산기준)	59
<표 II-3-20> 지방정부별 지원시설 대비 미지원시설 1인당 월 보육 비용 비율(2008예산기준)	59
<표 II-3-21> 유아 1인당 지원액 현황(2008예산기준)	60
<표 II-3-22> 시도 교육청별 유아 1인당 월 교육예산 지원액-1	

(2008년 예산기준)	62
<표 II-3-23> 시도 교육청별 유아 1인당 월 교육예산 지원액-2 (2008년 예산기준)	63
<표 III-1-1> 아동, 자녀양육 응원플랜의 목표치	67
<표 III-1-2> 중앙과 지방정부 역할분담(일본)	68
<표 III-1-3> 사업별 기능 분담(일본)	69
<표 III-1-4> 일본 중앙정부의 아동별 차등보육료 징수 기준	74
<표 III-1-5> 나고야시 보육료 징수기준(2006)	75
<표 III-1-6> 일본 요코하마시 아동별 차등보육료 징수 기준과 국가 기준(2006)	76
<표 III-2-1> 중앙과 지방정부 역할분담(호주)	78
<표 III-2-2> 호주 지방정부 육아지원 제도현황	82
<표 III-2-3> 호주 지방정부 육아지원시설 관리	83
<표 III-3-1> 중앙과 지방정부 역할분담(미국)	87
<표 III-3-2> 뉴욕시 아동보호와 개발자금(CCDF)	93
<표 III-3-3> 뉴욕시 육아지원 프로그램	93
<표 III-3-4> 뉴욕시 보육시설 인가조건	94
<표 III-3-5> 캘리포니아주 육아지원 프로그램	95
<표 III-3-6> 캘리포니아주 아동보호와 개발자금(CCDF)	96
<표 III-3-7> 캘리포니아주 보육시설 인가조건	96
<표 IV-1-1> 지방정부 투입 및 산출 지표	103
<표 IV-1-2> 시도교육청 투입 및 산출 지표	104
<표 IV-1-3> 자료포락분석 모형에 의한 보육서비스의 상대적 효율성 평가	106
<표 IV-1-4> DMU K의 자료포락분석결과해석	107
<표 IV-1-5> 자료포락분석 모형에 의한 유아교육서비스의 상대적 효 율성 평가	108
<표 IV-1-6> DMU D의 자료포락분석결과해석	109
<표 IV-2-1> 지방자치단체별 수요자 만족도	111
<표 IV-2-2> 수요자별 정책 만족도 1	113

<표 IV-2-3> 수요자별 정책 만족도 2	117
<표 IV-2-4> 인지도와 만족도 상관관계	118
<표 IV-2-5> 지방자치단체별 수요자 인지도	119
<표 IV-2-6> 수요자별 정책 인지도 1	121
<표 IV-2-7> 수요자별 정책 인지도 2	122
<표 IV-2-8> 보육정책 수요자 만족도	123
<표 IV-2-9> 보육정책에 대한 시설유형별 수요자 만족도	124
<표 IV-2-10> 보육정책에 대한 수요자 집단별 만족도	125
<표 IV-2-11> 정책 결정요인(다중응답,보육시설 시설장)	126
<표 IV-2-12> 정책 결정요인(다중응답,보육시설 학부모)	127
<표 IV-2-13> 유아교육정책 수요자 만족도	128
<표 IV-2-14> 시설유형별 유아교육 만족도	129
<표 IV-2-15> 수요자별 유아교육 만족도	129
<표 IV-2-16> 정책 결정요인(다중응답,유치원 원장)	130
<표 IV-2-17> 정책 결정요인(다중응답,유치원 학부모)	131

그림 목 차

<그림 I-3-1> 연구추진체계	9
<그림 IV-1-1> 정책 효과의 구성	99
<그림 IV-1-2> 회귀곡선과 프런티어곡선	10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지역육구에 민감한 공공서비스로서의 육아지원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그에 대한 예산 역시 빠르게 증가되어 왔다. 육아지원 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이제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 수행의 책임 주체에 대한 성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육아지원정책에서 책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그 기능에 비해서 크게 주목받지 못해 왔다고 지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이 구현되는 생활의 단위이다. 국가 및 보호자와 더불어 영아 및 유아를 건전하게 양육할 책임(영유아보육법 제 4조 2항, 유아교육법 제 3조)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물질·인적 지원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육아지원정책으로는 보육정책과 유아교육정책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다시 중앙정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정책과,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정책으로 구분된다. 통상 전자를 중앙정부 정책, 후자를 지방정부 특수시책이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보육정책은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적인 운영의 틀이 결정되지만, 전체의 85%에 해당되는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결정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몫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 보육예산의 58%를 분담하고 있으면서, 지방정부 특수시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10억에서 1,400억까지 차이가 있다. 이 지방정부 특수시책은 지역 간 보육 인프라 및 운영의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다.

유아교육정책은 정책의 틀을 중앙정부가 만들지만 3개뿐인 국립 유치원 관련 예산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정지원이 지방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에 따라 특수시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특수시책이 지역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유아교육정책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차별적인 육아지원정책을 추진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어떤 세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사업 수행은 효율적인지, 그리고 지역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파악 및 평가는 미흡하다.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육아지원정책의 수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행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 결과의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지원정책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점검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지원정책의 실태 파악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의 육아지원정책 이외에 지역 수요에 따라 어떤 육아지원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다. 이와 같은 실태 파악은 첫째, 국고보조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 간의 관계 및 기능 배분, 둘째,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운용 및 지원 사업 규모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별 육아지원정책의 내용과 규모 분석에 기반하여, 셋째, 보육비·교육비 지원을 포함하여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취원하고 있는 아동 1인당 투입되는 비용을 산출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나. 지방자치단체 육아지원정책 성과 평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육아지원정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들을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객관적·주관적 차원에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지방자치단체들이 제한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느냐와 관련된 양적측면의 평가를 수행하였다. 효율성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상호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자료포락분석(DEA기법)을 활용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상대적 효율성을 점수화하고, 투입 및 산출요소별 비효율성의 정도를 밝히고자 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지원정책 영역별로 수요자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수요자 만족도 평가 영역으로는 예산, 운영 및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정책 산출로 범주화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

체의 성과 평과의 결과를 효율성과 만족도의 정도에 따라 분석하여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다. 지방자치단체 육아지원 책임 및 서비스의 질 향상 과제 제안

위와 같은 정책 운영 실태와 주관적, 객관적 효과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지원 책임 및 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본, 호주, 미국 등 선진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 및 재정배분 역할과 지방자치단체 육아지원정책 운영 사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한 실태 분석, 정부의 육아지원 관련 통계분석,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과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활용한 정책 효율성 분석,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심층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가. 문헌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지원 실태 분석은 문헌연구 및 기존자료 분석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보육사업/유아교육사업 관련 문헌 및 정책 자료, 관련 통계를 검토하고 재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뤄진 문헌은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 및 운영과 관련된 선행 연구,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 및 보육 관련 부서가 발간한 사업계획서 및 내부 정책자료, 통계자료 등이 수합되어 분석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 미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지원서비스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고찰하였다.

나. 자료포락분석

1) 분석 방법

지방자치단체 육아지원정책의 효과 분석을 위하여 정책의 효율성 평가를 시도하

였다. 일반적으로 공공 정책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다양한 투입·산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효과를 명확히 계량화시키는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려는 평가 측정 방법이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이다.

자료포락분석은 정책 또는 사업의 성과를 효율성 개념과 연결시켜서 표본 내의 다른 집단들과 비교해서 나오는 효율성 수치를 통해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한다. 효율성 측정에서 투입과 산출의 결합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때, 자료포락분석 방법은 다수의 투입과 산출을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다.

<표 1-3-1> 자료포락분석 방법을 통한 상대적 효율성 분석 연구

연구자	분석대상	투입변수	산출변수
윤경준(1995)	자치구보건소	의료인력, 간호인력, 기타인력	결핵관리사업,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진료사업
손광훈(2003)	사회복지관	인력수, 인건비, 기관운영비, 운영기간	프로그램 이용자수
송건섭·이곤수 (2004)	광역자치단체 공공서비스	공무원1인당주민수, 주민1인당세출액, 공무원1인당관할면적	사회복지시설수, 1인당지방세징수액, 민원처리실적, 공공체육시설수, 문화예술시설수, 1인당공원면적, 상하수도보급율, 도로율
임동진·김상호 (2005)	기초단체 공공서비스	1인당 공무원수, 1인당 세출액, 공무원1인당 관할면적	도로율, 문화시설수, 상하수도보급율, 저소득주민보호비율, 사회복지시설수, 지방세징수액, 문화시설수
윤기찬·황종구 (2005)	복지정책	복지시설수, 사회개발비예산비율, 의료기관종사자수, 공원면적	주민 10만명당 범죄건수, 전체인구대비수급지비율, 복지시설수용인원, 연간진료건수
류영아·김건위 (2006)	보육시설	예산, 담당공무원수	보육시설수, 보육시설면적, 보육시설 현영유이수
고승희(2008)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관리인원, 차량과 손수레수, 예산	생활폐기물처리량, 재활용량, 수수료 징수액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료포락분석을 사용한 주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행정전반의 효율성을 측정한 연구들과 특정 행정분야의 효율성을 측정한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측정한 연구들로는 이혁주 박희봉(1996), 김성중(2000), 김재홍(2000), 임동진 김상호(2005), 임동진(2001), 송건섭 이근수(2004) 등이 있으며, 특정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들로는 교육서비스(Henry and Dickey, 1993), 정부지출(김성중, 2002), 국세행정(유금록, 2003), 문화예술서비스(홍기원, 2004), 사회복지서비스(윤기찬·황종구, 2005) 보육시설 평가(류영아·김건위, 2006)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공공조직의 효율성 측정에 있어 유용성이 인정된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하여 정책 투입에 따른 산출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이는 객관지표를 통해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자료포락분석을 사용하여 16개 지방자치단체를 개별적인 평가단위(DMU)로 설정하여 육아지원 정책의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2) 분석 지표

16개 지방자치단체간의 상대적 효율성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요소로 하고 육아지원정책의 대상이 된 아동 수를 산출요소로 하여 측정하였다. 예산 지표는 '시설 영유아 1인당 육아비용(보육정책)'과 '유아 1인당 예산액(유아교육정책)'으로¹⁾, 인력 지표는 '담당 공무원 수'를 사용하였다. 육아지원정책의 직접적인 사업수행 실적의 의미하는 산출(outputs)²⁾ 지표는 정책의 양적 확대를 보여주는 지표로 '취원율(영유아 100명당 보육시설 취원 영유아 수, 유아 100명당 유치원 취원 유아 수)'과 육아지원서비스의 질 관리를 대표하는 지표로 '취원 영유아 100명당 평가인증 참여시설 영유아 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지표의 구성 내용은 다음의 <표 1-3-2>와 같다.

-
- 1) 육아지원정책의 집행주체는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분화되어 있고,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예산 체계는 상이한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성과 측정 역시 두 기관을 대상으로 각각 이루어졌다. 따라서, 예산 지표 산출방식이 상이하다.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경우, 인건비 미지원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보육료를 받고 있고 인건비 역시 전체 보육예산에 포함되어 '영유아 1인당 육아비용'을 산출할 수 있었다. 반면, 유아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교육청의 경우 사립 유치원의 교육비가 자율화되어 있어 기관별로 상이하야 정부의 '유아 1인당 지원예산액'으로 산출하였다.
 - 2) 결과(outcomes)를 사용할 경우 투입요소와 산출요소 간의 인과적 연계성이 약해지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수집상 한계가 있다.

<표 1-3-2> 육아지원정책 객관적 평가지표 구성

구분	지표	지표구성내용	자료출처	
보육정책	투입요소	영유아 1인당 비용 ³⁾ =보육료+인건비+운영비+환경개선비 +평가인증지원비	보육통계 각시도 보육자료	
		인력	지방정부별 영유아 100명당 보육정책 담당 공무원 수	각시도 조사
	산출요소	양적 확산	지방정부 영유아 100명당 시설 이용 영유아 수	보육통계
		질 관리	지방정부별 취원 영유아 100명당 평가인증참여 시설 취원 영유아 수	평가인증사무국
	유아교육 정책	투입요소	유아 1인당 예산액 =인건비+운영비+시설비 +기타(목적사업 등)	유아교육통계, 시도교육청 자료
		인력	시도교육청 유아 100명당 유아교육정책 담당 공무원 수	각시도 교육청 조사
산출요소		양적 확산 시도교육청 유아 100명당 기관 이용 영유아 수	유아교육통계	

다. 만족도 조사

주관적인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책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육아지원기관 관련자들에 대한 정책 만족도 조사는 고객지향적 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함께 형평성이라는 질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만족도 조사는 산출 중심의 효과 분석이 설명할 수 없는 결과(outcome)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 조사 방법 및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조사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운영자 및 이용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3) 법에 의한 대표적 육아지원기관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이다. 두 기관의 운영을 비교해보면 유치원의 경우 사립유치원은 원비가 자율화되어 있어 1인당 비용을 계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유아 1인당 비용 대신, 유아 1인당 예산액으로 투입요소를 달리 계산하였다.

16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치원과 보육시설 30개소를 할당하여 시설장과 학부모 1인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본 할당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을 균등하게 할당한 후, 지방자치단체별 유치원과 보육시설 현황표를 이용하여 체계적 무작위 표집을 하였다.

조사는 2008년 8월부터 10월까지 우편조사와 전화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되었고, 분석에 포함된 사례는 1,863사례이다. 수요자 집단별로는 유치원장 450사례, 보육시설장 459사례, 유치원 학부모 400사례와 보육시설 학부모 554사례이다. 지방자치단체별 현황은 다음의 <표 1-3-3>과 같다.

<표 1-3-3> 육아지원정책 주관적 평가자 현황

구분	합계	기관 및 시설장			학부모		
		유치원	보육시설	계	유치원	보육시설	계
서울	144	31	31	62	38	44	82
부산	130	29	29	58	37	35	72
대구	113	28	31	59	22	32	54
인천	131	33	31	64	13	54	67
광주	117	30	26	56	29	32	61
대전	112	26	30	56	23	33	56
울산	100	28	27	55	24	21	45
경기	99	28	28	56	21	22	43
강원	141	29	29	58	42	41	83
충북	120	31	30	61	26	33	59
충남	124	29	29	58	39	27	66
전북	113	28	24	52	28	33	61
전남	98	26	27	53	9	36	45
경북	120	30	29	59	20	41	61
경남	116	31	30	61	21	34	55
제주	85	13	28	41	8	36	44
합계	1,863	450	459	909	400	554	954

2) 조사 내용

만족도 조사를 위한 측정도구는 다음의 <표 1-3-4>와 같다. 구체적인 지표 및 항목들은 응답표본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설정하였다.

육아지원정책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질문유형으로 설계된 각 문항의 응답은 리커트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표 1-3-4> 육아지원정책 주관적 평가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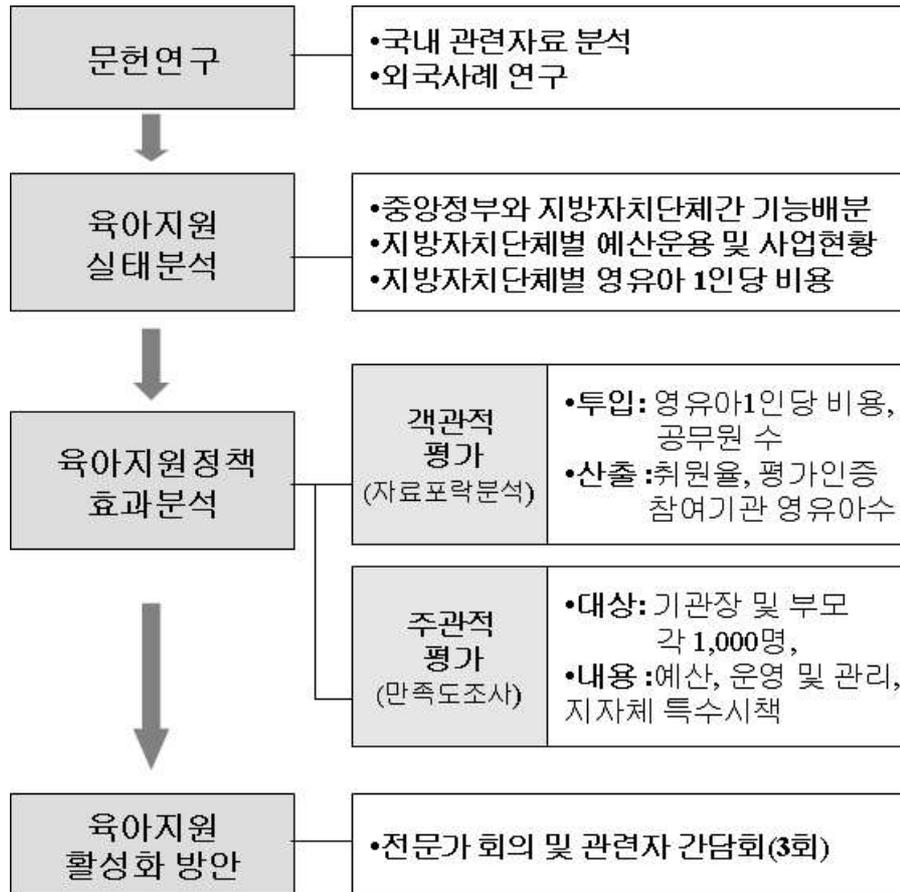
구분	변수	지표	척도	
인지도 만족도	예산	보육료/교육비	리커트4점	
		인건비		
		운영비		
	운영 및 관리	교육/보육과정		
		교사전문성		
		행정지원		
		재무회계		
		관리감독		
		지역특수시책		정책수립
				재정지원
정책결정요인	현재영향력	10개 영향요인	1-3순위	
	바람직한 영향력	10개 영향요인		
인적사항	자녀 연령, 부모특성(연령,취업)			

라. 전문가 회의 및 관련자 간담회(3회)

지방자치단체 육아지원정책의 세부 내용을 분류하고 그룹화하기 위하여 정책 담당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정책 수립의 여건과 실태, 정책 현황에 대한 분석 등이 다루어졌다.

또한,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본 연구가 핵심 쟁점을 적절하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대안마련의 방향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상의 연구추진체계를 요약하면 <그림 1-3-1>과 같다.



<그림 1-3-1> 연구추진체계

4. 용어정의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사용된 용어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가. 지방자치단체 육아지원정책

1) 지방자치단체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지방자치단체는 16개 시도의 행정적 구분이며, 유아교육행정과 보육행정이 이루어지는 행정적 단위이다. 본 연구에서 유아교육행정 주체를 지칭할 때는 시도교육청, 보육행정 주체를 지칭할 때는 지방정부를 사용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두 행정 주체가 활동하는 큰 범위의 행정 단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2) 육아지원정책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정책은 크게 유치원 및 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보육 지원, 일하는 부모에 대한 세제지원 및 양육 휴가, 일시적인 보육 수요에 대응한 아이돌보미 지원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주택지원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및 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보육 지원 정책에 한정하여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상의 정의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사용된 용어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육아지원기관이란 육아지원정책을 유아교육과 보육을 다루는 정책으로 제한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 ② 육아비용이란 영유아 1명에게 교육서비스 혹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다. 예산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보육료(원비), 인건비지원금, 기타 운영비 지원금을 포함한다.

나. 정책 성과

지방자치단체 육아지원정책 성과는 시도교육청과 지방정부의 육아지원 활동 결과로 규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 개념을 산출과 결과의 두 차원으로 접근하였다. 산출은 행정 주체가 의도한 활동을 통해 발생한 산물로서 수혜자,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 능력을 표현하는 것으로, 결과는 행정 주체가 의도한 활동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으로서 질을 감안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연구 내용과 관련

하여 객관적 성과 평가에서 성과는 산출을 의미하며, 주관적 성과 평가에서 성과는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Ⅱ.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지원정책 실태

1. 육아지원정책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육아지원정책에서 중앙정부에서는 총괄적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정책 수행의 골격이 되는 법,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기초로 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국고보조금 사업을 수행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사업에 대한 수행과, 지방정부 자체 사업에 대한 기획 및 집행 사업을 동시에 수행한다. 육아지원정책의 중심 정책인 보육 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아교육정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수행한다. 아래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예산지원과 사업운영 지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 예산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내의 일정한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기관장이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법인격이 있는 공공단체’를 의미한다(정재화, 2006). 즉,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의사결정 능력을 소유하고 자체적으로 재산을 취득관리하는 법인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두고 있다. 또한 교육 행정에서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율권 및 책무성 확대를 위해 유아교육에 관한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다⁴⁾.

독립적인 법인체이자 중앙정부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자율성을 갖지만 동시에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예산활용에 대해서 독자적 판단을 내리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재정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가 징수하여 지원하는 재원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지원 예산과 관련된 부분 역시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어떻게

4)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교육법 9조). 교육을 기준으로 할 때 대학교육 등 고등교육은 중앙정부의 관할 사무로 그 외의 기초 및 보통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사무로 체계화되어 있다.

배분하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보육예산에서 국고와 지방비 지원 비율은 다음의 <표 II-1-1>과 같다. 서울은 지역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10~30%, 지방보조금이 70~90%를 분담한다. 지방 역시 지역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40~60%, 지방보조금이 40~60%를 분담한다.

<표 II-1-1> 보육예산지원에서 국고 및 지방비 비중(2008)

사업명	서울		지방	
	국고	지방비	국고	지방비
보육료: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5세아·장애아 무상 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인건비 : 종사자인건비	10%	90%	40%	60%
운영비 :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20%	80%	50%	50%
인프라 : 보육교사 보수교육, 보육시설평가인증 지원, 지방보육정보센터 운영	30%	70%	60%	40%
시설비 :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50%	50%	50%	50%

자료: 여성가족부, 2008년 보육사업안내.

유아교육예산지원은 유아 학비 지원사업과 인건비 및 기관지원사업이다. 유치원 교원 및 기관 지원사업은 사립 유치원 교사에 대한 담임수당을 지원하는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사업,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사업, 학급보조자원봉사자 훈련 지원사업 등이 있다. 2007년까지 대부분의 유아교육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사업은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지방의 대응투자를 요구하였다.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한 대응투자 이외에 시도교육청은 공립 유치원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및 시설비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2008년부터 유아교육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여 유아교육비 전액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교부금사업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유아교육 지원은 교부금 지원 지방 사업으로, 보육지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 단위가 이원화 되었다.

이처럼 국고와 지방비에서 함께 지원되는 육아지원 예산은 2006년 2조 9,363억

- 5)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유아교육재원이 지원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보조받은 재원을 명시된 보조 목적에 정확히 집행했는지 감사할 수 있고, 정산과정을 통해 미집행 재원은 반납을 요구하고, 약속한 대응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다음 해 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식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을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아교육재원이 포함된 보통교부금은 목적을 지정할 수 없는 재원이다. 목적교부금과 달리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당시와 달리 집행되었다 할지라도 교과부가 규제할 근거가 없다. 다만, 다음 연도 기준재정수요액을 반영할 때 당초 계획과 달리 집행한 시·도에 대해 수요액의 일부를 삭감한다든지, 재정운영평가지 불리한 평가를 받도록 하여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뿐이다.

원에서 2008년 4조 4,257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육아지원예산이 국민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2002년 0.12%이었던 것이 2006년도에는 0.35%, 2007년도 0.43%, 2008년도 0.47%로 비중이 커지고 있다.

지난 3년간 육아지원 예산액의 증가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증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6년 예산에서 국비는 1조 4억, 2008년에는 1조 4,114억원으로 4,114억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비는 2006년 1조 9,359억원에서 2008년 3조 139억원으로 1조 780억원이 증가하였다. 예산 총액 뿐만 아니라, 보육 예산에서 국비와 지방비의 예산 부담 비율은 2006년과 2007년 1:1.6에서 2008년 1:1.4로 지방정부의 부담 비율이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부담 비중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더 높다. 유아교육 예산은 2008년 유아교육 지방이양과 더불어 국립 유치원에 대한 국비 지원액 약 1억원을 제외한 1조 589억원의 예산이 모두 지방비로 충당되고 있다.

<표 II-1-2> 육아지원 예산(2006-2008)

단위: 억원, %

연도	구분	예산액 (억원)			GDP대비 비율 (%)
		국비	지방비	계	
2006	보육	7,913	12,495*	20,408	0.24
	유아교육	2,091	6,864	8,955	0.11
	계	10,004	19,359	29,363	0.35
2007	구분	국비	지방비	계	GDP대비 비율
	보육	10,384	16,451**	26,835	0.30
	유아교육	2,201	9,943	12,144	0.14
계	12,585	26,394	38,979	0.43	
2008	구분	국비	지방비	계	GDP대비 비율
	보육	14,117	19,550***	33,667	0.36
	유아교육	1	10,589	10,590	0.11
계	14,118	30,139	44,257	0.47	

*국비매칭 9,376, 지방 시책 3,119,

**국비매칭 12,483, 지방 시책 3,968,

***국비매칭 15,800, 지방 시책 3,750

자료: 2008년 유아교육재정지원현황, 각년도 보육사업안내,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

물론, 지방비가 보육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지방비의 증액이 지역별로 자유로운 사업 기획 및 집행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지방비의 약 77%(2006년 75.0%, 2007년 75.9%, 2008년 80.8%)가 국고 보조금 사업⁴⁾의 매칭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약 23%만이 개별 지역에서 기획한 정책 사업에 사

용되고 있다.

나. 사업운영지원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서도 보육정책과 유아교육정책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1) 보육사업 운영지원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⁷⁾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에 준하여 5년마다 보육계획 수립,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집행을 지방정부의 역할로 정의하는 경우⁸⁾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 내의 수요 또는 지방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자체적으로 특수한 발전계획을 수립⁹⁾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형태로 정책을 기획·집행한다.

중앙정부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수행되는 보육사업과 지방정부의 사업은 크게 다

-
- 6) 국고보조금 사업이란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도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중앙정부에 의해 국고보조가 이루어지는 사업을 가르킨다. 국고보조금 사업에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법(제 114조), 지방재정법(제19조)과 동법시행령(제26조 제1항),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보다 국고보조금 사업을 우선 시행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이다.
- 7)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관실의 업무는 1. 보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2.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3. 보육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4. 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실태조사, 5. 보육시설종사자의 양성 및 교육훈련, 6. 보육시설종사자의 경력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7. 보육개발원의 설립 및 지도·감독, 8. 보육제정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9. 보육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10. 아동보육료에 대한 지원, 11.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12.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13. 보육정보센터의 확충 및 지도·감독, 14. 국·공립 등 보육시설의 확충 및 환경개선, 15.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기준에 관한 사항, 16. 영아·장애아 등 취약보육 서비스에 관한 사항, 17. 보육행정 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보육정보망의 구축·운영, 18. 보육시설의 지원 및 지도·관리, 19. 보육시설연합회 등 법인·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정의되어 있다(<http://www.mw.go.kr/>).
- 8) 광주시 보육아동 담당관의 업무정의에 따르면,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셋째아 보육료,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보육정보센터운영, 표준보육관리시스템 및 보육시설 통계관리,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특수보육시설 지정, 기능보강사업 등 중앙정부의 정책 집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http://www.gwangju.go.kr/>).
- 9) 서울시 보육담당관실 2008년 업무 계획에 따르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여성을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영유아플라자와 키즈센터 건립, 보육시설 도우미제도나 보육료 지원 대상 사전 확인 시스템 개발·운영 등의 지역 자체 수요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음의 <표 II-1-3>과 같이 구분된다.

<표 II-1-3> 보육정책에서 중앙과 지원정부 간 기능분담(2008)

구분	중앙정부 사업	지방정부사업(사례)
시설운영 지원	종사자 인건비(국공립·법인, 영아와 장애아 전담, 시간연장 등)	기타 인건비 지원 (영양사 및 취사도우미 파견, 간호사, 운전사 및 대체인력 인건비)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각종운영지원금 지원 (영유아 간식비, 냉난방비, 건강검진비)
시범사업 및 평가	기본보조금사업평가	
보육료 지원	만 3·4세아 차등보육료	취업여성자녀, 조손가족 자녀, 결혼이민자 자녀, 셋째아 또는 셋째 이후자녀 보육료, 차등보육료 차액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자녀 보육료	
시설 기능보강	-시설확충 :신축,공동주택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신축시설 및 민간 시설 장비구입 부지매입
	환경개선 :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방역소독비
인프라 구축	보육사업 행정지원 및 행정전산망 구축	회계프로그램운영비지원
	중앙 및 지방보육정보센터 운영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육아카페 등) 운영
	시설장·보육교사자격관리 (자격관리 사무국 운영)	
	보육시설종사자보수교육	종사자 연찬회 및 각종연수(전문강좌) 지원
	보육프로그램개발 및 연구	우수보육프로그램 공모 순회 교사제 운영
	민간단체(보육시설연합회)지원	각종 행사 지원
		각종 문화사업 (시설이용영유아 부모교육지원, 유아문화축제 또는 캠프) 평가 :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
평가인증	평가인증실시 및 지원 (평가인증 사무국 운영)	문서인력 파견사업 평가인증참여시설 각종 인센티브
교재교구및 차량운영비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국공립시설, 특수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보육시설차량 운영지원	

자료: 2008년 보육사업안내(여성가족부), 각 시도별 2008 특수시책사업현황.

먼저 중앙정부 사업은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국공립보육시설 및 영아

와 장애아 전담시설 인건비,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의 신축, 증개축 및 개보수 비용 지원과 차량운영비 및 민간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한다.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중앙보육위원회 및 중앙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자격관리와 재교육 등의 업무, 그리고 평가인증업무를 수행한다.

모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매년 수립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을 기본으로 하고, 국고보조사업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지방비 부담으로 지원 대상 및 내용을 새롭게 만들거나 확대 지원한다. 지역의 수요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발휘되는 고유 사무는 전적으로 지방비에 의존하는 특수시책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고보조 사업이 국공립보육시설 및 민간 영아전담시설, 장애아 전담시설에만 인건비 지원이 되는 데 반해서 여러 지방정부들이 영양사 및 취사도우미를 파견하거나 농어촌 시설의 차량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운전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으로 보육시설의 운영을 지원한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의 지원정책은 당면한 현안을 중심으로 기획되고 실행되는데, 다문화 가정이 대다수 거주하는 지역일 경우 결혼 이민자 가족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에는 영유아의 취원을 돕기 위해 차량 유지비 또는 운전자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보수 교육 이외의 보육 교사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보육시설단체가 기획한 교사 교육에 비용을 지원하는 일이지는 하지만, 순회 교사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영유아 보육과 같이 전문적인 교육 내용에 대해서 보육 교사들에게 찾아가서 강의를 해 주는 교육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다.

2) 유아교육사업 운영지원

유아교육정책에서 2008년 중앙정부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준 설정, 교육격차 해소 등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여타 핵심기능은 시도교육청에 이양하는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¹⁰⁾는 기본계획 수립과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지원 등의 정책을 시도교육청이

10) 유아교육지원과의 업무는 1.유아교육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 2.유아학비 지원계획의 수립·추진, 3.유치원 종일제 운영 확대 지원, 4.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 교육지원 수립·추진, 5.국·공·사립유치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 7.국제기구와의 유아교육·보육정책 관련 교류·협력, 8.유치원 정보 안내에 관한 사항, 9.유치원 및 유

지역에 따른 유치원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¹¹⁾.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국공립 유치원 종사자 인건비,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만 5세아와 입학아 교육비, 교육과정 개발 보급과 교사 연수를 기본으로 한다.

<표 II-1-4> 유아교육정책에서 공통/특수사업

구분	전국 공통 사업	지방특수사업
시설운영 지원	종사자 인건비(국공립 유치원, 학급보조자원봉사자 훈련비) 3세대하모니자원봉사단 운영	각종 학급 담임수당, 사립유치원 이용 원아 보조금 종일제 및 시간연장제 관련 인건비
교육비 지원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만5세아 무상교육비 입양아 무상교육비 두 자녀 교육비	차등교육비 차액지원, 만 4세아 조기입학예정시 교육비, 셋째아 이후 유아 추가교육비
교재교구비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및 종일제 교재교구비
인프라	교육과정 개발/보급 교사연수	유아체험교육원 운영, 각종(다문화, 문화예술, 안전, 정서 발달, 창의성신장 등)교육자료개발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각종(창의성, 컴퓨터, 교육방법, 특수교육)교사 연수
장학	유치원 장학 및 평가	정책 모니터링 운영, 학부모 만족도 조사,

자료: 각 시도교육청별 2008년 유아교육사업안내.

여기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와 농어촌지역과 인구 30만명 미만 지역에 소재한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담임업무수당 지원 사업, 유치원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이 1 : 21 이상인 유치원에 보조교사 증원 시까지 보조역할을 담당하도록 자원봉사를 희망

관기관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10.교육과정 특성화 전문인력 지원, 11.유치원의 새로운 역할 모델 구축, 12.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지원, 13.육아정책개발센터 운영지원 등에 관여 업무를 지원한다고 업무분장되어 있다.

11) 서울시 교육청 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자의 경우 업무가 1.유아교육 장학 지도 기본 계획 수립, 2.결과분석 처리, 3.중장기 유아교육 발전 계획, 4.유아 자율장학, 5.공사립유치원 수업 연구교사제, 6.에듀케어 관련 제반, 학부모 연수, 7.유아독서프로그램 활성화 업무, 8.유치원교사 동화연구대회 업무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http://www.sen.go.kr/>). 제주도 교육청의 경우 1.유치원 교육과정 관리, 2.종일제 유치원 운영, 3.유치원 생활지도, 4.유치원 장학지도, 5.시범유치원 관리 지도, 6.사립유치원 지원 업무, 7.유아교육활동지원, 8.유치원 홍보교육, 9.유아교육위원회 조직 운영, 10.유아교육위탁기관 지도 감독으로 정의되어 있다(<http://bon4.jje.go.kr/>).

하는 학부모들에게 유치원 교육과정, 유치원 일과 운영, 유아의 발달 심리, 유아의 놀이지도, 유아와의 상호작용 및 자원봉사자의 역할 등의 과목을 연수시켜 학급보조자로 활용하는 사업 등을 지원한다.

중앙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과 지원액의 기준을 기획하지만, 유치원 학비 지원신청 및 절차 등의 세부 계획은 시도 교육청의 자체실정에 맞게 시도 교육청 주관하에 시행된다. 이 과정에서 시도 교육청은 지역 실정에 맞게 차등교육비 차액을 지원하기도 하고 조기 입학할 예정인 만 4세아에게 만5세아가 받는 교육비를 지급하기도 한다. 또한, 교육과정 역시 시도의 상황에 따라서 다문화, 안전, 정서개발 등 적합한 내용의 교육자료를 지역 교육청별로 개발하여 보급한다.

2.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운용 및 사업 현황

가.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운용 현황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별 보육예산은 2006년 1조 2,511억원, 2007년 1조 6,452억원 2008년 1조 9337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2008년의 경우에도 국고보조금의 비율이 작은 서울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부담률은 83.2%에 이르며,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평균 부담률은 50.1%이다. 이와 같은 평균 부담률은 2006년 54.2%에 비해서는 감소된 것이지만 전체 보육예산에서 지방정부들은 40.5%에서 83.2%까지 자체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예산에서 중앙정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방분담금을 제외한 예산이 지방정부 특수시책 예산이다. 이는 <표 10>과 같다. 지방정부 특수시책 예산액은 2006년 약 3,119억에서 2008년 3,750억원으로 약 630여억원이 증가하였지만 전체 보육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10.1%에서 2008년 8.7%로 감소되었다.

전체 보육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부담비가 포함된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을 제외하고 40.5%(광주)에서 58.3%(경기)에 이르기까지 약 17.8%의 편차가 있지만, 지방정부별로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편성하는 특수시책에 대한 예산액 및 비중은 0.9%(광주)에서 23.3%(서울)에 이르기까지 22.4%의 편

차가 있다. 또한 그 예산액 역시 서울시가 1,437억원을 지출하는 반면 가장 작은 예산이 편성된 광주시의 경우는 10억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 다음으로 경기(약927억원), 경남(약169억원), 충남(약166억원), 전북(약163억원), 대전(약140억원) 순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만, 예산액은 보육료를 지원하는 영유아수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액이 많은 경우가 지역 사회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특수시책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표 II-2-1> 지방비 예산액 및 비중(2006-2008)

단위: 천원,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지방비	전체예산중 비중	지방비	전체예산중 비중	지방비	전체예산중 비중
서울	361,587,379	86.6	434,368,868	85.2	513,922,415	83.2
부산	60,504,777	52.5	80,329,683	52.2	77,861,757	41.5
대구	51,624,114	51.2	66,185,687	51.7	68,582,967	43.2
인천	47,450,187	58.3	60,937,432	57.6	64,805,648	47.5
광주	44,416,271	50.3	55,622,205	50.4	47,993,468	40.5
대전	31,120,540	57.3	41,822,695	55.9	49,695,002	49.7
울산	20,860,630	54.8	27,628,681	56.1	32,231,222	51.2
경기	226,806,543	60.1	309,521,295	59.8	406,029,279	58.3
강원	37,767,715	52.4	48,583,029	53.0	62,221,496	53.2
충북	45,015,161	55.4	59,363,519	56.0	69,613,998	53.8
충남	46,562,957	53.1	61,267,374	53.2	84,411,733	55.5
전북	62,975,247	52.8	84,469,919	54.1	103,080,153	54.3
전남	62,404,397	52.9	106,748,854	59.6	86,257,555	50.8
경북	50,470,194	51.5	73,795,817	53.6	93,231,202	53.3
경남	71,630,251	54.0	100,025,577	53.9	129,348,241	54.4
제주	29,939,099	55.8	34,540,297	55.0	44,479,999	54.8

자료: 각년도 보육사업안내.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오히려, 전체 예산에서 특수시책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지방정부 단위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 다음으로 전체 보육 예산액 중 특수시책 예산 편성이 높은 지방정부는 대전(14.0%), 경기(13.3%), 충남

(10.9%), 제주(9.5%), 충북(9.3%), 울산(9.2%), 인천과 경남(각각 8.8%), 경북(6.8%), 강원(6.3%)이다. 반면, 부산(3.7%), 대구(3.4%), 전남(1.6%)은 광주(5%)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액을 편성하고 있다.

<표 II-2-2> 지방정부 특수시책 예산액 및 비중(2006-2008)

단위: 천원,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예산	전체예산중 비중	예산	전체예산중 비중	예산	전체예산중 비중
서울	150,760,624	36.1	148,187,138	29.1	143,715,120	23.3
부산	5,832,263	5.1	6,916,338	4.5	7,001,538	3.7
대구	2,472,714	2.5	4,233,740	3.3	5,450,945	3.4
인천	13,457,305	16.5	16,036,479	15.2	11,952,060	8.8
광주	497,663	0.6	830,080	0.8	1,011,500	0.9
대전	7,906,282	14.6	8,777,242	11.7	14,032,826	14.0
울산	3,662,168	9.6	6,010,091	12.2	5,770,125	9.2
경기	76,202,893	20.2	102,808,125	19.9	92,663,382	13.3
강원	3,499,454	4.9	5,432,562	5.9	7,378,659	6.3
충북	8,774,592	10.8	12,727,508	12.0	12,052,760	9.3
충남	5,432,917	6.2	7,464,567	6.5	16,619,778	10.9
전북	6,740,436	5.7	12,854,167	8.2	16,304,240	8.6
전남	6,829,704	5.8	33,963,947	19.2	2,724,151	1.6
경북	2,885,023	2.9	9,927,846	7.2	13,590,237	6.8
경남	10,696,657	8.1	14,341,814	7.7	16,948,155	8.8
제주	6,222,482	11.6	6,256,240	10.0	7,739,120	9.5

자료: 각년도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자치단체별 유아교육예산에서 시도교육청의 부담률은 평균 99.99%이다. 2008년부터 유아교육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시행해오던 의무교육 지원사업을 2008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사업으로 전환하였다. 전체 16개 시도교육청 중 대전과 경기만 제외하고 14개 교육청은 유아교육예산액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대전과 경기에는 국립 유치원이 있고, 여기에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고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공립 유치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지원은 유치원 교원 수에 따라 지원하는 교직원 인건비, 학급 수별 기준에 따라 교부하는 학교경비(6학급 단설 77,608천원, 병설 38,804천원, 12학급 120,052천원, 18학급 141,171천원, 이외의 학급 수의 경비는 직선보간법에 따름), 유치원 학급당 5,532천원을 지원하는 학급경비, 유치원 원아당 53천원을 지원하는 학생 경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행정구역별로 정하는 단위비용을 원아 수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과정 운영비 등이다. 이외에도 유치원 수, 교원 수, 원아 수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행정경비가 있다.

<표 II-2-3> 지방자치단체별 유아교육예산 및 시도교육청 부담율(2008)

단위: 천원, %

구분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부담율
서울		96,972,828	100.0
부산		63,239,503	100.0
대구		50,099,082	100.0
인천		55,769,060	100.0
광주		30,141,514	100.0
대전	5,809	29,243,078	99.9
울산		24,964,048	100.0
경기	86,860	190,964,032	99.9
강원		53,269,804	100.0
충북		55,771,806	100.0
충남		62,645,909	100.0
전북		63,436,058	100.0
전남		76,377,000	100.0
경북		85,532,670	100.0
경남		111,755,096	100.0
제주		8,707,434	100.0

자료: 2008유아교육 재정지원 현황(2008년 예산기준, 교과부 내부자료).

나.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현황

1) 일반현황

육아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다. 서비스 제공에서 수요자가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책임성이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현주, 유진영, 권영혜, 2007).

지방정부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16개 지방정부는 보육정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지방정부 내의 시·군·구의 경우도 자체 보육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다. 2007년도 232개 시·군·구 중 69개 시·군·구가 자체 보육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도는 134개 시·군·구로 확산되었다.

<표 11-2-4>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보육 및 유아교육정책 수립 현황(2007-2008)

단위: 개

구분	보육정책		유아교육정책	
	2007	2008	2007	2008
서울	4	11	7	10
부산	2	2	1	4
대구	5	5	4	4
인천	7	8	2	3
광주	1	2	2	2
대전	1	3	2	3
울산	2	2	2	2
경기	7	13	10	14
강원	10	11	9	10
충북	6	9	7	6
충남	2	13	12	12
전북	3	14	5	7
전남	8	14	11	12
경북	8	16	14	10
경남	10	18	16	16
제주	1	1	1	1

자료: 해당 지방정부 및 교육청 홈페이지.

시도교육청 역시 매년 자체 유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군·구 교육청 역시 2007년 97개 군·구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유아교육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에는 108개 군·구 교육청으로 확산되었다.

지방정부 자체 보육사업계획에서는 국고보조사업과 시도 특수시책 및 군·구 특수시책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재원별로 사업을 구분하자면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기본 사업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세를 재원으로 수행하는 특수시책 사업이 있다.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지방 정부 역시 일정 비율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자체 보육사업계획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은 지방정부의 사업이 된다.

보육사업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보여지는 사업 분야는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정부들은 2003년부터 꾸준히 특수시책으로 기획된 보육 관련 사업을 확장시켜왔다(<표 11-2-5>참조).

<표 11-2-5> 지방정부 특수시책 현황(2003-2008)

단위: 개

구분	2003	2006	2007	2008	2008	
					시도	군구평균
서울	140	272	277	268	25	34.7
부산	35	55	38	57	13	15.8
대구	26	34	45	32	10	12.8
인천	41	69	83	34	21	22.3
광주	10	9	8	18	6	8.4
대전	17	27	28	34	24	26
울산	37	21	26	37	14	18.6
경기	143	250	171	294	3	12.4
강원	26	65	62	85	13	16.9
충북	40	54	56	53	5	8.9
충남	18	8	32	64	10	13.4
전북	20	34	39	41	12	14.6
전남	26	50	88	59	7	9.4
경북	53	67	76	90	14	17.3
경남	60	81	96	140	9	15.6
제주	34	29	17	17	17	17

자료: 해당 지방정부 및 교육청 홈페이지.

특수시책은 국고지원 서비스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지역 마다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사업들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수시책 사업은 시도 단위로 시행되는 사업과 군·구 단위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구성된다. 2003년 16개 시도가 726개, 시도 평균 45.4개의 특수시책 사업을 수행했던 것이 2008년에는 총 1,323개의 사업, 시도 평균 82.7개로 그 수가 크게 확장되었다. 2008년 한 해 동안 각각의 지방정부들은 3개에서 25개 사이의 시도 단위의 특수시책 사업을 실시하였고, 군·구 단위에서는 시도의 특수시책 사업과 군·구의 자체사업을 합하여 평균 8.4개에서 34.7개 사이의 특수시책 사업을 하고 있다. 지역별로 서울, 인천, 대전의 군·구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특수시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인천과 대전은 시도 단위로 수행되는 특수시책 개수가 많기 때문이고 서울은 시도 단위의 특수시책도 구단위의 특수시책도 많기 때문이다.

16개의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유아교육계획은 대부분의 정책 사업이 이미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사업에서는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 등 몇몇 통일된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별 특수시책 사업으로 접근해도 무방하다.

2) 보육 정책 사업 현황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육정책 사업으로는 보육시설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과 보육시설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¹²⁾.

가) 예산지원 사업

① 보육료 추가 지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수행되는 보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와 만 5세아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와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급이다. 이상의 보육료 지원사업은 그 규모가 전체 보육 예산의 41.8%를 지출하는 규모의 사업이다. 이와 같은 기본 사업에 더해 지방정부들은 지역 수요에 따라서 자체사업으로 셋째자녀 또는 셋째 이후 자녀의 보육료와 차등 보육료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 영유아 의 부모 부담분 보육료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육료 지원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지원 액수가 크기도 하고 지방정부의 가시적인 보육 사업의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시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고, 인천시는 셋째아 보육료를 시 전체에서 지원한다.

<표 II-2-6> 지방정부의 보육료 지원 특수시책 현황(2008)

사업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경남	충북	경북	전북	전남	제주
차등보육료 보육료 차액	●			●				●		●		●		●		●
둘째자녀부터 무상보육	●															
셋째아 무상보육			●	●	●	●	●	●	●		●		●	●		●
입양아 무상보육				●												
취업여성 보육지원								●								
여성결혼이민자녀보육료				●						●						

자료: 2008 지방자치단체별 특수시책.

지방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서 경기도는 취업여성의 첫째 자녀를 출생으로부터 23개월까지 국공립보육료의 20%, 둘째아 이상 자녀를 국공립보육료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충남은 여성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가 어떤 시설에 다니고 있는지 무관하게 보육료 전액을 지급한다.

보육료 지원 사업의 범위와 규모는 지방정부별로 다양하다. 가장 많은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셋째아 보육료 지원 사업인데 연령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고 지원 대상에 있어서도 연간 100명에서 800명까지 다양하다. 보육료 전체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정액으로 월 3만 2천원에서 2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원된다.

② 인건비 추가 지원

개별 지방정부는 국고지원금에서 지급되는 인건비 지원 정책 이외의 별도의 인건비들을 지원한다. 국·시(도)·구(군)비를 통해서 80-100%가량 인건비가 지원되는 국공립, 법인 및 영아전담과 장애아전담 시설을 제외한 시설들에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 대개 시(도)비 50%, 구(군)비 50%의 부담으로 시행되는 인건비 지원정책들은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 비상근교사 인건비, 대체인력 인건비, 시간연장교사 근무수당, 휴일 보육교사 근무수당 등이 있다. 이 중 시도 차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하는 정책은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또는 수당)와 대체인력 인건비(또는 수당), 장애시설 교사 특별수당이다.

<표 11-2-7> 지방정부의 인건비 지원 특수시책 현황(2008)

사업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경남	충북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보육교사	●		●	●	●	●	●	●	●		●	●		●		
처우개선비		●			●			●	●	●					●	
국공립 법인시설			●					●								
대체인력 인건비	●			●		●	●	●	●	●		●	●		●	●
시비지원 종교시설교사	●															
특수보육(방과후 제외)				●						●						
시간연장 미지정 시설비상근교사	●															
시간연장(휴일)교사근무수당	●															
시간 연장(24시간 야간)근무수당	●					●		●								
외국인근로자지원시설 교사인건비								●								
장애시설 교사 특별수당			●			●	●	●	●	●					●	●
영아전담교사 특별수당						●	●	●								
우수보육교사 모범수당	●															
농촌지역종사자 교통수당						●			●							
국공립보육교사 중식비	●					●										
보육도우미 파견비용 비원						●										
외국어강사 수당지급													●			
보육교사 명절휴가비													●			
사립시설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							
정부지원시설장 직책수당보조	●															
보육시설종사자 담임수당지원								●								
민간보육시설 4대 보험료 지원								●								●

자료: 2008 지방자치단체별 특수시책.

보육교사 또는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대개 민간가정 보육시설 보육교사들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국공립보육시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민간·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임금을 보전해준다는 의미가 있다. 시설장과 국공립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자치구도 있다.

처우개선비의 지급 범위 뿐만 아니라 지급되는 금액은 지방정부별로 크게 차이나는데, 작게는 1인당 50,000원을 년 2회에 지급하는 경우에서부터 3개월 이상 동일시설 근무한 민간 보육교사에게 매월 2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교사의 출산휴가 및 보수교육시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정책도 지방정부마다 출산휴가 및 병가시 대체교사, 보수교육 시 대체교사 지원 등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대체교사 활용일은 주로 보수교육에는 5일에서 1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출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80일에서 90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25,000-35,000원 사이이고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 지방정부들은 1일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월 25,000원에서 40,000원 사이의 금액을 정부지원시설 또는 해당 시/구청에 설치된 직장보육시설교사들에게 제공한다. 때로는 모든 보육교사나 국공립 시설장에게 확대 지급하는 지방정부도 있다.

시·도 단위 차원에서 인건비 지원을 하는 경우는 서울은 우수보육교사 모범수당, 대체인력 인건비, 시간연장(휴일)교사 근무수당,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 국공립 보육교사 중식비, 비상근교사 인건비, 종교시설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는 영아보육시설 전문보육도우미와 민간·가정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부산시의 모든 해당 종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대구시에서는 장애아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국공립, 법인시설 종사자수당,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인천시에서는 대체교사 인력은행, 보육교사 처우개선, 연구활동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울산시는 대체교사 인건비, 장애전담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24시간 국공립 보육시설 자부담 인건비, 법인·장애아전담시설 인건비, 국공립·법인 취약보육 종사자 수당,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민간영아, 장애아반 종사자지원, 보육시설 영양사 파견을 지원하고 있다.

6개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취사부와 간호사 등 보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기타 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다.

<표 II-2-8> 지방정부의 기타 인건비 지원 특수시책 현황(2008)

사업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경남	충북	경북	전북	전남	제주
영아보육도우미	●	●														
소규모시설취사부	●											●				●
시간연장보육시설취사부지원								●								
영아전담시설 및 0세아전담간호사	●															
장애아통합시설 치료사	●											●				●
운전기사 인건비(장애아 전담)								●				●				●

자료: 2008 지방자치단체별 특수시책.

서울, 제주가 가장 많은 기타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 장애아통합시설 치료사, 소규모취사부 인건비, 0세아 전담간호사 인건비, 보육시설 보육도우미를 지원한다. 취사부 인건비는 공립, 법인시설 중 정원 40~52명 이하 시설에 근무하는 취사부 1명에 월 1,234,000원, 간호사는 국공립, 법인, 영아전담시설 중 0세아 9명 이상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경우 1명 인건비 월 1,548,000원과 장애아 9명당 치료사 1인 인건비 1,734,000원을 지급한다. 제주는 장애아전담보육시설 1개소 당 운전기사 인건비로 월 1,000,000원을 지급하고 국공립 시설과 법인 시설 중 국비지원 제외 시설에 취사부 및 운전기사 인건비를 1인당 월 10,000원에서 450,000원까지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경북은 장애전담 및 통합지정시설 특수교사와 치료사에 1인당 월 1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경북도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4개 시에서 공립 또는 시립 보육시설에만 제한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다. 경기 역시 도 전체에서 기타인력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8개시에서 인건비 지원시설에 취사부 인건비(경기도 내 4개시)와 운전기사 인건비(경기도 내 4개시)를 지급한다.

③ 시설 운영비 지원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정부들은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에 대한 각종 경비 보조와 시설 운영비 보조를 하고 있다. 먼저,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는 법정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입소료, 건강검진비, 현장학습비, 간식비를

지원하고 장애영유아에 대해서도 입소료 등을 지원한다. 또한 몇몇 지방정부는 모든 영유아 또는 영아에 대한 간식비를 보조한다.

<표 11-2-9> 지방정부의 시설운영비 지원 특수시책 현황(2008)

사업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경남	충북	경북	전북	전남	제주
입소료								●	●							
저소득 영유아																
건강검진비	●					●			●		●		●		●	●
현장학습비				●			●						●			
간식비	●	●			●	●		●		●		●	●		●	
입소료지원	●						●								●	
장애아																
교재 교구비	●				●								●	●		●
전문가순회지원	●															
일반영유아 간식비 지원								●					●			
보육시설 영아급식															●	
장애아시설																
통합시설	●			●							●					●
전담시설			●		●											●
전담 차량운영비					●			●							●	●
교재 교구비	●	●	●			●	●	●	●	●		●	●	●	●	●
차량운영비	●			●		●		●				●	●		●	
현장 학습비							●							●		
공공요금지원								●								
아토피 및 장애아 통합시설 지원	●															
차량운영비(농어촌)								●								
읍,면 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			●
영세아 전용보육시설운영 2세,3세반 운영비 추가지원	●															
시간 연장 시설 운영비			●				●	●					●			
외국인근로자자녀시설								●								
부모협동보육시설										●						
냉난방비	●			●				●	●		●		●	●		●
교재교구비								●								
민간시설																
현장 학습비		●		●										●		
영아운영비 추가지원	●															
보육시설 식당 운영지원	●															
친환경농산물 “쌀” 구입비	●															
시립보육시설운영지원								●								

자료: 2008 지방자치단체별 특수시책.

시설을 단위로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는 장애아 시설에 대한 지원, 국공립 보육 시설에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영유아 현장학습비, 공공요금지원 등이 있다. 민간 보육시설에는 냉·난방비, 교재교구비, 현장학습비 등을 지원한다. 농어촌이나 오지

지역의 차량운영비 지원과 보육시설 시설 유형에 따라서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 2세와 3세반 운영비, 시간연장시설,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시설, 부모협동시설 등에 대한 지원들도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영유아의 급간식비 및 민간 보육시설의 냉난방비와 관련하여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다. 간식비는 1인당 월 10,000원에서 월 38,500원까지 다양하며, 때로는 월 4,500원을 6개월간 지급하는 경우에서부터 500원을 년 50일 동안 지급하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냉난방비는 주로 시설 규모나 영유아규모별로 차등 지급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대개 4-6개월 동안이나 년 5회에 개소당 100,000원에서 300,000원 내외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하 년 1회 70,000원(20인 이하)에서 2,000,000원(70명이상)까지 지원액은 상당한 편차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원 21-39인 사이에 월 100,000원 정도를 5개월(하절기 2월, 동절기 3월) 지급하는 형태가 가장 빈번하다.

시 단위로 지원하는 것은 서울은 민간 영아반 운영비 추가, 장애시설 교재교구비, 보육시설 배상보험료를 지원한다. 울산은 노후장비 및 교재교구비와 냉·난방비를 시비로 전체 시의 보육시설에 지원한다.

④ 환경개선비 지원

환경개선비는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개보수를 시행하거나 시설 및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된다. 보육시설 안전과 관련한 지방정부 특수시책 정책들은 방역사업, 안전점검 및 기능보강 사업들이 있다. 국고보조 사업은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반면 지방정부 특수시책들은 주로 구립보육시설 및 장애아 통합시설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시 단위로 수행되는 사업으로는 주로 특수보육시설이나 민간시설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민간·가정 보육시설의 350여 곳에 안전시설 설치,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개선비를 지급하고 있고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한해 장애아 통합반을 신설하도록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있다. 부산은 영아보육시설 환경개선비로 개소당 5,000,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는 민간보육시설 개소당 1,400,000원을 지원한다.

<표 II-2-10> 지방정부의 환경개선 지원 특수시책 현황(2008)

사업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경남	충북	경북	전북	전남	제주
국공립구립보육시설 개보수	●						●									
보육시설 집단급식소 개보수	●															
신규보육시설 환경설치비 지원								●								
시설 놀이대 개보수	●								●			●	●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지원	●												●		●	
보육시설기능 보강사업비 보조	●											●	●			
노후시설 보수					●											
민간보육시설 서비스수준향상지원	●															
민간영아시설환경개선비	●	●											●			●

자료: 2008 지방자치단체별 특수시책.

⑤ 기능보강비

기능보강비는 지원액이 다른 사업보다 크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하는 지방정부는 서울 뿐이다. 서울에서는 공공시설내 보육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부지 매입과 민자 유치 보육시설 건립을 지원한다.

<표 II-2-11> 지방정부의 기능보강 지원 특수시책 현황(2008)

사업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경남	충북	경북	전북	전남	제주
공공시설내 보육시설 설치	●														
민자유치 보육시설 건립	●														
보육시설부지매입	●														

자료: 2008 지방자치단체별 특수시책.

나)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

지방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는 종사자 교육과 보육 시설 평가인증 제도에 대한 참여를 증진하는 사업 등이 있다.

① 종사자 교육 지원

지방정부들은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특수한 요구에 대한 교육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연수회 또는 연찬회로 년 1-2회의 특강 중심의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개별 지방정부에 따라서 장애아와 영아 보육에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에 비용을 지원하거나 순회교사제(circuit-master)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표 11-2-12> 지방정부의 교사교육 지원 특수시책 현황(2008)

사업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경남	충북	경북	전북	전남	제주
시설장 전문교육								●								
자기개발교육비	●															
장애아영아전문교육과정	●							●								
장애아 특수교사 순회교육								●								
보육시설종사자연수회	●	●	●		●			●	●	●	●	●	●		●	
보육교사 연찬회	●		●		●		●	●				●	●		●	
보육교사 해외연수	●						●	●	●			●				
보육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																●
보육시설우수종사자 워크숍	●						●						●			
종사자 보수교육 참석여비 지원							●						●		●	
보육종사자 교육 및 사례발표	●						●									

자료: 2008 지방자치단체별 특수시책.

② 평가인증 관련 지원

지방정부들은 평가인증을 독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시(도)비 또는 구(군)비 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참여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은 수수료 지원, 환경개선비 또는 기자재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시설당 1,000,000원에서 1,500,000원 사이의 재정지원을 한다. 교사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월 30,000원에서 50,000원의 지원 또는 견학비로 시설당 500,000원 내외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 두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평가인증에 대한 외부 인력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데, 평가인증조력단을 구성하거나 평가인증 참여시설의 각종 서식 제작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표 II-2-13> 지방정부의 평가인증 지원 특수시책 현황(2008)

사업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경남	충북	경북	전북	전남	제주
평가인증 참여수수료	●							●		●			●			
평가인증조력지원						●										
참여시설 4대보험지원								●								
현장학습비									●							
환경개선비									●				●			
인증시설 교재교구비	●															
시설 지원	●					●		●								

자료: 2008 지방자치단체별 특수시책.

③ 인프라 구축

인프라 구축은 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군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지원하거나 기타 시설을 설립하고, 보육 정보화율을 높이기 위하여 전산장비를 확충하거나 각종 유지 보수비를 지원한다. 또한,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를 위한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부모 교육과 종사자 행사를 지원한다. 특히 인천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방정부는 한마음대회 또는 보육인 어울마당이라는 보육종사자 행사를 지원한다.

그 밖에 서울과 경기도는 지역 차원에서 보육모니터링단을, 대전은 보육시설 자원봉사자 인력은행을 운영하는 등 지역 수요에 필요한 보육시설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 II-2-14> 지방정부의 인프라 구축사업 특수시책 현황(2008)

사업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경남	충북	경북	전북	전남	제주
사군센터지원				●		●		●	●							
보육 정보센터		●														
복합시설건립		●														
운영비지원								●								
키즈센터 건립	●															
보육위원회 회의 수당														●		
보육모니터링단 운영	●							●								
보육상담실 지원	●			●												
보육시설자원봉사자 인력은행운영						●										
전산화				●											●	
전산장비확충	●					●										
유지보수비															●	
IT 활용	●															
보육 정보화																
표준보육행정사용료													●			
회계프로그램관리 지원							●						●			
보육료 지원모바일 안내서비스	●															
보육 사업 안내 책자제작 배부													●			
학부모 보육 특강	●						●									
어르신과의 영, 유아결연사업																●
보육시설이용설문조사													●			
자연체험학습장 운영					●											●
영유아 행사																
그림그리기 대회								●						●		
어린이날 행사	●				●		●						●			
작품전시회						●			●							
재롱 잔치	●															
마라톤 대회	●															
성폭력 지킴이													●			
다도및예절교육								●								
과학워크샵/캠프								●					●			
보육교사, 공무원표창	●	●														●
모범 보육시설 선정										●						
보육시설단체운영비											●					
사회단체보조금지원								●								
교재교구제작행사						●		●			●				●	
보육인 어울마당	●		●		●			●		●		●	●	●		
보육시설연합회 행사비지원								●								
도-돛도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									●							
한마음대회	●	●	●				●	●	●	●	●	●	●	●	●	●
보육교사 체육대회	●							●					●		●	

자료: 2008 지방자치단체별 특수시책.

3) 유아 교육 정책 사업 현황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시행되는 유아교육지원비는 유아학비지원(만 5세아 무상교육비,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유치원 교원인건비 보조(농어촌 사립유치원 교사 담임수당 지원), 유치원 교육력 지원비(사립유치원 교재·교구 지원, 하모니사업, 유치원평가사업), 유치원 환경개선비(종일제 시설환경개선사업, 공립병설 유치원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수행되고 있다.

시도교육청별로 실시되는 유아교육정책 역시 유치원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과, 유치원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분된다.

가) 예산지원 사업

① 유아교육비 추가 지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만 3-4세아 차등교육비와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그리고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이외에 시도교육청별로 다양한 추가 지원 정책들이 운영되고 있다.

<표 II-2-15> 시도교육청별 추가 교육비 지원 현황(2008년)

구분	내용	서울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울산	경기	충남	경북	경남	전남	제주
3-4세아	만 4세아 조기 입학 예정시 만5세아 무상교육비						●		●				●
	면 이하 만5세 이상 무상교육비							●					
5세아	사회적 취약 지역 만5세아 교육비						●						
	취학유예 유아 만5세아 무상교육비 재 지원						●		●				●
두자녀 이상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시 차등교육비			●					●				
	정부지원단가 100%초과시 정부지원단가 지원												
장애아	셋째아 이후 취학 직전 유아 추가교육비										●		
	특수교육운영위원회로부터 취학유예 승인 받은 유아 1년 지원					●							
기타	사립유치원 이용 원아 보조금												●
	연차적 유아교육 학비지원 확대							●					
	유아 학비지원 단가 인상					●		●					
	유아대상 미술학원 유아교육위탁 기관 지정시 교육비	●					●						
	중산층 자녀 유아학비 지원				●								

자료: 각 시도교육청별 유아교육사업계획(2008).

먼저, 울산, 충남과 제주에서는 만 4세아 조기 입학 예정시 학부모 서약서를 제출하면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5세아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면 단위 이하에 거주하는 만 5세아 이상 유아들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울산, 충남과 제주도는 취학유예 유아에게도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재 지원한다. 그 밖에 사립유치원 이용시 유아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중산층 자녀에 대한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② 인건비 추가 지원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사립유치원 설립비,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교재·교구비,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수행하고 있는 인건비 지원사업으로는 교사수당지원, 보조원인건비 지원, 보조인력 지원 등이 있다.

<표 II-2-16> 시도교육청별 추가 인건비 지원 현황(2008년)

구분	내용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울산	강원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교사수당	농어촌지역 사립유치원 학급 담임 수당	●	●		●	●	●											
	방중 유아 여름(겨울)학교 운영 강사비																●	
	담임수당	●							●		●	●			●	●	●	
	원감비담임 교사 수당	●																
	원장·원감 겸직수당		●					●					●	●	●		●	
보조인력	공립유치원 교원자격증 소지자 보조인력				●													
	단설(공립)유치원 급간식 종사자							●				●						
	지원봉사자	●	●	●										●	●	●	●	
	학습보조원 인력 지원	●		●	●							●	●			●	●	
	공립유치원 교무전담보조원 활용		●						●									
	단설유치원 급식인력 지원								●									
	유치원 시간연장제 업무 보조자 지원						●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													
	대학생 자원봉사단 운영	●	●	●	●			●	●	●	●	●	●	●	●	●	●	●
	유아교육 전공 대학생 자원봉사단운영	●	●															

자료: 각 시도교육청별 유아교육사업계획(2008).

시도 교육청들은 교사 수당, 보조인력지원 등의 인건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교사 수당은 주로 담임수당 및 원장·원감 겸직수당과 방학 중에 특별 활동을 하는 경우의 강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인력 지원의 경우는 급간식인력과 시간연장제 또는 장애아 특수교육보조원과 같이 새로운 수요에 따라서 채용한 추가 인력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③ 시설 운영비 지원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시도 교육청마다 유치원 내 독서실 설치 또는 운영, 무상교육대상자(저소득층) 급식비, 교재교구비, 통학버스 지원, 도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II-2-17> 시도교육청별 시설운영비 지원 현황(2008년)

구분	내용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울산	강원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보조금	사립유치원 이용 원아 보조금																●
도서 지원	작은 독서실 운영, 장서확충, 도서대여 활성화	●	●	●			●					●	●				●
급식비	공립유치원 무상교육대상자						●						●				
	급식관리 지원								●								
	무상교육비 대상 유아						●			●		●					
	농어촌 유아학비 지원 제외된 원아																●
교재교구비	공립유치원	●	●	●	●					●	●	●	●	●			
	공립유치원 종일제																●
	교단 선진화 기자재	●									●						
교구보급	교재교구 나눔터 운영	●											●				
	멀티미디어 교수학습자료기기 보급	●	●						●		●	●	●	●	●	●	●
통학지원	공립유치원 통학버스운영 및 지원비	●	●				●				●	●	●	●			●
	농촌지역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													
	통학버스 임차비																●

자료: 각 시도교육청별 유아교육사업계획(2008).

유치원 종일제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비, 인건비, 교재·교구비, 그 밖에 운영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종일제 운영중에서도 지역의 수요에 따라 방학중에 운영하거나 오후 별도 종일제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운영 지원이 있다. 특히, 시설 환경 개선비와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 사업은 가장 많은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종일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가단을 조직하거나 만족도 조사 등의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표 11-2-18> 시도교육청별 종일제 지원 현황(2008년)

구분	내용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울산	강원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운영비	농산어촌 소규모 유치원 종일반 공동운영							●				●					
	맞춤형 종일제																●
	방중종일반 유치원			●	●		●								●	●	●
	독립종일제 운영			●							●						
	평토 종일반 운영			●													●
	방중 연중무휴 통합형운영			●												●	
	오후 별도 종일제 운영			●													
	종일제 운영 중심 유치원 인센티브												●				
	종일제 운영 지원센터 지원												●				
	종일제 중심 유치원 지정운영						●				●						
환경개선	공립유치원 종일제 시설 환경개선비	●	●	●	●	●	●	●	●	●	●	●	●	●	●	●	●
	사립유치원 종일제 시설 환경개선비	●		●	●	●	●	●	●	●	●	●	●	●	●	●	●
	종일제 프로그램 교재교구 개발,보급	●		●	●	●	●	●	●	●	●	●	●	●	●	●	●
인건비	종일제 감사비							●	●	●	●	●	●	●	●	●	●
	종일제 인력지원 및 인건비 및 수당	●	●	●	●	●	●	●	●	●	●	●	●	●	●	●	●
	종일제 전담교사 시간외 근무수당																
	농산어촌 에듀케어(종일제) 유치원 순회교사																●
보조원	공립 유치원 종일제 조리종사원 인건비					●											
	종일제 보조자 인건비					●	●			●	●						●
기타	종일제 교수, 학습지도안 및 교수, 학습자료			●		●	●										
	종일제 보육담당 감사 워크숍, 세미나 개최							●									
	종일제 운영 평가단 조직운영																●
	종일제 운영 학부모 만족도 조사(연 1회)							●	●								
	종일제 교육과정 지원단 조직, 운영																●
	종일제(에듀케어) 교원 연수	●				●	●	●	●			●					

자료: 각 시도교육청별 유아교육사업계획(2008).

④ 환경개선비 지원

유치원 환경개선 사업은 기본적인 안전점검과 더불어 시도교육청의 역점 사업에

따라 시설 관련 증설 또는 보수 사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다. 주로 환경개선비는 국공립 유치원에 우선 지원되는 경향이 있지만, 몇몇 시도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 시설 환경개선비로 사립유치원 실내외 놀이터 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2-19> 시도교육청별 환경개선비 지원 현황(2008년)

구분	내용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울산	강원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안전점검	안전점검실시	●	●	●	●	●	●	●	●	●	●	●	●	●	●	●	●	
	유치원 주변 안전지대 구축	●																
시설개선	공,사립 시설환경	●		●	●					●					●	●		
	공립유치원 시설 환경							●	●					●	●	●		
	만3,4,5세 적합시설 보완									●								
	공립실외놀이터시설 개선	●	●	●				●		●			●	●		●		
	교단 환경 개선비	●																
	노후 교육시설 개보수			●		●												
	사립유치원 환경개선비										●		●	●	●			
	유아교육원 시설환경개선비	●														●		
	자료실 산증설									●								
	식당 산증설									●								
	모범학습준비실 조성													●				

자료: 각 시도교육청별 유아교육사업계획(2008).

⑤ 기능보강비

기능보강비 지원은 주로 공립 유치원 산증설 사업이며 전체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 II-2-20> 시도교육청별 기능보강비 지원 현황(2008년)

구분	내용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울산	강원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신증축	공립 단설유치원 산증설	●	●	●	●	●	●	●		●	●	●	●	●	●	●	●
	공립 병설 유치원 산증설	●	●	●	●		●	●	●	●	●	●	●	●	●	●	●
	공립유치원 부대시설신증축								●								
통폐합	소규모 병설 유치원 통폐합	●	●												●		
활용	지역 거점 시설의 효율적 이용(도서관, 체육관등)														●		
	추가경비															●	

자료: 각 시도교육청별 유아교육사업계획(2008).

⑥ 기타 지원

4개의 기초 자치단체에서 유치원에 운영비 보조 성격의 난방비, 건강진단비와 교재교구비 및 종일반 운영 관련 지원을 하고 있다.

<표 II-2-21> 지방정부별 유치원 지원 현황(2008년)

구분	내용
부산	사립 유치원난방비 지원(사하구)
경기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부천), 사립유치원 종일반 환경개선사업비(부천), 사립유치원 교재 교구비 지원(부천)
강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횡성)
경남	유치원 유아 건강진단비 지원(거제시)

자료: 2008 시도별 특수시책.

나) 유치원 운영지원 사업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치원 운영지원 사업은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의 지원책들을 포함한다. 교원 연수, 장학 및 평가 제도와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들이 있다.

① 교원 연수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원 연수는 유치원 교원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실시되고 있다. 원장, 원감, 교사에 대한 직무 특성별 연수가 실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무 연수 역시 지역별로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울산과 강원은 원장 연수 또는 연찬회를, 광주와 충남은 교원연수지원 사업을 서울은 통합결재시스템 활용 방법 연수를 운영한다.

개별 교육청마다 교육과정에 대한 특성화된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별로 특화된 연수로 충남은 놀이지도, 성교육, 안전교육 연수가 이루어지며, 제주는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 관련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 대구와 경북, 경남은 유아 창의성 교육 관련 교원 연수를, 충남은 전통교육 연수를 실시한다. 울산에서는 초등학교원이 유치원 교육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동일한 교수

학습지도 연수에 대해서도 서울은 교육방법혁신을 위한 멘토링 교원 연수, 부산은 교실수업 개선 연수 등 다양한 명칭으로 특화되어 있다.

<표 11-2-22> 시도교육청별 종사자 연수 현황(2008년)

구분	내용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울산	강원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직무	원감직무연수				●	●					●		●	●	●	●	●
	교사직무연수	●	●		●	●	●	●	●		●	●	●			●	●
	신규교사 및 복직예정자 교사 연수			●	●	●	●	●	●				●		●	●	●
	사립유치원 종사자 연수	●				●		●	●		●						
	원장연수		●	●	●			●	●	●	●		●		●		
	관리자과정연수	●		●	●			●									
	교원 전문성 향상 직무연수	●						●				●	●	●	●	●	●
	국외연수					●		●	●		●			●		●	●
	방문형 맞춤형 연수									●					●		
	사이버직무연수												●		●	●	
	유 초 연계 연수								●		●	●					●
	지을연수		●	●												●	●
	교수학습지도연수	●	●	●					●		●					●	●
	교원/유아교육전문직연수	●									●	●				●	
	교육내용연수			●			●	●				●	●	●			●
	특별 수업내용 연수	●	●	●			●	●				●	●	●	●	●	●
	우수교육기관 방문연수														●		
	유치원별 정책 설명회															●	
	사이버장학 지원팀 연수									●			●				
	장학지도요원(장학사) 연수				●					●	●		●			●	●
	자율장학협의회 임원 및 원장연수	●															
	장학사 후보자과정 연수							●				●		●			
	수업장학요원 직무연수																
	자율장학요원 연수	●	●							●						●	
	자격 원장·원감 1급 정교사 자격	●		●			●		●	●	●	●	●	●	●	●	●
	보조자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	●	●						●			
		자원봉사자 연수	●					●					●				
	학교보조자원봉사자 연수	●	●	●	●		●	●	●	●	●	●	●	●	●	●	●
	경비	연수경비 및 여비		●		●	●	●					●				●
		원장·원감 1급, 정교사 자격연수비						●					●			●	●
지을연수 경비			●	●					●								
학교보조자원봉사자연수여비				●							●						

자료: 각 시도교육청별 유아교육사업계획(2008).

② 장학 및 평가

장학 및 평가와 관련된 사업들 역시 시도 교육청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유치원 내부 장학 뿐만 아니라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장학 활동을 지원한다.

<표 II-2-23> 시도교육청별 장학 및 평가제도 현황(2008년)

구분	내용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울산	강원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원내	담임장학	●								●	●						●	
	동료장학	●								●							●	
	멘토링기법 이용한 수업장학				●										●			
	(신규교사) 멘토링제 운영	●	●				●		●		●				●	●		
	자율장학	●	●	●			●	●			●	●		●	●		●	
	자율장학 요원 연수	●	●						●								●	
원외	맞춤형 지원 장학	●	●	●	●	●	●		●		●							
	사이버(통신)장학	●	●	●		●	●				●	●			●			
	수업장학			●		●									●	●		
	요청 장학	●	●	●		●	●					●			●	●		
	컨설팅 장학	●		●							●				●			
	각종 특별 장학	●	●			●	●	●							●			
	협력장학		●					●		●								
	보육시설 장학지도			●														
	원내자율장학공모제			●														
	지원	장학관련 경비 또는 업무수당	●	●								●		●				
		인터넷 장학 상담 및 자료 탑재					●											
장학 자료 개발, 보급						●			●	●						●	●	
동료장학위원 위촉 운영									●									
장학요원제 운영		●		●	●	●				●	●						●	
자율장학위원회(협의회) 운영			●	●			●	●					●			●	●	
장학사 간 멘토링제 운영																	●	
장학사합동근무제			●															
장학요원 인력풀제 조작운영		●				●						●		●				
장학자료 발간 협의회									●									
장학지도위원회 구성 및 연수		●		●	●						●		●					
시범	시범(연구) 유치원	●	●	●	●	●	●	●	●	●	●	●	●	●	●	●	●	
평가	평가 관련 발표 또는 보고회	●			●													
	평가 편람 개발									●								
	다면 평가방법 활용								●			●		●				
	과정 또는 정책 평가	●							●								●	
	유치원 평가단 구성, 운영				●		●			●								
	만족도 조사(교사, 학부모)				●		●	●	●							●		
	유아교육정책 모니터링 운영									●			●					
	평가결과 우수유치원 인센티브	●	●		●	●			●	●			●	●		●		
	평가단 및 평가위원 연수	●			●					●								
	평가담당자 회의								●									
	평가대상 유치원 교원 연수	●			●		●		●									
	평가대상 유치원 준비비 또는 평가비	●	●														●	
	평가방법 혁신 지원	●																

자료: 각 시도교육청별 유아교육사업계획(2008).

원의에서 실시된 각종 특별 장학에서 광주는 대학연계자문과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자문을 내용으로 하는 장학을 울산은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협력 장학과 같이 유치원 및 교육청 이외의 인력풀을 활용하고 있다. 각종 시범 유치원 역시 지역별로 차별적인데, 서울은 유치원교육과정 연구유치원을, 부산은 지역모델 중점 육성유치원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비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날" 지역모델 중점육성 유치원을 운영한다. 강원은 교육실습 협력 유치원, 자율선도 유치원, 종일반 모델유치원, 홍보전략 연구유치원 등 가장 많은 연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 유치원에 대한 자문교수를 위촉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교육과정 관리를 위하여 장학제도 이외에 2007년도에는 유치원 평가제도가 시범 운영된 후 200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유치원 평가 실시의 목적도 시도 교육청마다 상이하다. 서울과 부산은 수월성 제고, 울산은 공교육화 촉진, 경북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평가 등이다. 세부 과정 또는 정책 평가를 실시한 시도 교육청은 강원은 유아발달 및 교육과정 운영 평가, 서울시는 수업방법개선 연구교사1차 평가, 제주는 개발프로그램 적용 후 현장 적용 지원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③ 인프라 구축

유아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사업으로는 각종 정보매체를 이용한 유아교육 지원과 홍보,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유아종합교육원, 유아교육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한 지원 및 교육 행사 등이 있다.

시도 교육청마다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정보화 사업이 홈페이지 또는 교수학습 지원센터나 정보자료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기관 홈페이지 활성화 사업으로는 서울, 대구, 충북, 전남에서 유치원 홈페이지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활성화 사업은 서울,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전남이, 충북은 유아교육연구회 홈페이지 운영을 정보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부모교육 자료실 홈페이지 활용 사업을 광주가, 우수교육사례 탑재 사업은 대구, 대전, 인천,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가 시행하고 있다. 대구는 특히 특성화 (창의성 등)교육자료를 탑재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유아교육정보 포털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울산은 홈페이지 제작 활성화와 더불어 운영위원을 구성하고 경기도는 홈페이지 이용 만족도 조사도 실시되고 있다.

<표 II-2-24> 시도교육청별 인프라 구축 현황(2008년)

구분	내용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울산	강원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정보화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인터넷) 및 교육정보화 기반구축	●	●			●	●	●			●	●					●	●
	업무 간소화를 위한 교육정보 시스템 운용	●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									
	유아 교육정보 자료 은행제 및 자료센터 운영		●	●	●				●					●				
	기관 홈페이지 활성화	●	●	●								●	●					●
	우수교육사례 홈페이지 탑재 및 홍보			●	●	●	●	●				●	●	●	●	●	●	●
	영상 및 홈페이지 통한 교육활동 (부모교육 포함)	●	●		●							●	●			●	●	
기관	유아교육원내 유아전용도서관 및 개관		●					●									●	
	유아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				●				●	●					
	유아교육진흥원 또는 유아종합교육원 설립 및 운영		●					●	●	●	●	●	●	●	●	●	●	
	유아체형교육원 설립 및 운영		●					●	●								●	
	교육정보 메일링 서비스	●																
행사	연구활동 발굴 및 표창(교사,유치원)및 인센티브		●	●	●		●		●	●	●			●	●	●	●	●
	유아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				
	수업연구관련 발표대회	●	●		●	●	●		●		●	●	●	●	●	●	●	●
	교재교구 및 학습자료 전시회			●		●	●					●				●		●
	각종 연구 및 발표 대회	●		●				●				●	●	●	●	●	●	●
홍보	유아교육홍보단 구성								●									
	에듀케어 홍보 및 정보제공	●	●															
	유아교육 홍보 홈페이지 활용													●	●		●	
	유아교육 홍보자료 제작보급	●	●			●	●	●		●				●	●	●	●	

자료: 각 시도교육청별 유아교육사업계획(2008).

각종 행사는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실시되며 지역별로 차별화되어 있다. 광주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및 결과물 전시회, 서울은 교사 기본생활습관지도 우수실천사례 발표대회, 제주의 유치원교사 현장 연구대회, 대구·충남·경북·전북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별 아동1인당 비용지원 현황

지방자치단체별로 영유아 1인당 교육보육 비용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지원 현황의 특징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비용분석에서 보육시설 이용에서는 이용시 소요되는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을 산출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비교분석하였다. 그러나 유치원의 경우에는 공립유치원은 유아 1인당 교육비용 산출이 가능했던 반면, 사립유치원은 교육비가 자율화되어 있어 정부지원금만을 산출할 수 있었을 뿐 유아 1인당 총비용 산출은 가능하지 못했다. 영유아 1인당 교육비와 보육비를 산출하는 이유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예산 또는 보육 예산의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유아에게 배분되는 규모가 작다면 지원 수준이 높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

1) 산출 방식

인건비 지원 여부에 따라서 인건비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로 구분하였다. 지원시설에는 국공립, 법인, 법인 외(민간), 영아전담(민간), 장애아 전담(민간)보육시설이 포함되었고, 미지원시설에는 민간 보육시설 중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시설, 부모 협동, 가정 보육시설이 포함되었다.

<표 II-3-1> 보육시설 구분 기준

구분	내용
인건비 지원 시설	국공립, 법인, 법인 외(민간), 영아전담(민간), 장애아 전담(민간)
인건비 미지원 시설	민간 보육시설 중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시설 제외한 나머지, 부모협동, 가정 보육시설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항목별로 포함된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대체적으로는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비 등이 포함되었다.

<표 II-3-2>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 항목 구성

항목		주요 내용
보육료	지원시설	중앙 정부 기준 보육료, (보건복지부, 2008보육사업안내)
	미지원시설	지방정부별 자체 기준
기본보조금		중앙 정부 기준
인건비	공통	우수교사수당, 대체·비상근교사 등
	지원시설	인건비, 각종수당 등
	미지원시설	교사 복지후생, 처우개선비
	기타	취사부, 간호사, 치료사 등 인건비/수당
운영비	미지원시설	취사부 인건비/수당, 차량운영기사 인건비/수당,
	공통	영유아 간식비, 냉난방비, 영유아행사지원, 배상보험료 등
	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영유아 간식 및 급식비
환경개선비	미지원시설	냉난방비, 영유아 간식비, 교재교구비 등
	공통	전기가스안전점검, 식기세척기, 소독 방재 등
	지원시설	기자재 구입, 개보수
인프라	미지원시설	개보수
	공통	평가인증관련 각종 지원

2) 지방정부별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

지방정부별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을 산출한 결과, 인건비 지원시설의 경우 0세아의 경우 1인당 보육비용이 작게는 818,190원에서부터 많게는 1,035,991원까지 217,801원의 차이가 있다. 인건비 미지원시설의 경우도 0세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작은 지역은 796,157원이고 가장 많은 지역은 719,504원으로 76,653원의 차이가 있다. 이처럼 지방 정부별 차이는 인건비 미지원시설보다는 지원시설에서 더 크다. 또한, 보육 비용 총액에 있어서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0세아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시설의 79.1%의 비용이 들어간다. 지방정부별로 인건비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에 대한 지원 내용과 방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미지원시설의 지원시설 대비 비용은 0세아를 기준으로 가장 71.9%에서 85.2%까지 차이가 있다.

이를 개별 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보육료에서 지방정부별 차이가 있다. 인건비 지원시설의 경우 전국이 모두 동일한 보육료를 받고 있지만, 인건비 미지원시설의 보육료의 경우 만 3세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8,000원에서부터 260,000원까지 52,000원 까지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인건비 지원액에 있어서도 지방정부별 차이가 크다. 0세아를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시설에서 영유아 1인당 인건비 지원액이 가

장 높은 지방정부는 644,671원을 지원하는 반면 가장 낮은 지방정부는 444,661원을 지원한다. 인건비 미지원 시설의 경우도 영유아 1인당 인건비 지원액이 가장 높은 지방정부는 59,980원인 반면 가장 낮은 정부는 757원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표 II-3-3>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2008예산기준)

단위 :원

구분		평균값	최고값	최저값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 총액*	인건비 지원시설	935,075	1,035,991	818,190
	인건비 미지원시설	738,672	796,157	719,504
영유아 1인당 월 인건비**	인건비 지원시설	364,215	644,671	444,661
	인건비 미지원시설	11,402	59,980	757
영유아 1인당 월 운영비	인건비 지원시설	7,277	22,353	205
	인건비 미지원시설	4,166	19,529	1,873
영유아 1인당 월 환경개선비	인건비 지원시설	6,610	15,379	369
	인건비 미지원시설	1,007	7,421	0
영유아 1인당 월 평가인증 지원비	모든시설	1,699	4,537	570

*와 **는 0세아 기준

*보육료 동일

영유아 1인당 월 운영비에서도 지방정부별로 인건비 지원시설의 경우 22,353원에서 205원까지 지원액수가 차이나고, 인건비 미지원시설의 경우도 19,529원에서 1,873원까지 지원액수가 차이가 있다. 영유아 1인당 월 환경개선비 역시 인건비 지원시설의 경우 15,379원에서 369원까지 지원액의 차이가 나고, 인건비 미지원시설의 경우 많게는 7,421원을 지원하고 지원하지 않는 지방정부도 2곳이 있다. 평가인증에 대한 각종 지원 및 인센티브의 경우도 영유아 1명당 4,537원에서 570원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의 인건비지원시설을 살펴보면 연령별로 0세아는 1인당 991,743원, 1세아 704,221원, 2세아 543,283원, 3세아 319,700원, 4세이상 271,385원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0세아는 1인당 796,157원, 1세아 550,337원, 2세아 427,700원, 3세아 270,517원, 4세이상 262,415원이 소요된다.

이로써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지원시설에 비하여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이 평균 83.7% 수준이다.

<표 II-3-4> 서울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2008예산기준)

단위: 원

구분	연령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	평가인증지원	계	
			교사	기타	소계					
지원 시설	0	372,000	591,606	14,698	606,304	4150	7977	1312	991,743	
	1	327,000	354,963	8,819	363,782	4150	7977	1312	704,221	
	2	270,000	253,545	6,299	259,844	4150	7977	1312	543,283	
	3	185,000	118,321	2,940	121,261	4150	7977	1312	319,700	
	4	167,000	88,741	2,205	90,946	4150	7977	1312	271,385	
미지원 시설	0	372,000	340,000	59,980	2,070	620,500	19529	1266	1312	796,157
	1	327,000	164,000	35,988	1,242	372,300	19529	1266	1312	550,337
	2	270,000	109,000	25,706	887	265,930	19529	1266	1312	427,700
	3	236,000		11,996	414	124,100	19529	1266	1312	270,517
	4	231,000		8,997	311	9,308	19529	1266	1312	262,415

부산의 인건비지원시설을 살펴보면 연령별로 0세아는 1인당 853,590원, 1세아 620,391원, 2세아 482,735원, 3세아 290,193원, 4세이상 248,668원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0세아는 1인당 727,496원, 1세아 498,907원, 2세아 385,132원, 3세아 233,764원, 4세이상 213,247원이 소요된다.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지원시설에 비하여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이 평균 82.3% 수준이다.

<표 II-3-5> 부산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2008예산기준)

단위: 원

구분	연령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	평가인증지원	계
지원 시설	0	372,000	470,496	5,076	4,325	1,693	853,590
	1	327,000	282,297	5,076	4,325	1,693	620,391
	2	270,000	201,641	5,076	4,325	1,693	482,735
	3	185,000	94,099	5,076	4,325	1,693	290,193
	4세이상	167,000	70,574	5,076	4,325	1,693	248,668
미지원 시설	0	372,000	340,000	10,357	3,446	1,693	727,496
	1	327,000	164,000	6,214	3,446	1,693	498,907
	2	270,000	109,000	4,439	3,446	1,693	385,132
	3	230,000		2,071	3,446	1,693	233,764
	4세이상	210,000		1,554	3,446	1,693	213,247

대구의 인건비지원시설을 살펴보면 연령별로 0세아는 1인당 826,051원, 1세아

602,090원, 2세아 468,393원, 3세아 281,129원, 4세이상 240,759원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0세아는 1인당 724,685원, 1세아 498,064원, 2세아 384,492원, 3세아 228,395원, 4세이상 210,937원이 소요된다.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지원시설에 비하여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이 평균 84.2% 수준이다.

<표 II-3-6> 대구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2008예산기준)

단위: 원

구분	연령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	평가인증지원	계	
지원 시설	0	372,000	447,402	2,253	2,909	1,487	826,051	
	1	327,000	268,441	2,253	2,909	1,487	602,090	
	2	270,000	191,744	2,253	2,909	1,487	468,393	
	3	185,000	89,480	2,253	2,909	1,487	281,129	
	4세이상	167,000	67,110	2,253	2,909	1,487	240,759	
구분	연령	보육료	기본보조금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	평가인증지원	계
미지원 시설	0	372,000	340,000	9,172	1,952	74	1,487	724,685
	1	327,000	164,000	5,503	1,952	74	1,487	498,064
	2	270,000	109,000	3,931	1,952	74	1,487	384,492
	3	225,000		1,834	1,952	74	1,487	228,395
	4세이상	208,000		1,376	1,952	74	1,487	210,937

인천의 인건비지원시설을 살펴보면 연령별로 0세아는 1인당 909,648원, 1세아 657,092원, 2세아 511,140원, 3세아 307,537원, 4세이상 263,592원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0세아는 1인당 736,565원, 1세아 507,573원, 2세아 392,148원, 3세아 237,582원, 4세이상 219,583원이 소요된다.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지원시설에 비하여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이 평균 79.0% 수준이다.

<표 II-3-7> 인천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2008예산기준)

단위: 원

구분	연령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	평가인증지원	계	
지원 시설	0	372,000	518889	2002	15379	1378	909,648	
	1	327,000	311333	2002	15379	1378	657,092	
	2	270,000	222381	2002	15379	1378	511,140	
	3	185,000	103778	2002	15379	1378	307,537	
	4세이상	167,000	77833	2002	15379	1378	263,592	
구분	연령	보육료	기본보조금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	평가인증지원	계
미지원 시설	0	372,000	340,000	19979	2610	598	1378	736,565
	1	327,000	164,000	11987	2610	598	1378	507,573
	2	270,000	109,000	8562	2610	598	1378	392,148
	3	229000		3996	2610	598	1378	237,582
	4세이상	212000		2997	2610	598	1378	219,583

광주의 인건비지원시설을 살펴보면 연령별로 0세아는 1인당 818.190원, 1세아 595,326원, 2세아 462,098원, 3세아 275,461원, 4세이상 235,228원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3-8> 광주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2008예산기준)

단위: 원

구분	연령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	평가인증지원	계	
지원 시설	0	372,000	444661	205	369	955	818,190	
	1	327,000	266797	205	369	955	595,326	
	2	270,000	190569	205	369	955	462,098	
	3	185,000	88932	205	369	955	275,461	
	4세이상	167,000	66699	205	369	955	235,228	
구분	연령	보육료	기본보조금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	평가인증지원	계
미지원 시설	0	372,000	340,000	4676	1873		955	719,504
	1	327,000	164,000	2806	1873		955	496,634
	2	270,000	109,000	2004	1873		955	383,832
	3	222000		935	1873		955	225,763
	4세이상	206000		701	1873		955	209,529

그러나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0세아는 1인당 719,504원, 1세아 496,634원, 2세아 383,832원, 3세아 225,763원, 4세이상 209,529원이 소요된다.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지원시설에 비하여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이 평균 85.1% 수준이다.

대전의 인건비지원시설을 살펴보면 연령별로 0세아는 1인당 866,852원, 1세아

627,004원, 2세아 486,498원, 3세아 290,156원, 4세이상 247,800원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0세아는 1인당 723,297원, 1세아 501,994원, 2세아 389,864원, 3세아 240,691원, 4세이상 225,654원이 소요된다.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지원시설에 비하여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이 평균 83.5% 수준이다.

<표 II-3-9> 대전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2008예산기준)

단위: 원

구분	연령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	평가인증지원	계	
지원 시설	0	372,000	487,120	1,762	4,482	1,488	866,852	
	1	327,000	292,272	1,762	4,482	1,488	627,004	
	2	270,000	208,766	1,762	4,482	1,488	486,498	
	3	185,000	97,424	1,762	4,482	1,488	290,156	
	4세이상	167,000	73,068	1,762	4,482	1,488	247,800	
구분	연령	보육료	기본보조금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	평가인증지원	계
미지원 시설	0	372,000	340,000	757	9,024	28	1,488	723,297
	1	327,000	164,000	454	9,024	28	1,488	501,994
	2	270,000	109,000	324	9,024	28	1,488	389,864
	3	230,000		151	9,024	28	1,488	240,691
	4세이상	215,000		114	9,024	28	1,488	225,654

울산의 인건비지원시설을 살펴보면 연령별로 0세아는 1인당 972,335원, 1세아 692,653원, 2세아 535,075원, 3세아 315,971원, 4세이상 268,636원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0세아는 1인당 750,978원, 1세아 516,336원, 2세아 398,489원, 3세아 228,693원, 4세이상 215,988원이 소요된다.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지원시설에 비하여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이 평균 75.7% 수준이다.

<표 II-3-10> 울산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2008예산기준)

단위: 원

구분	연령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	평가인증지원	계
				교사	기타	소계				
지원 시설	0	372,000		586,545	160	586,705	6221	4811	2598	972,335
	1	327,000		351,927	96	352,023	6221	4811	2598	692,653
	2	270,000		251,376	69	251,445	6221	4811	2598	535,075
	3	185,000		117,309	32	117,341	6221	4811	2598	315,971
	4	167,000		87,982	24	88,006	6221	4811	2598	268,636
미지원 시설	0	372,000	340,000	33,946	160	34106	2174	100	2598	750,978
	1	327,000	164,000	20,368	96	20464	2174	100	2598	516,336
	2	270,000	109,000	14,548	69	14617	2174	100	2598	398,489
	3	217,000		6,789	32	6821	2174	100	2598	228,693
	4	206,000		5,092	24	5116	2174	100	2598	215,988

경기의 인건비지원시설을 살펴보면 연령별로 0세아는 1인당 911,639원, 1세아 664,757원, 2세아 521,236원, 3세아 320,875원, 4세이상 277,639원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0세아는 1인당 726,058원, 1세아 501,775원, 2세아 388,368원, 3세아 267,493원, 4세이상 247,083 원이 소요된다.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지원시설에 비하여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이 평균 80.3% 수준이다.

<표 II-3-11> 경기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2008예산기준)

단위: 원

구분	연령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	평가인증지원	계
				교사	기타	소계				
지원 시설	0	372,000		502,122	2,583	504,705	22353	11314	1267	911,639
	1	327,000		301,273	1,550	302,823	22353	11314	1267	664,757
	2	270,000		215,195	1,107	216,302	22353	11314	1267	521,236
	3	185,000		100,424	0,517	100,941	22353	11314	1267	320,875
	4세이상	167,000		75,318	0,387	75,705	22353	11314	1267	277,639
미지원 시설	0	372,000	340,000	7,981	0,225	8,206	4418	167	1267	726,058
	1	327,000	164,000	4,788	0,135	4,923	4418	167	1267	501,775
	2	270,000	109,000	3,420	0,096	3,516	4418	167	1267	388,368
	3	260,000		1,596	0,045	1,641	4418	167	1267	267,493
	4세이상	240,000		1,197	0,034	1,231	4418	167	1267	247,083

강원의 인건비지원시설을 살펴보면 연령별로 0세아는 1인당 948,388원, 1세아 682,856원, 2세아 531,342원, 3세아 320,324원, 4세이상 274,758원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0세아는 1인당 728,930원, 1세아 501,696원, 2세아 388,106원, 3세아 224,986원, 4세이상 213,522원이 소요된다.

강원의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지원시설에 비하여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이 평균 74.0% 수준이다.

<표 II-3-12> 강원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2008예산기준)

단위: 원

구분	연령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	평가인증지원	계	
지원 시설	0	372,000	551,330	14,026	6,495	4,537	948,388	
	1	327,000	330,798	14,026	6,495	4,537	682,856	
	2	270,000	236,284	14,026	6,495	4,537	531,342	
	3	185,000	110,266	14,026	6,495	4,537	320,324	
	4세이상	167,000	82,700	14,026	6,495	4,537	274,758	
구분	연령	보육료	기본보조금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	평가인증지원	계
미지원 시설	0	372,000	340,000	9,274	2,525	594	4,537	728,930
	1	327,000	164,000	5,565	2,525	594	4,537	501,696
	2	270,000	109,000	3,975	2,525	594	4,537	388,106
	3	218,000		1,855	2,525	594	4,537	224,986
	4세이상	207,000		1,391	2,525	594	4,537	213,522

충북의 인건비지원시설을 살펴보면 연령별로 0세아는 1인당 1,014,335원, 1세아 720,802원, 2세아 557,287원, 3세아 330,269원, 4세이상 281,202원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0세아는 1인당 729,483원, 1세아 502,946원, 2세아 388,574원, 3세아 241,410원, 4세이상 217,718원이 소요된다.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지원시설에 비하여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이 평균 72.3% 수준이다.

<표 II-3-13> 충북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2008예산기준)

단위: 원

구분	연령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	평가인증지원	계	
지원 시설	0	372,000	621333	15222	4656	1124	1,014,335	
	1	327,000	372800	15222	4656	1124	720,802	
	2	270,000	266285	15222	4656	1124	557,287	
	3	185,000	124267	15222	4656	1124	330,269	
	4세이상	167,000	93200	15222	4656	1124	281,202	
구분	연령	보육료	기본보조금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	평가인증지원	계
미지원 시설	0	372,000	340,000	13841	2291	227	1124	729,483
	1	327,000	164,000	8304	2291	227	1124	502,946
	2	270,000	109,000	5932	2291	227	1124	388,574
	3	235000		2768	2291	227	1124	241,410
	4세이상	212000		2076	2291	227	1124	217,718

충남의 인건비지원시설을 살펴보면 연령별로 0세아는 1인당 1,035,991원, 1세아 732,913원, 2세아 565,309원, 3세아 332,836원, 4세이상 282,577원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0세아는 1인당 768,690원, 1세아 529,558원, 2세아 409,787원, 3세아 245,425원, 4세이상 228,159원이 소요된다.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지원시설에 비하여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이 평균 74.6% 수준이다.

<표 II-3-14> 충남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2008예산기준)

단위: 원

구분	연령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	평가인증지원	계
			교사	기타	소계				
지원 시설	0	372,000	644.671	522	645193	9775	7421	1602	1,035,991
	1	327,000	386.802	313	387115	9775	7421	1602	732,913
	2	270,000	276.287	224	276511	9775	7421	1602	565,309
	3	185,000	128.934	104	129038	9775	7421	1602	332,836
	4세이상	167,000	96.701	78	96779	9775	7421	1602	282,577
구분	연령	보육료	기본보조금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	평가인증지원	계	
미지원 시설	0	372,000	340,000	45331	2336	7421	1602	768,690	
	1	327,000	164,000	27199	2336	7421	1602	529,558	
	2	270,000	109,000	19428	2336	7421	1602	409,787	
	3	225000		9066	2336	7421	1602	245,425	
	4세이상	210000		6800	2336	7421	1602	228,159	

전북의 인건비지원시설을 살펴보면 연령별로 0세아는 1인당 945,631원, 1세아 678,584원, 2세아 526,422원, 3세아 314,538원, 4세이상 268,782원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0세아는 1인당 745,388원, 1세아 513,248원, 2세아 396,474원, 3세아 234,109원, 4세이상 211,716원이 소요된다.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지원시설에 비하여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이 평균 76.5% 수준이다.

<표 II-3-15> 전북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2008예산기준)

단위: 원

구분	연령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	평가인증지원	계	
지원	0	372,000	555116			10593	5397	2525	945,631	
	1	327,000	333069			10593	5397	2525	678,584	
	2	270,000	237907			10593	5397	2525	526,422	
	3	185,000	111023			10593	5397	2525	314,538	
	4세이상	167,000	83267			10593	5397	2525	268,782	
구분	연령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	평가인증지원	계
미지원 시설	0	372,000	340,000	27,254	595	27849	3011	3	2525	745,388
	1	327,000	164,000	16,352	357	16709	3011	3	2525	513,248
	2	270,000	109,000	11,680	255	11935	3011	3	2525	396,474
	3	223000		5,451	119	5570	3011	3	2525	234,109
	4세이상	202000		4,088	89	4177	3011	3	2525	211,716

전남의 인건비지원시설을 살펴보면 연령별로 0세아는 1인당 938,256원, 1세아 670,603원, 2세아 518,180원, 3세아 305,949원, 4세이상 260,117원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0세아는 1인당 720,362원, 1세아 497,642원, 2세아 384,905원, 3세아 224,923원, 4세이상 214,708원이 소요된다.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지원시설에 비하여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이 평균 76.2% 수준이다.

<표 II-3-16> 전남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2008예산기준)

단위: 원

구분	연령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	평가인증지원	계	
			교사	기타	소계					
지원 시설	0	372,000	556,213	421	556,634	2839	5204	1579	938,256	
	1	327,000	333,728	253	333,981	2839	5204	1579	670,603	
	2	270,000	238,377	181	238,558	2839	5204	1579	518,180	
	3	185,000	111,243	84	111,327	2839	5204	1579	305,949	
	4세이상	167,000	83,432	63	83,495	2839	5204	1579	260,117	
미지원 시설	0	372,000	340,000	4,276	22	4298	2475	10	1579	720,362
	1	327,000	164,000	2,565	13	2578	2475	10	1579	497,642
	2	270,000	109,000	1,832	9	1841	2475	10	1579	384,905
	3	220,000		855	4	859	2475	10	1579	224,923
	4세이상	210,000		641	3	644	2475	10	1579	214,708

경북의 인건비지원시설을 살펴보면 연령별로 0세아는 1인당 934,315원, 1세아 674,204원, 2세아 525,013원, 3세아 317,093원, 4세이상 272,204원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0세아는 1인당 728,236원, 1세아 502,726원, 2세아 388,793원, 3세아 237,215원, 4세이상 212,652원이 소요된다.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지원시설에 비하여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이 평균 75.8% 수준이다.

<표 II-3-17> 경북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2008예산기준)

단위: 원

구분	연령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	평가인증지원	계	
지원 시설	0	372,000	537,778	8,343	14,631	1563	934,315	
	1	327,000	322,667	8,343	14,631	1563	674,204	
	2	270,000	230,476	8,343	14,631	1563	525,013	
	3	185,000	107,556	8,343	14,631	1563	317,093	
	4세이상	167,000	80,667	8,343	14,631	1563	272,204	
미지원 시설	0	372,000	340,000	11,276	3248	149	1563	728,236
	1	327,000	164,000	6,766	3248	149	1563	502,726
	2	270,000	109,000	4,833	3248	149	1563	388,793
	3	230,000		2,255	3248	149	1563	237,215
	4세이상	206,000		1,692	3248	149	1563	212,652

경남의 인건비지원시설을 살펴보면 연령별로 0세아는 1인당 998,423원, 1세아 707,616원, 2세아 545,270원, 3세아 319,809원, 4세이상 271,084원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0세아는 1인당 738,160원, 1세아 508,804원, 2세아 393,223원, 3세아 232,448원, 4세이상 217,404원이 소요된다.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지원시설에 비하여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이 평균 74.1% 수준이다.

<표 II-3-18> 경남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2008예산기준)

단위: 원

구분	연령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	평가인증지원	계	
지원 시설	0	372,000	614517	3176	7219	1511	998,423	
	1	327,000	368710	3176	7219	1511	707,616	
	2	270,000	263364	3176	7219	1511	545,270	
	3	185,000	122903	3176	7219	1511	319,809	
	4세이상	167,000	92178	3176	7219	1511	271,084	
구분	연령	보육료	기본보조금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	평가인증지원	계
미지원 시설	0	372,000	340,000	20890	3609	150	1511	738,160
	1	327,000	164,000	12534	3609	150	1511	508,804
	2	270,000	109,000	8953	3609	150	1511	393,223
	3	223000		4178	3609	150	1511	232,448
	4세이상	209000		3134	3609	150	1511	217,404

제주의 인건비지원시설을 살펴보면 연령별로 0세아는 1인당 995,805원, 1세아 706,158원, 2세아 544,309원, 3세아 319,510원, 4세이상 270,930원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0세아는 1인당 754,762원, 1세아 519,063원, 2세아 400,763원, 3세아 221,364원, 4세이상 212,526원이 소요된다.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지원시설에 비하여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이 평균 74.1% 수준이다.

<표 II-3-19> 제주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2008예산기준) 단위: 원

구분	연령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	평가인증지원	계
			교사	기타	소계				
지원 시설	0	372,000	575921	35697	611618	8439	3178	570	995,805
	1	327,000	345553	21418	366971	8439	3178	570	706,158
	2	270,000	246823	15299	262122	8439	3178	570	544,309
	3	185,000	115184	7139	122323	8439	3178	570	319,510
	4	167,000	86388	5355	91743	8439	3178	570	270,930
미지원 시설	0	372,000	기본보조금		36748	2135	3309	570	754,762
	1	327,000	164,000		22049	2135	3309	570	519,063
	2	270,000	109,000		15749	2135	3309	570	400,763
	3	208000			7350	2135	3309	570	221,364
	4	201000			5512	2135	3309	570	212,526

이상에서와 같이 지방정부별로 인건비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간에는 1인당 월 보육비용이 평균 78.2%이다. 연령별로 세분화시키지 않았을 때, 평균 74.1%에서 85.0%까지 차이가 난다. 결국, 지방정부가 어떤 특수시책을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0세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건비 미지원시설의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이 인건비 지원시설의 71.9%가 되기도 하고 87.9%가 되기도 한다. 연령별로도 연령별 교사:영유아 비율과 인건비 미지원 시설의 연령별 기본보조금의 차이, 그리고 지방정부별 보육료의 차이로 인하여 1세와 2세아에 대한 비용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3-20> 지방정부별 지원시설 대비 미지원시설 1인당 월 보육비용 비율(2008예산기준)

단위: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세	80.3	85.2	87.7	80.9	87.9	83.4	77.2	79.6	76.7	71.9	74.2	78.8	76.7	77.9	73.9	73.9
1세	78.1	80.4	82.7	77.2	83.4	80.0	74.4	75.4	73.3	69.7	72.2	75.5	74.1	74.5	71.8	71.8
2세	78.7	79.7	82.0	76.7	83.0	80.1	74.3	74.4	72.8	69.7	72.4	75.2	74.2	74.0	72.0	72.0
3세	84.6	80.4	81.1	77.2	81.9	82.9	72.1	83.3	69.8	73.0	73.6	74.2	73.4	74.7	72.6	72.6
4세이상	96.7	85.7	87.5	83.2	89.0	91.0	80.2	88.9	77.3	77.3	80.6	78.6	82.4	78.0	80.1	80.1
평균	83.7	82.3	84.2	79.0	85.0	83.5	75.6	80.3	74.0	72.3	74.6	76.5	76.2	75.8	74.1	74.1

나. 유아 1인당 지원액

1) 산출 방식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공립 유치원과, 교재교구비와 환경개선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하였다.

2) 시도교육청별 유아 1인당 지원액

시도교육청별 유아 1인당 지원액을 산출한 결과, 국공립 유치원 3세아의 경우 1인당 지원액이 작게는 261,575원에서부터 많게는 519,222원까지 차이가 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도 3세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원액이 가장 작은 지역은 2,598원이고 가장 많은 지역은 20,216원이다. 이처럼 시도 교육청별 차이는 사립유치원보다 국공립 유치원에서 더 크다.

<표 II-3-21> 유아 1인당 지원액 현황(2008예산기준)

		단위: 원		
구분		평균값	최고값	최저값
유아 1인당 지원총액*	국공립	376,195	519,222	261,575
	사립	9,643	20,216	2,598
유아 1인당 인건비**	국공립	248,589	340,622	165,862
	국공립	64,708	159,727	4,770
유아 1인당 운영비	사립	4,045	11,721	866
	국공립	24,919	86,438	623
유아 1인당 월 시설비	사립	1,349	3,086	0
	국공립	41,539	101,705	1,600
유아 1인당 목적사업비 등	사립	5,150	15,858	0

*와 **는 3세아 기준, 제주시제외

이를 개별 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인건비에서 시도 교육청별로 차이가 있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은 동일한 호봉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시도 교육청별로 3세아를 기준으로 반 당 정원이 15명에서 26명까지 차이가 있어 유아 1인당 인건비 액

수는 차이가 크게 난다. 따라서, 만 3세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건비는 165,862원에서 340,622원까지 차이가 있다.

유아 1인당 운영비에서도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4,770원에서 159,727원까지 지원액수가 차이나고, 사립 유치원의 경우도 866원에서 11,721원까지 지원액수가 차이가 있다. 유아 1인당 시설비 역시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623원에서 86,438원까지 지원액의 차이가 나고, 사립 유치원의 경우 많게는 3,086원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지원하지 않는 시도 교육청도 7곳이 있다. 유아 1인당 목적사업비에서도 국공립 유치원은 1,600에서 101,705원에 이르는 차이가 있고, 사립 유치원은 많게는 15,858원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1곳의 교육청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상의 유아 1인당 지원액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연령별로 3세아는 1인당 390,331원, 4세와 5세아가 320,096원 지원되고 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는 인건비 지원이 없는 관계로 유아 1인당 6,303원이 지원되고 있다. 부산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연령별로 3세아는 1인당 364,596원, 4세는 291,792원, 5세아에 280,091원이 지원되고 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는 인건비 지원이 없는 관계로 유아 1인당 19,336원이 지원되고 있다. 대구는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연령별로 3세아는 1인당 327,356원, 4세는 249,530원, 5세아에 220,050원 지원되고 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는 인건비 지원이 없는 관계로 유아 1인당 13,250원이 지원되고 있다. 인천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연령별로 3세아는 1인당 331,863원, 4세는 317,565원, 5세아에 312,513원 지원되고 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는 인건비 지원이 없는 관계로 유아 1인당 8,422원이 지원되고 있다. 광주에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연령별로 3세아는 1인당 261,575원, 4세는 228,082원, 5세아에 205,753원 지원되고 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는 인건비 지원이 없는 관계로 유아 1인당 6,046원이 지원되고 있다. 대전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연령별로 3세아는 1인당 357,563원, 4세는 236,369원, 5세아에 206,071원 지원되고 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는 인건비 지원이 없는 관계로 유아 1인당 5,226원이 지원되고 있다. 울산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연령별로 3·4세아는 1인당 301,986원, 5세아에 272,375원 지원되고 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는 인건비 지원이 없는 관계로 유아 1인당 7,667원이 지원되고 있다.

<표 11-3-22> 시도 교육청별 유아 1인당 월 교육예산 지원액-1(2008년 예산기준)

단위: 원

구분	연령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기타(목적사업비 등)	계	
서울	공립	3세아	210,707	159,727	3,335	16,562	390,331
		4세아	140,472	159,727	3,335	16,562	320,096
		5세아	140,472	159,727	3,335	16,562	320,096
	사립			2,305	2,232	1,766	6,303
부산	공립	3세아	236,612	82,047	19,172	26,765	364,596
		4세아	163,808	82,047	19,172	26,765	291,792
		5세아	152,107	82,047	19,172	26,765	280,091
	사립			1,692	1,786	15,858	19,336
대구	공립	3세아	272,392	45,749	6,388	2,827	327,356
		4세아	194,566	45,749	6,388	2,827	249,530
		5세아	165,086	45,749	6,388	2,827	220,050
	사립			11,721	805	724	13,250
인천	공립	3세아	165,862	87,670	8,236	70,095	331,863
		4세아	151,564	87,670	8,236	70,095	317,565
		5세아	146,512	87,670	8,236	70,095	312,513
	사립			2,084	474	5,864	8,422
광주	공립	3세아	167,468	29,555	61,175	3,377	261,575
		4세아	133,975	29,555	61,175	3,377	228,082
		5세아	111,646	29,555	61,175	3,377	205,753
	사립			2,200		3,846	6,046
대전	공립	3세아	302,985	48,284	623	5,671	357,563
		4세아	181,791	48,284	623	5,671	236,369
		5세아	151,493	48,284	623	5,671	206,071
	사립			2,868	452	1,906	5,226
울산	공립	3세아	177,666	33,445	5,628	85,247	301,986
		4세아	177,666	33,445	5,628	85,247	301,986
		5세아	148,055	33,445	5,628	85,247	272,375
	사립			866		6,801	7,667

경기에서는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연령별로 3세아는 1인당 258,028원, 4세는 190,540원, 5세아에 171,258원 지원되고 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는 인건비 지원이 없는 관계로 유아 1인당 5,019원이 지원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에서는 연령별로 3세아는 1인당 519,222원, 4세는 436,168원, 5세아에 388,708원 지원되고 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는 인건비 지원이 없는 관계로 유아 1인당 9,917원이 지원되고 있다.

<표 II-3-23> 시도 교육청별 유아 1인당 월 교육예산 지원액-2(2008년 예산기준)

단위: 원

구분	연령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기타(목적사업비 등)	계		
경기	공립	3세아	202,463	48,212	2,103	5,250	258,028	
		4세아	134,975	48,212	2,103	5,250	190,540	
		5세아	115,693	48,212	2,103	5,250	171,258	
	사립			2,714		2,305	5,019	
강원	공립	3세아	304,533	61,851	75,842	76,996	519,222	
		4세아	221,479	61,851	75,842	76,996	436,168	
		5세아	174,019	61,851	75,842	76,996	388,708	
	사립			3,856	1,472	4,589	9,917	
충북	공립	3세아	256,161	70,791	53,713	41,760	422,425	
		4세아	176,663	70,791	53,713	41,760	342,927	
		5세아	176,663	70,791	53,713	41,760	342,927	
	사립			3,373	3,082	6,704	13,159	
충남	공립	3세아	340,622	4,770	2,342	35,556	383,290	
		4세아	255,467	4,770	2,342	35,556	298,135	
		5세아	204,373	4,770	2,342	35,556	247,041	
	사립			3,067		4,536	7,603	
전북	공립	3세아	230,429	97,904	18,950	61,599	408,882	
		4세아	180,336	97,904	18,950	61,599	358,789	
		5세아	148,133	97,904	18,950	61,599	326,586	
	사립			9,208	1,274	9,734	20,216	
전남	공립	3세아	297,970	54,707	25,936	101,705	480,318	
		4세아	230,250	54,707	25,936	101,705	412,598	
		5세아	187,611	54,707	25,936	101,705	369,959	
	사립			2,598			2,598	
경북	공립	3세아	293,260	61,134	13,904	33,881	402,179	
		4세아	226,610	61,134	13,904	33,881	335,529	
		5세아	184,645	61,134	13,904	33,881	293,564	
	사립			4,443		2,967	7,410	
경남	공립	3세아	269,697	52,963	14,913	95,730	433,303	
		4세아	215,758	52,963	14,913	95,730	379,364	
		5세아	179,798	52,963	14,913	95,730	343,404	
	사립			2,388		8,851	11,239	
제주	공립			96,515	86,438	1,600	184,553	
		사립	도시	177	9,342	562	796	10,877
			농촌	190	9,342	562	796	10,890

자료: 2008년 유아교육 재정지원 현황(교육부 내부자료), 2007 유치원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반당 정원.

충북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연령별로 3세아는 1인당 422,425원, 4세와 5세는 342,927원이 지원되고 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는 인건비 지원이 없는 관계로 유아 1인당 13,159원이 지원되고 있다. 충남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연령별로 3세아는 1인당 383,290원, 4세는 298,135원, 5세아에 247,041원이 지원되고 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는 인건비 지원이 없는 관계로 유아 1인당 7,603원이 지원되고 있다. 전북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연령별로 3세아는 1인당 408,882원, 4세는 358,789원, 5세아에 326,586원 지원되고 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는 인건비 지원이 없는 관계로 유아 1인당 20,216원이 지원되고 있다. 전남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연령별로 3세아는 1인당 480,318원, 4세는 412,598원, 5세아에 369,959원 지원되고 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는 인건비 지원이 없는 관계로 유아 1인당 2,598원이 지원되고 있다. 경북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연령별로 3세아는 1인당 402,179원, 4세는 335,529원, 5세아에 293,564원 지원되고 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는 인건비 지원이 없는 관계로 유아 1인당 7,410원이 지원되고 있다. 경남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연령별로 3세아는 1인당 433,303원, 4세는 379,364원, 5세아에 343,404원 지원되고 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는 인건비 지원이 없는 관계로 유아 1인당 11,239원이 지원되고 있다. 제주는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184,553원이 지원되고 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를 다른 지역과 다르게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도시의 사립유치원에는 유아 1인당 10,877원이, 농촌은 10,890원이 지원되고 있다.

Ⅲ. 주요국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지원정책

주요국의 육아지원정책 사례로는 일본, 호주,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본은 중앙에서 총괄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한 후 개별 지방정부가 이를 기초로 하여 지역별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이에 반하여 호주나 미국은 당초 지방의 주 정부가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오다가 이후 주 정부들이 연합하여 연방정부를 수립한 형태로, 육아지원정책 역시 주로 주 정부가 중심이 되어 각기 특색있게 운영되는 특징을 지닌다.

1. 일본의 육아지원정책

일본은 중앙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육아지원정책이 특색있게 안정적으로 수행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육아지원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정부는 후생노동성으로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법에서 보육소 운영 최저기준, 설치인가, 입소, 보육지침, 식사건강위생관리, 안전관리, 직원, 지도감독, 비용의 지원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각각의 시도별 별도의 보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사업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사회전체가 아동의 성장과 양육을 응원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동, 자녀양육 응원 플랜’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육아지원정책은 현재 이원병행체제로 유치원은 문부과학성에서, 보육소는 후생노동성에서 관할하고 있다. 따라서 유치원은 ‘학교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이며, 보육소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이다.

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역할

일본의 보육사업은 1875년 정부가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아이들이 수업에 자신의 동생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설(komorigakko: baby-sitter school)을 제공한 것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공장 보육소가 개

설되면서 증가되었으며 1919년에는 저소득층을 위하여 공립 보육소를 설립하기 시작하였고, 1947년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어 비로소 보육사업이 복지 시설로 인정받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 들어서는 여성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육소의 양적 팽창과 함께 질적 향상을 이루고자 정부는 1967년 보육소 긴급 정비 5개년 계획을 통해 이를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1966년 합계출산율이 1.58이 되는 소자화 현상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정부는 저출산의 흐름을 변화시키려고 정부, 지방공공단체, 기업체 등이 일체가 되어 차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계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후 1990년대 들어 출산율 저하와 함께 일하는 여성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자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문부성, 후생성, 노동성, 건설성의 4개성이 공동으로 ‘엔젤플랜’을 1994년부터 1999년 기간동안 추진하기에 이른다. 이로써 영아보육(0-2세), 연장보육, 일시보육, 방과후 보육, 다기능(통합) 보육시설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영유아 건강지원 1일 서비스 사업, 보육시설의 인력 확충,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의 경감을 위한 보육료 경감, 지역아동양육지원센터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어서 2000년부터는 ‘엔젤플랜’의 후속으로 ‘신엔젤플랜(2000-2004년)’을 전개한 바 있다.

신엔젤플랜은 저연령아 입소 아동수의 확대, 연장보육 추진, 휴일보육 추진, 일시보육 추진, 영유아 건강 지원, 일시 위탁 추진, 다기능 보육소등의 정비, 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 정비, 패밀리리포트센터 정비, 후레후레 텔레폰사업 정비, 아동센터의 전국 전개, 소아 구급의료 지원사업 추진, 아동 24시간 전화상담 추진, 가정교육 24시간 전화상담 추진 등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밖에 불임전문상담센터와 출산전후 의료 네트워크와 같은 임신·출산 지원과 더불어 아동방속국 추진, 방과후 아동클럽과 같은 취학아동 지원과, 종합학과의 설치, 중고등학교의 일반 교육학교의 설치 촉진, 「마음의 교실」 카운슬링 소그룹 정비, 재취업 희망등록자 지원사업의 정비 등의 지원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 7월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과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이 성립되고 특히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으로 인하여 지방공공단체, 기업 등은 행동계획 책정하고(시행 2005년 4월) 지역별 ‘아동, 자녀양육 응원플랜’을 수립하였다. ‘아동, 자녀양육 응원플랜’은 2009년까지 5년간에 걸쳐 강구하여야 할 구체적 시책내용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는 사회’, ‘아동을 낳고 키우는 것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아동의 성장과 자

녀양육을 응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자고 하는 계획이다. 이 플랜은 주로 시설 중심의 계획이고 ‘저출산 사회대책요강’은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과 근로방법의 재검토, 자녀양육 지원시책의 효과적인 실시,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세심한 배려, 아동학대 등 특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원, 임신, 출산, 아동의 성장에 관련되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계획들을 담고 있다.

저출산 사회대책 요강의 취학전 아동의 교육, 보육의 충실화 계획은 첫째, 대기 아동 제로작전의 전개, 둘째, 연장보육, 일시보육, 휴일보육, 병후 아동보육, 유치원에서의 방과 후 보육 등과 같이 보육서비스의 내용을 다양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표 III-1-1> 아동, 자녀양육 응원플랜의 목표치

	2005년4월	아동, 자녀양육 응원플랜의 목표치
통상 보육사업(보육소 정원수)	205만 명	→ 215만 명
2004년 실적 (국고보조사업)		
자녀양육 거점 설치	2,936개소	6,000개소
지역 자녀양육지원센터(시설 수)	2,782개소	4,400개소
모임 광장(개소)	154개소	→ 1,600개소
패밀리 서포트 센터(개소)	344개소	710개소
(파견형 포함)		
일시, 특정보육사업(보육소 수)	5,534개소	9,500개소
쇼트스테이 사업 (시설 수)	364개소	870개소
토와이 라이트스테이사업(시설 수)	134개소	→ 560개소
병후아동 보육사업(시설 수)	496개소	1,500개소
(파견형 포함)		
연장 보육사업(보육소 수)	11,755개소	16,200개소
휴일 보육사업(보육소 수)	607개소	→ 2,200개소
야간 보육사업(보육소 수)	64개소(2005년4월)	140개소

* 2006년 10월 1일 현재 전국 집계치

셋째, 취학 전의 교육과 보육을 단일체제로 제공하는 종합시설을 충실히 정비한다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새로운 계획에는 ‘대기아동 제로 작전’과 함께, 지역에서 아동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 그리고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것에 대해

서도 대책을 제시하는 등, 모든 아동과 자녀양육을 소중히 생각하는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거점으로서의 지역을 정의하고 개별 시정촌은 행동계획목표를 달성할 것을 정의하였다. 특이하게도 보육소, 아동관, 보건센터 등을 영유아 양육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이 영유아와 어울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 역할을 정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계획과 연결시켜 플랜을 책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시정촌이 책정 중에 있는 차세대 육성지원에 관한 행동계획을 고려하여 목표수치를 설정하였다.

2) 영역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 분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분담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기본적인 플랜을 계획하고 기준을 제시한다고 하면, 지방정부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표 III-1-2> 중앙과 지방정부 역할분담(일본)

중앙정부의 후생노동성	지방자치단체
‘저 출산사회 대책 기본법’과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추진법’ 제정 및 지방지방자치단체의 목표치 종합하여 아동, 자녀양육 응원 플랜 작성	전국의 시정촌이 책정 중에 있는 차세대 육성지원에 관한 행동계획을 고려하여 아동, 자녀양육 응원 플랜 목표를 설정함 (지방공공단체의 계획과 관련시켜 플랜을 책정한 것은 처음)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법에서 보육소 운영 최저기준, 설치인가, 입소, 보육지침, 식사/건강/위생관리, 안전관리, 직원, 지도감독, 비용의 지원 등에 대한 기준 제시	이에 기초로 하여 각 시도별 별도의 보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사업을 수행함.

육아지원사업의 영역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다.

<표 III-1-3> 사업별 기능 분담(일본)

사업명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 자녀양육 지원 거점 정비	후생노동성	시정촌
일시, 단기, 특정보육사업	후생노동성	시정촌
자녀양육 지원 교류 문화	후생노동성	시정촌
가정교육 학습기회와 정보제공 및 IT 활용	문부과학성	시정촌
가족지원센터	후생노동성	시정촌의 약 4분의 1
보육소 입소아동수 확대	후생노동성	시정촌의 약 4분의 1
학대방지 네트워크	후생노동성	시정촌(1,243개 → 전체)
아동상담소에서 야간대응, 일시보호소, 협력의료소	후생노동성	전국 도도부현, 지정도시
아동가정지원센터	후생노동성	51개소 → 100개소
모자가정 등 편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후생노동성	도도부현, 지정도시, 중핵시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도도부현, 지정도시(21개→60개)
연장보육	후생노동성	전국보육소의 약 70%
휴일 보육	후생노동성	전국보육소의 약 10%
건강지원 일시보호 (병후아동 보육)	후생노동성	전국보육소의 약 40%
정서장애아 단기치료 시설	후생노동성	
비어있는 점포 활용 자녀양육지원	경제산업성	
유치원 기능충실 및 취원장려	문부과학성	
취학전 교육,보육과 초등학교 연계 및 평가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실버인재센터 고령자 활용 자녀양육 지원	후생노동성	
자녀양육 NPO, 자녀양육동아리	후생노동성	

나. 지방자치단체 정책 사례¹³⁾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육아지원 기본계획에 준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지역별 육아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13) 일본 후생성(2004). 아동, 자녀양육 응원플랜

1)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과 연대책으로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센터가 지역별로 1개 이상 설치되도록 하고 자녀양육에 대해서 상담 또는 어디서나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한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녀양육가정이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한다.

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녀양육지원 거점의 정비

첫째, 지역에서 자녀양육을 지원하도록 거점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자녀양육 중인 부모와 자녀가 상담, 교류, 정보교환 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을 가까운 곳에 정비하도록 한다. 보육소 등에서 전업주부가 육아불안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며, 지역에서 육아서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자녀양육지원센터 사업을 추진한다. 둘째, 전업주부를 포함하여 보호자의 육아피로 그리고 갑작스러운 질병, 관혼상제 등의 일시적 사정에서부터 파트타임취업 등과 같이 규칙적인 경우에 이르기까지,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아동을 맡길 수 있는 일시, 특정보육사업을 추진한다. 상가의 비어있는 점포를 활용하여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고,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교류, 육아상담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추진한다. 셋째, 보호자의 질병, 육아피로, 일상적으로 잔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아동양호시설등에서 아동을 일시 보호하는 쇼트스테이사업과 드라이라이트스테이사업을 실시한다.

② 취학 전의 교육, 보육의 충실화

첫째, 보호자와 지역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기 위해 유치원에서 일시보육, 자녀양육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둘째, 유치원 취원아동의 보호자의 소득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유치원 취원 장려 사업의 추진한다. 셋째, 유치원과 보육소 각각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지역 그리고 보호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유아기의 교육과 초등학교 이후 교육과의 원활한 이행과 접속을 위해 유치원, 보육소, 초등학교간의 연계를 추진하도록 한다. 넷째, 취학 전의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통합한 종합시설의 시범사업을 2005년부터 실시

한 후,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도록 추진한다. 다섯째, 유치원 및 보육소에서 교육과 보육의 내용의 충실을 기하면서 이용자의 선택에 답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촉진함과 동시에 자기점검평가 및 제 3자 평가를 추진하도록 한다.

③ 지역주민의 주체적인 자녀양육지원 촉진

첫째, 영유아와 초등학교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 주부 등을 회원으로 하여, 이들 아동을 맞이하고 보내는 활동을 실시하고, 방과 후 일시보육 등의 상호원조활동을 행하는 패밀리 서포터센터를 설치한다. 둘째, 고령자에게 취업기회와 사회 참가의 기회를 제공하는 실버인재센터에서 영유아를 돌보고 보육시설에 아동을 보내고 맞이하는 등의 육아지원 활동을 지원하고,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 후 교실, 주말에 아동의 학습생활지도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셋째, 방과 후 아동클럽, 패밀리 서포터 센터, 실버 인재 센터의 조직을 활용하여, 자녀양육을 종결한 주부 그리고 고령퇴직자 등이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아동을 양육하고 기본적 생활습관을 몸에 익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하도록 장려한다. 넷째, 지역에서 자녀양육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NPO 그리고 육아를 하면서 주체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부모 등을 대상으로 각종의 육아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동장소를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다섯째, 지역의 고령자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성, 중, 고등학교 학생 등을 포함한 모든 연령층을 자녀양육 지원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시켜 다세대간의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 보육소, 아동관, 자치회 등이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의 자녀양육에 관계되는 행사 등을 개최하도록 추진한다.

④ 보육소 입소 대기아동 제로작전

첫째, 보육소 입소를 대기하고 있는 아동이 50명 이상 있는 시정촌을 중심으로 2007년까지 3년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입소아동수를 확대한다. 둘째, 보육소의 기본 개소시간인 11시간을 초과하는 연장보육을 추진한다. 셋째, 공휴일이나 국경일에 보호자가 근로할 수 있도록 아동을 맡아 줄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 휴일보육을 추진한다. 넷째, 질병 회복기에 있는 영유아 보육에 대해 보육사 등을 파견함으로써 영유아 건강지원 일시보호 (병후아동 보육)를 추진한다.

⑤ 가정교육지원

첫째, 자녀양육 중인 부모에 대해 가정교육에 관한 학습교재를 제공하고, 상담에 응하며, 강좌를 개설하는 등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가정교육에 관한 학습과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한다. 둘째, 자녀양육 중 고립되기 쉬운 부모들이 손쉽게 학습과 상담을 하고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로 자녀양육에 대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 IT를 활용하여 가정교육을 지원하는 기법을 보급한다.

⑥ 아동학대방지법의 추진

첫째, 관계기관의 사건 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위해 학대방지 네트워크를 설치한다. 영아건강검진을 휴일에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수진율의 향상을 기함과 동시에 출생 후 4개월이 될 때까지 신생아 방문, 영아 검진 둘 중 어느 것도 받지 않은 전체 영아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전국의 시정촌에서 실시한다. 셋째, 양육이 곤란한 가정 방문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을 전체 시정촌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넷째, 야간과 휴일에도 연락과 상담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중핵도시 규모의 인구를 가진 시에서도 아동상담소를 설치하도록 추진한다. 또한 분실과 지소를 활용함으로써 시정촌 지원체제가 확보되도록 한다. 다섯째, 학대를 받은 아동과 비행아동이 혼합 수용되어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비행아동에 대한 개별대응이 가능하도록 거실 등을 개선한다. 여섯째, 아동가정지원센터를 개선하고 경미한 정서장애를 가진 아동의 치료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전체 도도부현에 정서장애아 단기치료시설, 학대받은 아동이 가정적 환경 속에서 양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그룹케어, 지역 소규모 아동양호 시설의 정비, 의무교육 종료 후 아동양호시설을 퇴소한 아동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 홈을 계획적으로 정비한다.

⑦ 모자가정 등 편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첫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장애인 가정에 가사도우미를 파견하고 장애아동이 지체부자유아 시설, 지적장애아 시설 등에 통원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의 기본 동작을 지도 받음과 동시에 집단생활에도 적응, 훈련될 수 있도록 통원사업(아동 데이 서비스)을 실시한다. 또한 보호자의 질병 등으로 인해 가정간호가 일시적으로 곤란한 장애아동이 장애시설에 단기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장애아 단기입소(쇼트스тей) 사업을 수행한다. 둘째, 자폐증 등의 발달장애를 가진 장애아동(성인)에 대해 상담, 치료와 양육, 취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기관으로 자폐증, 발달장애지원센터를 정비한다. 셋째, 소아만성질환 중, 소아암 등의 특정질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분의 일부를 보조함과 동시에 휠체어 등의 일상생활용구를 지원하는 등의 복지서비스를 추진한다.

⑧ 자녀 양육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주택과 동네 만들기

첫째, 아동양육에 적합한 주택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주택금융금고의 증권화 지원사업을 통해 자가취득을 지원하고, 양질의 가족형 임대주택공급, 공공임대주택에 다자가정 세대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새집 증후군 대책에 관계되는 조사, 연구 등의 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셋째, 공공건축물의 계단, 공공교통기관 중 여객시설, 차량, 보행공간, 도시공간, 하천 등을 임산부, 아동 그리고 아동과 동행한 사람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장애물들 없앤다.

2) 정책 사례

일본에서는 공립법인의 인가보육소의 최저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보육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육소 운영비¹⁴⁾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운영방식의 차이는 보육소 운영비의 지원방식이다. 즉 보육소 운영비는 보육단가제도를 통해 보육자로부터 수납하는 보호자 부담액이 있고, 보호자 부담액을 제외한 차액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그리고 보호자의 보육료 부담방식은 중앙정부가 정한 보호자 소득기준에 따라 능력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불한다. 구체적으로는 표준보육단가에 기초한 보육시설 운영비 중에서, 부모부담 보육료를 제외한 1/2는 중앙정부, 1/4는 도도부현, 1/4는 시정촌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 보호자가 부담하는 보육료 및 전체 보육소 운영비에서 보호자 부담비율은

14) 예전에는 조치비라고 불렀음.

지방정부마다 다르다. 지방정부마다 보육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으로 부모부담을 경감해주기 때문이다. 대체로 지방정부가 국가기준의 1.5~2.0배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지역 차이가 매우 크다. 가령, 요코하마시는 보육시설 운영비 총 예산 가운데 보호자 부담이 20.3%, 중앙정부 예산은 12.6%(2006)만 부담한다.

중앙정부가 정하는 보호자 소득 기준에 따른 보육료 징수액은 <표 59>와 같이 7계층으로 나누어진다. 생활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세대는 무상이고, 그 이외는 전년도 과세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적으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¹⁵⁾. 아동연령별로는 교사대 아동 비율(0세아 1:3, 1~2세아 1:6, 3세아 20:1 4세 이상 30:1)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보육료는 3세 미만과 그 이상으로만 구분하여 징수하고 있다.

<표 III-1-4> 일본 중앙정부의 아동별 차등보육료 징수 기준

단위: 엔

계층구분	정의		월액	
	구분	세액기준	3세 미만	3세 이상
제1계층	생활보호법 피보호세대		0	0
제2계층	제1계층 및 제4~7계층을 제외한 세대중 전년도 시정촌 과세기준	시정촌민세 비과세대상	9,000	6,000
제3계층		시정촌민세 과세대상	19,500	16,500
제4계층	제1계층을 제외한 세대중 소득세 과세대상중 과세액에 따라 구분	64,000엔 미만	30,000	27,000 (보육단가한도)
제5계층		64,000~160,000엔 미만	44,500	41,500 (보육단가한도)
제6계층		160,000~408,000엔 미만	61,000	58,000 (보육단가한도)
제7계층		408,000엔 이상	80,000 (보육단가한도)	77,000 (보육단가한도)

자료: 全國保育團體連絡會·保育研究所 編(2006). 2006 保育白書.

위와 같이 중앙정부는 7단계의 보육료 징수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한층 세분화된 보육료 징수체계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 방식대로 보육료를 징수하면 보호자의 부담이 과중하

15)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중심으로 2002년도 10월 현재의 계층 구분을 보면 제1계층이 1.3%, 제2계층이 14.9%, 제3계층 15.4%, 제4계층 19.1%, 제5계층이 20.6%, 제6계층 20.5% 제7계층 8.2%이다. 제2계층 중에는 모자세대가 반이 넘는 8.0%를 차지하고 있음(日本 全國保育協議會, 2003).

다는 판단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으로 보호자 부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부가 제시하는 보육료를 그대로 수납하는 지역은 없다. 실제로 요꼬하마시는 26단계, 동경도 세타가야구는 25단계, 나고야시는 18단계의 보육료 징수 방식으로 보육료를 수납하고 있다. 또한 세타가야구는 3세아와 4세 이상아의 보육료를 구분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두 자녀 및 세 자녀가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들의 보육료를 크게 감면해 준다.

<표 III-1-5> 나고야시 보육료 징수기준(2006)

단위: 엔

단계		나고야시의 징수기준(2006)				국가징수기준(2005)	
		3세 미만아		3세 이상아		3세 미만아	3세 이상아
계층	소득세대	첫째아	둘째아	첫째아	둘째아	미만아	이상아
A	생활보호세대	0	0	0	0	0	0
B	1층 비과세세대(한부모 세대등)	0	0	0	0	0	0
	2층 비과세세대	3,700	1,850	2,400	1,200	9,000	6,000
C	1층 균등세만 적용	5,500	2,750	3,600	1,800	19,500	16,500
	2층 소득세5,000 미만	6,200	3,100	4,200	2,100		
	3층 소득세5,000 이상	7,300	3,650	5,600	2,800		
D	1층 3,000 미만	10,800	5,400	8,200	4,100	30,000	27,000 (보육단가 한도)
	2층 3,000~15,000 미만	13,400	6,700	10,500	5,250		
	3층 15,000~30,000 미만	16,900	8,450	12,800	6,400		
	4층 30,000~60,000 미만	21,300	10,650	15,600	7,800		
	5층 60,000~90,000 미만	24,900	12,450	17,800	8,900		
	6층 90,000~120,000 미만	28,400	14,200	20,000	10,000	44,500	41,500 (보육단가 한도)
	7층 120,000~180,000 미만	33,800	16,900	22,000	11,000		
	8층 180,000~240,000 미만	41,300	20,650	24,900	12,450	61,000	58,000
	9층 240,000~300,000 미만	48,700	24,350	27,300	13,650		
	10층 300,000~450,000 미만	56,500	28,250	28,200	14,100		
	11층 450,000~600,000 미만	61,600	30,800	28,300	14,150	80,000 (보육단 가한도)	77,000 (보육단가 한도)
	12층 600,000~900,000 미만	63,000	31,500	28,500	14,250		
	13층 900,000 이상	64,000	32,000	28,700	14,350		

B층 : 주민세, 소득세를 다 안내는 계층

C-1층 : 주민세만 내는 계층

C-2층 : 연간 소득세 5,000 미만에 따른 주민세 납부자 계층

C-3층 : 연간 소득세 5,000 이상에 따른 주민세 납부자 계층

D층 : 연간 소득세에 따른 보육료 납부 계층

〈표 III-1-6〉 일본 요코하마시 아동별 차등보육료 징수 기준과 국가 기준(2006)
단위: 엔

계층 구분	계층구분 정의 2005년도 세액기준	요코하마 월액						국가기준 월액	
		3세 미만아			3세 이상아			3세 미만아	3세 이상아
		제1자	제2자	제3자	제1자	제2자	제3자		
A	생활보호법 피보호세대	0	0	0	0			0	0
B	시정촌민세 비과세대상 (한부모 세대 등)	0	0	0	0			0	0
	시정촌민세 비과세대상 (상기 이외 세대)	3,000	1,200	300	2,000	800	200	9,000	6,000
C1	균등세 과세대상	6,400	2,500	600	4,700	1,800	400	19,500	16,500
C2	시민세 과세 5000엔 미만	7,800	3,100	700	6,100	2,400	600		
C3	시민세 과세 5000엔 이상	9,500	3,800	900	7,300	2,900	700		
D1	2,400엔 미만	11,900	4,700	1,100	9,100	3,600	900	30,000	27,000
D2	2,400~12,000엔 미만	13,700	5,400	1,300	10,500	4,200	1,000		
D3	12,000~24,000엔 미만	15,500	6,200	1,500	12,200	4,800	1,200		
D4	24,000~48,000엔 미만	19,100	7,600	1,900	15,000	6,000	1,500		
D5	48,000~72,000엔 미만	23,600	9,400	2,300	18,800	7,500	1,800		
D6	72,000~96,000엔 미만	27,600	11,000	2,700	20,800	8,300	2,000		
D7	96,000~120,000엔 미만	32,400	12,900	3,200	22,300	8,900	2,200	44,500	41,500
D8	120,000~144,000엔 미만	36,100	14,400	3,600	23,500	9,400	2,300	61,000	58,000
D9	144,000~168,000엔 미만	39,600	15,800	3,900	24,300	9,700	2,400		
D10	168,000~192,000엔 미만	42,600	17,000	4,200	25,100	10,000	2,500		
D11	192,000~216,000엔 미만	45,400	22,700	7,900	25,800	12,900	4,500		
D12	216,000~240,000엔 미만	48,100	24,000	8,400	26,500	13,200	4,600		
D13	240,000~264,000엔 미만	50,800	25,400	8,800	27,500	13,700	4,800		
D14	264,000~288,000엔 미만	52,800	26,400	9,200	28,500	14,200	4,900		
D15	288,000~312,000엔 미만	54,400	27,200	9,500	29,800	14,900	5,200		
D16	312,000~336,000엔 미만	55,900	33,500	13,900	31,000	18,600	7,700		
D17	336,000~360,000엔 미만	57,400	34,400	14,300	31,900	19,100	7,900		
D18	360,000~432,000엔 미만	59,700	35,800	14,900	33,000	19,800	8,200	80,000	77,000
D19	432,000~640,000엔 미만	61,000	36,600	15,200	34,000	20,400	8,500		
D20	640,000엔 이상	62,500	37,500	15,600	35,500	21,300	8,800		

주: 국가기준은 2자녀가 다니는 경우 두 번째 자녀 보육료는 단가의 1/2이 됨.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보육정책 사례로 나고야 시를 들어보면 나고야 시는 중앙정
총괄적 계획에 따라 매년 “나고야시(名古屋市)의 保育”을 발간하여 보육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본 책자에는 1) 나고야시의 인구등에 관한 현황, 2) 보육소의 예산과 보육료, 3) 보육소 현황, 입소아동, 대기아동, 4) 보육수요의 대책과 직원, 5) 지침과 제도에 관한 사항, 6) 법령, 조례, 규칙, 7) 시설등 일람 등을 수록하고 있다¹⁶⁾.

2. 호주의 육아지원정책

호주의 보육정책은 공보육시설의 확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 기반 위에서 보육시설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범위가 넓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육재정부담은 연방정부가 정부부담의 90%를 차지한다. 1992년도부터 국공립과 민간시설 구분없이 민간시설에도 특별지원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가 지방에도 고루 적용되도록 하는 등 국가계획시스템을 관리하여 지역별로 보육시설 공급의 과잉과 부족을 조절하고 있다. 지방별 보육시설 공급확충 계획은 6개월 단위로 점검된다. 그리고 보육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것 역시 국가책임에 포함시켜 양질의 접근가능하고 유연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보육욕구의 다양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가정내 보육도 제도권 보육에 포함시켜 지원하고 있다.

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호주의 영유아 프로그램 제공체계는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이원화되어 있고, 이에 대한 행정체계 역시 나누어져 있다. 유치원은 1890년대부터 설치되어 주로 아동의 교육과 사회성 발달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보육시설은 부모의 자녀 보호와 그들의 자녀 복지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주목적을 두고 발전하여왔다(서문희, 2007). 보육이 연방정부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유아교육은 지방정부가 대부분의 통제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역할은 크지 않다.

16) 나고야시(2007). 나고야시의 보육.

<표 III-2-1> 중앙과 지방정부 역할분담(호주)

연방정부	주정부
<p>① 가족과 지역사회 서비스 및 원주민 관련 업무부에서 보육 지원(Child Care Support) 총괄 -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 CCB)집행 -취약계층위한 보육서비스 지원 -근로자의 보육지원 -보육시설의 수요·공급 비교 및 보육 시설의 필요성 파악 -직업훈련생들의 보육지원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을 국가적 관점으로 지원 -보육시설 접근 핫라인 운영 -보육시설평가인증국(National Childcare Accreditation Council)에 대한 재정지원 등</p> <p>② Centerlink, 호주 국세청, 의료보험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Family Assistance Office(FAO)는 보육서비스를 집행</p>	<p>-학교, 유치원 및 일부 일시보육센터와 관련된 정책 및 재정지원을 담당하며, 영유아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규칙의 제정 및 집행 업무도 담당한다.</p> <p>-보육서비스(일시보육, 종일보육, 가정보육, 방과 후 보육 등)에 대한 인가, 보육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 연방 및 지방정부 공동 사업계획 수립, 연방정부의 보육지원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아동사업 지원,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기준 시행 및 모니터링, 보육관련 보조금 지급(일부 주) 등을 한다.</p> <p>-보육시설의 인가 및 지도·감독은 주정부에서 담당하는데, 종일제 보육센터에 대해서는 모든 주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고, 가정보육은 일부 주만 규제하고 있다.</p>

호주의 보육정책은 공보육시설의 확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 기반 위에서 보육시설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범위가 넓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운영이 시장 중심으로 이동하는 최근의 경향 때문에 여전히 개별 가정의 보육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회, 정치, 경제적 변화를 겪게되는데 이중에서도 여성의 취업율의 증가는 육아문제의 사회적 해결이라는 압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1950년대 이후 취학전(만5세)연령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여성의 취업증가로 직장여성 중 아이를 가진 비율이 50%를 넘어서게 되고 이러한 여성의 역할과 기회의 변화는 보육서비스의 확대로 나타나게 되었다. 또 호주의 경우는 이것은 단순한 시설의 확대 뿐만 아니라 호주의 특수한 생활조건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함께 등장하게 된다.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소규모 농촌 거주지와 인구의 다양성(100가지가 넘는 문화와 언어)으로 인해 노동자가족, 고립된 농촌가족, 도시와 시골의 토착민 가족, 비영어권 배경을 가진 가족, 저소득

층 가족 등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가 요구받게 된 것이다(Australia Women's Budget, 1995). 호주에서 질적 향상에 대한 고민은 대표적인 유아 서비스인 프리스쿨(유치원)과 종일제 보육이라는 두 가지 형태사이의 간격을 변화하는 사회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조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작되었다. 또한 유아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서비스 질에 대한 개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인 유아교사와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 서비스에 대한 부모들의 참여, 프로그램 과정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91년 보육실무자를 위한 실행기준과 의사결정에 대한 길잡이로 윤리강령이 호주 유아보육연합회에 의해 제정되었다. 아이와 가족에 대해 보다 응집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보다 광범위한 서비스의 제공과 제공의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호주는 6개의 지방정부와 연방정부로 구성되며, 사회복지서비스의 대부분은 지역의 요구에 기반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육아지원과 관련하여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어서 농촌 및 취약지역은 80~90% 수준으로 도시 130%에 비하여 낮다. 이와 같은 지역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방정부가 나서서 각 지역의 아동수, 취업모 비율, 선호하는 보육서비스 등을 조사하여 공급과잉 지역은 공급을 억제하고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는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공급을 확대하는 국가 정책(National Planning System)을 추진해왔다.

연방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2010년 까지 모든 아동에게 15시간의 무료보육을 제공하고 보육료가 가구소득의 15%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규제(regulation)와 보조금(subsidiation)을 통하여 시설의 질 관리를 해 왔다. 연방 정부는 보육 서비스를 위하여 매년 약 AU\$15억을 지출하고 있으며, 그중 AU\$13억은 부모에 대한 보육급여, AU\$2억은 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쓰이고 있다(2004년).

호주의 보육정책은 가족과 지역사회 서비스 및 원주민관련 업무부(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FaHCSIA) 에서 담당하며, 90% 이상의 재정부담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재정적 지원자이다. 가족과 지역사회 서비스 및 원주민관련 업무부는 소득지원, 주택정책, 지역사회 지원, 장애인 지원, 보육서비스, 가족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세제 및 복지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아동 지원 업무는 아동지원기구(Child Support Agency)와 가족지원사무국(Family Assistance Office)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기에 2008년 1월 유아교육과 보육사무국(Offic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OECECC)이 설립되었고 호주 아동을 위한 양질의 교육, 보육과 유치원에 대한 국가 표준, 영유아기 학습, 가족 내 상호작용 프로그램, 영유아 개발 프로그램 등을 공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호주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총체적 지원이 가능한 기구들이 서로 연결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조직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동지원기구는 인적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 DHS)에 속해있는 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센터링크, 호주 의료지원, 건강서비스지원기구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적시에 개별 가족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족지원사무국(Family Assistance Office, FAO) 역시 센터링크,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의료보험위원회(Health Insurance Commission)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보육지원금의 신청과 자격 상담 등을 서비스로 제공한다. 두 기구 모두 일선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 상담이나 온라인 상담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http://www.fahcsia.gov.au/>).

지방정부는 가족지원(famil support), 아동복지(child welfare) 등의 기능을 가진다. 그 밖에도 1) 보육서비스(일시보육, 종일보육, 가정보육, 방과후보육 등)에 대한 인가, 2) 보육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 3) 연방 및 지방정부 공동사업계획 수립, 4) 연방정부의 보육지원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아동사업 지원, 5)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기준 시행 및 모니터링, 6) 보육관련 보조금 지급(일부 주), 7) 양성평등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이다(서문희, 2007).

부모들은 차등보육료인 보육지원금(Child Care Benefit, CCB)¹⁷⁾ 보육조세환급(CCTR)을 받게 된다. 보육지원금은 부모 소득에 따른 아동별 보육료 지원방식으로 보육료 부담에 대해 정부가 약 80%를 지원하고 보호자가 20%를 부담하게 된다(유희정, 2003). 보호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 가구별 보육료 산정 및 지급 등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하는데 전

17) CCB는 보육시설에 보내는 인정보육(approved care)과 부모, 조부모 등 개인에 의해 돌보게 하는 등록보육(registered care) 두 가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CCB의 지원수준은 연간 소득, 보육의 유형 및 시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의 사정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인정보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은 종일보육, 가정보육, 방문보육(in-home care), 방과후 보육, 휴일보육, 일시보육 등을 포함한다. 인정보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보육시설-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아동을 보낼 경우에만 CCB를 받을 수 있다. 등록보육은 아동이 부모, 조부모 등 개인에 의해 보육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들 개인이 FAO에 등록이 된 경우에만 지원을 한다. 등록보육은 민간 preschool이나 유치원 등에 의해 제공되기도 한다. 보호자는 요건에 따라 아동당 1주일에 20시간, 50시간, 또는 50시간 이상의 CCB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적으로 550개의 일선 사무소가 있는 가족지원사무국¹⁸⁾이 소득 조사, 보육료 산정, 보육시설 이용실태 점검 등의 제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가족지원사무국은 의료보험급여, 사회보장 급여를 산출하는 행정기구의 일선사무소내에 위치하고 이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추가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호주는 소득조사에서부터 급여 전달까지 전과정을 일원화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보육료 지급에 관한 심사 및 관리가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이 특별한 이유없이 보육시설에 결석하였을 경우 보육료 환급절차가 개시되며, 보호자가 소득 및 재산을 낮춰 보고하였을 경우에도 국제청과 연계하여 이를 확인하고 보육료 지급이 과도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환급절차에 들어간다(서문희, 2007).

유치원 교육은 주로 지방정부의 관할로 이루어진다. 연방정부가 시설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고 부분적으로 부모로부터 교육비나 기타 부대비용을 수납하도록 한다. 대부분 취학 전 1년은 정부가 기본 교육비를 부담하고 부모는 교육에 소요되는 물품과 특별활동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많다. 타즈마니아(Tasmania)주와 북부 지역(Northern Territories)는 무상으로 교육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부분적으로 부모가 지불한다. 남 호주(South Australia)주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3개월당 40~50달러 정도의 비용을 내고, 준비반(Pre-entry), 놀이그룹(Play-group)¹⁹⁾, 일시보육(Occational Care) 등은 하루나 시간단위로 비용을 책정한다.

18) 호주는 가족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구가 바로 Famil Assistance Office(FAO)이다. 대부분의 FAO는 사회보장 및 복지서비스의 일원화된 전달체계기구인 Centerlink 내에 위치하고 있다. 가족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가족세제지원(Famil Tax Benefit) A유형 및 B유형, 그리고 Child Care Benefit(CCB)이다. A유형은 아동의 양육비용을 지원하고 B유형은 편부모 가족에 대한 특별지원을 제공한다. 보육정책의 목표는 2010년까지 모든 아동에게 15시간의 무료보육을 제공하고 모든 가구의 보육료 부담을 가구소득의 15% 이내가 되도록 지원하는 데 두고 있다. 보육에 관해서는 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며 2000.7월부터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CCB로 일원화되었다. CCB는 이전의 자산조사를 통하여 제공되던 아동보육부조(Child Care Assistance)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하여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족에게 적용되던 보육료 환불제도 (Child Care Cash Rebate)를 통합한 것이다. CCB는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거나 부모, 조부모 등 개인에 의해 돌보게 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이다.

19) 다른 어린이들과 부모들을 만나기 원하는 부모들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이다. 대부분의 시설은 사용료를 내야하고 사설 서비스의 사용료는 상당히 높을 수도 있다. 정해진 균일한 사용료는 없다.

나. 지방자치단체 정책 사례

1) 지방 정부 일반현황

호주는 지방분권제가 매우 발달하였는데 연방정부(Federal Governemnt 또는 Commonwealth Government)와 주정부(State Government : 6개 주 및 2개 특별구역) 및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 약 700개)간에 권한이 분산되어 있다.

<표 III-2-2> 호주 지방정부 육아지원 제도 현황

지방정부	서비스 유형	담당부서	역할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종일보육, 가정보육 유치원(preschool)	교육, 청소년가족 서비스	규제와 권고 유치원 관리
New South Wales	종일보육, 가정보육, 이동서비스 유치원	지역사회서비스 교육과 훈련	지역사회지반서비스 재정, 규제와 권고
Nothern Territory	종일보육 유치원	건강 교육	지역사회지반서비스 재정, 규제와 권고 유치원 관리
Queensland	종일보육, 유치원, 가정보육, 이동서비스 유치원	가족부 교육	보육시설, 유치원 등의 규제 유치원 관리 및 재정
South Australia	종일보육, 가정보육 유치원	교육, 훈련과 고용	보육시설 규제 및 인가 유치원 관리
Tasmania	종일보육, 가정보육 유치원	교육과 지역사회서비스	보육시설 규제 유치원 관리
Victoria	종일보육, 가정보육, 이동서비스 유치원	인적 서비스	규제와 재정
Western Australia	종일보육, 가정보육, 이동서비스 유치원	가족과 아동서비스 교육	규제 유치원 관리

자료: 각 주정부 홈페이지.

지방정부는 가족지원(famil support), 아동복지(child welfare) 등의 기능을 가진다. 보육정책과 제도도 주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역별로 나름대로의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 별로 1) 보육서비스(일시보육, 종일보육, 가정보육, 방

과후보육 등)에 대한 인가, 2) 보육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 3) 연방 및 지방정부 공동사업계획 수립, 4) 연방정부의 보육지원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아동사업 지원, 5)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기준 시행 및 모니터링, 6) 보육관련 보조금 지급(일부 주)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III-2-3> 호주 지방정부 육아지원시설 관리

지방정부	유치원	종일보육센터	가족보육	가정기반보육	아동에 대한 이동서비스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교육과학기술부 운영 ·아동서비스수정법안(1999)	아동서비스수정법안(1999)	미취학 아동 5명이하경우는 공식규제없음	5명미만 공식규제없음	해당없음
New South Wales	센터와 이동식아동케어법(1966)	센터와 이동식아동케어법(1966)	가족보육과 가정기반보육서비스법(1996)	가족보육과 가정기반보육서비스법(1996)	센터와 이동식아동케어법(1966)
Nothem Territory	·교육과학기술부 관리 ·지역복지법안(1987) ·NT보육센터표준안(1997)	·교육과학기술부 관리 ·지역복지규제법안(1987) ·NT보육센터표준안(1997)	미취학아동 6명이하 경우 공식규제없음	· 6명미만 공식규제없음 ·가정기반보육 시설을 위한 가이드라인	없음
Queensland	보육시설법(1991)	보육시설법(1991)	보육시설법(1991)	공식규제대상 아님	보육시설법(1991)
South Australia	·교육훈련부 관리 ·아동서비스법(1998)	아동서비스법(1998)	·가족보육표준 약정 ·DETE의 인가	·4명미만 규제없음 ·4명이상아동서비스규제법에 의한 자격규제	베이비시터기관은 아동서비스규제법에 의한 자격규제
Tasmania	·교육과학기술부 관리 ·아동복지법(1960) ·보육시설인가 가이드라인(1998)	·아동복지법(1960) ·보육시설인가 가이드라인(1998)	·아동복지법(1960) ·지역건강서비스부의 서비스기준	·아동복지법(1960) ·지역건강서비스부의 서비스기준	해당없음
Victoria	아동서비스법(1998)	아동서비스법(1998)		5명미만 규제없음	아동서비스법(1998)
Western Australia	·지역서비스법(1988) ·교육법(1999)	지역서비스법(1988)	지역서비스법(1988)	지역서비스법(1988)	이동유치원:학교교육법(1999)

자료: 각 주정부 홈페이지.

유치원은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1년 과정의 교육기관이다. 작은 농촌지역을 방문하거나 마을회관과 같은 회합지에서 운영하는 소수의 이동시설을 포함한다. 유치원은 취학전 연령에 대해 1년간 하루 3-4시간정도의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개의 주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여성의 증가로 시간제서비스에 참여할 수 없는 아동이 생김에 따라 시간을 연장하거나 나흘간 반나절씩 참석하는 것을 이틀간 종일 참석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등 탄력적 운영을 고민하게 되었다.

종일제 보육시설의 설치주체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운영위원회, 지방의회, 개인소유자, 직장의 고용주들에 의해 운영되거나 후원된다.(한국식으로 보면 육아협동조합, 국공립, 민간, 직장 보육시설)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종일(오전8시부터 오후 6시까지)운영되며 일부시설은 주말보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가정보육은 개인가정에서 소수(4명정도)를 보육하는 것으로 가정보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훈련을 받았으며 지방의회로부터 지속적인 지원과 감독을 받는다.

친인척, 이웃에 의해 보육되는 것으로 비형식적 보육이라고도 한다. 1994년 연방정부는 비형식적 보육을 이용하더라도 보육료 공제제도에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일시보육 시설은 주민학습센터, 쇼핑센터 등지에서 부모의 활동에 따라 필요한 몇 시간 또는 며칠간의 단기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 역시 주정부에 의한 재정지원이 있다.

2) 뉴싸우스웨일즈주(NSW)

뉴싸우스웨일즈주의 아동서비스프로그램(Children's Services Program)은 1993년 양육지원프로그램(the Child Care Program)으로 시작되었다. 고용지원을 목적으로 양육지원정책 및 매뉴얼이 1996년에 발행되었다. 아동 서비스 프로그램은 주 전체의 아동관련 서비스들을 조율하고자 하는 필요에 따라서 발전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고용관계부서(the Employee Relations Division)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프로그램은 육아에 대한 접근과 서비스 범위를 증대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비용, 서비스의 유연성, 서비스 시간, 만 2세 이하 아동의 문제, 학령기 아동에 대한 육아지원과 같은 이슈들을 해결하고자 했다.

① 재정지원

뉴사우스웨일즈주의 ECEC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은 다음과 같다.

- 부모 또는 보육시설과 가족 내 보육 담당자에게 보육지원금 지급
- 가족내 보육 담당자에 대한 운영 지원
- 일시보육센터와 다기능 서비스를 위한 운영 지원
- 농촌, 원거리, 도심 주변부 지역의 지역사회기반 종일보육시설 일부에 대한 특별 교부금 지원
- 업무량이 과다한 보육 조직, 자원, 훈련기관에 대한 운영 지원
- 종일 보육시설에 있는 특별한 요구를 가진 아동을 위한 재정 지원

이와 같은 사업들을 위해서 연방정부는 2001-02회계년도에 483백만\$의 재정 지원을 했고, 이중 386백만\$은 보육환급제를 통해 가족들에게 지원되었다. 반면에, 뉴사우스웨일즈 정부는 연간 88백만\$를 지역사회서비스부(DoCS)를 통해서 지역사회기반 보육시설과 프리스쿨에 지원하고 있고, 교육과 훈련부(DET)가 운영하는 79개의 프리스쿨에 18백만\$의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직업기술교육훈련(TAFE) 학교와 병원에 38개의 종일보육시설 운영에 4백만\$를 지원하며 방학 중의 보육과 영유아 자원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관리감독

뉴사우스웨일즈 육아지원정책은 지역사회서비스 부(DoCS)와 교육과 훈련부(DET)가 주된 책임을 진다. 지역사회서비스부는 비영리종일보육시설과 프리스쿨에 대한 재정 지원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모든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에 대한 규제(인가, 각종 표준의 재정, 모니터링 등)를 담당한다. 두 부서 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과 가족케어부서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을 위한 재정지원을 공동으로 하고 있다. 특히, 뉴사우스웨일즈주 정책의 특성은 “가족 우선(Family First)”와 같은 정부의 전략적 프로그램에 육아지원정책을 통합시키고자 노력한다는 점이다.

뉴사우스웨일즈의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은 첫째, 영유아 서비스 정책, 둘째 뉴사우스웨일즈 보육시설과 이동보육관련법(1996) 셋째, 가정보육과 가족기반보육서비

스 법(1996) 넷째, 아동서비스에 대한 뉴싸우스웨일즈 커리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우선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정책들을 구현하고 있다.

먼저, 영유아 서비스 정책은 기본적으로 아동에 대한 교육과 보호 서비스를 가족들과 특정 사회집단의 아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특별한 요구를 가진 가족 또는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고 정의된 집단을 지원하는 데에 우선성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뉴싸우스웨일즈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에는 두 개의 법률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 보육시설과 이동보육관련법(1996)은 유치원과 종일보육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물리적 환경과 아동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고려한 자격있는 교사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아동의 건강, 안전과 발달 요구의 충족 등을 강조하고 있다. 가정보육과 가족기반보육서비스 법(1996) 역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소한의 시설과 장비 규정, 가족내 케어에 대한 당국의 관리의 중요성 적절한 보살핌 제공자와 아동수에 대한 기준 및 아동의 건강, 안전과 발달 요구의 충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서비스에 대한 뉴싸우스웨일즈 커리큘럼은 미취학 아동의 모든 서비스에 적용되는데, 영유아 서비스에서 아동의 학습과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뉴싸우스웨일즈의 육아지원관련 규제 법안은 타 지방정부들 보다 강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싸우스웨일즈 대부분의 종일보육시설은 영유아 관련 학과를 졸업한 교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에듀케어에 대한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0-4세 아동의 보육시설 취원율은 호주 평균과 같고 프리스쿨은 평균보다 10%정도 떨어지며 종일보육은 5%정도 취원율이 높다. 뉴싸우스웨일즈내의 지방정부들은 가정보육, 종일보육시설 계획을 관리하는데, 이 중 규모가 큰 지방정부들은 아동서비스 코디네이터를 고용하기도 한다. 이들은 지역에서 아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3. 미국의 육아지원정책

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1)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기본 역할

1955년 1월 11일 보육국(Child Care Bureau,CCB)가 설립되어 연방 정부의 육아 정책 프로그램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2006년 보육국은 건강과 인적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의 아동과 가족관리실 산하의 가족 지원사무국(Office of Family Assistance,OFA)의 일부가 되었다. 보육국과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을 관할하는 가족지원사무국을 결합함으로써 복지 개혁 사업과 육아 보조 프로그램을 더욱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연방정부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하고, 주정부나 지방정부는 이를 설치·운영·감독하는 형태로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표 III-3-1> 중앙과 지방정부 역할분담(미국)

연방정부 ²⁰⁾	주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의회에서 교육관련 법령 통과(예, NCLB act of 2001) - 연방 교육부에서 교육관계 법령시행(자료수집, 연구, 재정지원, 교육관련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수립, 법 적용) - 기타 연방정부 부처들(예, 농무부, 통상부, 국방부, 노동부, 국립과학재단)을 통해 재정지원 및 교육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지침 및 수행평가 기준 마련 - 기술적 지원 - 교사와 교육관료 인준 - 주 정부 및 연방 정부의 재정지원금 분배 - 최소 교육일수 지정

연방정부 산하의 보육국의 역할은 ①아동 보호와 개발자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CCDF) 프로그램 운용을 감독 ② 육아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제

20) 연방정부의 육아정책의 핵심적 집행기관은 보육국(CCB)이므로 CCB와 Temporary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지원(TANF)을 관할하는 가족지원사무국을 결합함으로써 복지개혁 사업과 육아보조프로그램을 더욱 효과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이었다. CCB 활동의 주 부분은 주 정부, 미국령, 원주민 부족들의 보육정책 집행을 위한 아동 보호와 개발자금(CCDF)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CCDF를 유연하게 활용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필요에 부합하여 육아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활동이 있다. ① 육아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가족지원사무국장에게 자문을 제공한다, ② 법규 및 예산 편성, ③ 육아와 관련된 운용기획목표 및 제안제시, ④ 아동과 가족을 위한 관리기구들 내부에서 리더쉽 및 조정, ⑤ 육아문제에 관여하는 다른 기관들과의 연계이다.

에 대해 가족지원사무국에 자문 제공, ③법규 및 예산 편성, ④육아와 관련된 운용 기획 목표 및 제안 제시 ⑤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관리기구들 내부에서 리더십 및 조정, ⑥육아 문제에 관여하는 다른 기관들과의 연계활동을 벌인다.

아동보호와 개발자금은 보육국이 운영하는 연방 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력 기금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정부의 아동보호와 개발자금 지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아동보호와 개발자금의 5% 이상이 행정 부문에 지출될 수 없다.

②아동보호와 개발자금의 4% 이상이 육아의 질과 보급성을 향상시키는데 지출되어야 한다.

③아동보호와 개발자금과 연결된 자금의 70% 이상이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일시적지원(TANF)을 수령하거나, 이 자금 지원에서 벗어나는 중이거나, 자금 수령 대상이 될 위험이 있는 가정을 위해 지출되어야 한다.

아동보호와 개발자금은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일시적 지원 및 관련 기금과 더불어 주정부, 미국령 영토 거주자, 원주민들에게 매년 110억 달러 이상의 기금을 제공한다. 저소득 가정, 일시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정, 정부 지원에서 벗어나 일을 하거나 훈련/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가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금을 통해 약 240만의 아동들이 육아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다.

여기에서 주정부는 육아 활동의 보건 및 안전 부문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비스 제공업자들에게 교육, 지원금 및 대출을 제공하고, 감독 활동, 보상 사업 및 기타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개선하고 있다. 원주민들은 현재 육아 서비스의 수준이 저하되지 않는 단서 하에서 기금 가운데 일부를 육아 시설 건설에 이용할 수 있다. 주정부, 미국령, 원주민 부족들은 2년 마다 종합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공공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2) 대상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

① 만 4세 미만 아동들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헤드 스타트를 제외하고는 어떤 연방정책도 없다. 관련 정책들은 주 별로 이뤄지고 관련 서비스도 공교육기관, 영리기관, 종교기관, 자선단체 등 여러 기관을 통해 복잡하게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유치원 전 단계의

유아교육 관련정책은 주정부에 따라 정책의 유무, 지원규모, 대상아동, 교사자격요건, 인허가조건 등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영아를 위한 서비스(만 0~3세): 연방정부의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은 1994년 이후 저소득층의 0~3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조기 헤드 스타트까지 지원한다. 임산부들에게 필요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생아 및 영유아 발달을 촉진시키며, 궁극적으로 건강한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모성 및 아동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하고 있다. 공립학교에서 영유아에게 조기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없다. 예외적으로 중고등학교 학생 신분으로 임신을 하게 되고 자녀를 출산한 십대 부모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그들의 영유아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가 있다. 이는 대안학교에서 십대부모들이 수업받는 동안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정도이다.

- 만3~4세 아동(preschoolers): 대부분 사립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치원 입학연령 이전 아동들을 돌본다. 국가적 서비스는 없다. 유일한 연방정부 주도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이다. 헤드 스타트(Head Start, HS)는 빈곤가정의 아동들과 그 가족에게 종합적 아동발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성 발달과 인지발달을 촉진시킴으로써 저소득층 아동들의 학습준비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해왔다. 기존 헤드스타트는 100% 빈곤층기준에 드는 가정의 아동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2007년 재인준받은 헤드 스타트법에서는 각 프로그램에 등록가능한 아동의 35%까지는 빈곤층 상위 1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도 등록할 수 있도록 수혜범위를 상향 조정했다. 또한 주정부의 일부 또는 전체 대상아동에게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립학교 및 사립기관 등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프로케이 프로그램이 있다.

② 만 5세 이상

유치원 대상연령(주로 만 5세)아동들은 대부분 공립 초등학교 유치원을 다닌다. 연방정부는 큰 국가차원의 계획 및 방향을 제시하고,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제시된 테두리 안에서 크고 작은 정책결정을 내린다. 연방정부는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실제 학교를 설립하고 인가하고 관리하는 몫은 지방정부에 있다. 단, 유치

원은 정규 공교육 체제의 일부분이 아니라, 각 주정부와 학군에 따라 공립학교에서 의무적 혹은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③ 특수한 요구가 있는 아동

특수아동들은 세 그룹으로 분류되는데, 뚜렷한 신체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동, 생물학적 위험요인이 있는 아동, 환경적 위험요인이 있는 아동이다. 환경적 위험요인은 빈곤, 소수민족 및 이중언어 배경 혹은 이민자 가정 등이 포함된다. 이 아동들에 대한 보호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각 주별로 상황에 맞게 구체적 조치들을 취한다.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장애인교육법(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 of 2004, IDEA 2004)으로 운영된다. 이 법은 최소한 제한적 환경에서 가장 적절한 형태의 무료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기본적으로 장애아동은 제한된 공간 및 환경(특수학교)에서 따로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최대한도 내에서 다른 일반 아동들과 함께 일반교실에서 통합교육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헤드 스타트는 전체 등록인원 중 최소 10% 이상은 장애아동을 수용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조기 헤드스타트 및 헤드 스타트가 있다. 소수민족 및 이중언어 배경의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각 주정부마다 다양한 정책이 있다. 일례로, 일리노이 주의 몇몇 학군은 멕시코 정부와 공식협약을 맺고 영어와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이중언어 교사를 채용해 필요한 학군에 보낼 수 있도록 체계화시켰고, 스페인정부와도 유사한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운영 중이다. 또한 가정에서 사용되는 제1언어로 시험을 보거나 평가될 수 있도록, 시험문제를 번역하거나 질문을 통역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위해 학교에서는 자원봉사 통역자를 구해주시기도 하고, 통역비를 제공하기도 한다. 뉴욕시의 경우, 이민자 및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는 학교의 모든 계획과정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자료, 및 지원체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정보를 가정에서 언어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메릴랜드 주 등 몇몇 주는 소수민족의 언어로 부모용 지침서를 발간하기도 한다. 이민자 부모들의 자녀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함이다.

나. 지방자치단체 정책 사례

1)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

① 육아지원기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체계

육아지원기관의 질적향상을 위한 체계는 각 주 정부에 따라 이뤄진다. 2006년 14개 주(콜로라도,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 아이오와, 켄터키, 메릴랜드, 몬타나, 뉴햄프셔,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테네시, 버몬트)에서 다양한 형태로 각 센터의 질적 상태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켄터키,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등의 주는 주정부 차원에서 질적 평가체계를 법제화시켰다. 가령, 노스캐롤라이나는 별표시 등급제가 이에 해당된다. 별표시 등급제는 2000년부터 시작된 제도이다.

노스캐롤라이나의 별표시 등급제

기관: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의 아동발달분과(Division of Child Development)

대상: 전체 유아교육기관과 가정보육 프로그램(종교기관 부설 프로그램은 예외)

개요: 인가대상 전체 보육기관에 별등급이 표시된 인가증 발급. 전체 세 항목에서, 기본적인 인가조건에 도달한 경우 별 한 개가 붙은 인가증 발급. 별 두 개 이상(다섯개가 최고등급) 등급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신청. 2005년부터 두가지 항목(교직원 교육정도 및 프로그램 기준)평가결과로 별등급을 산정. 두 가지 항목에 대해 인가를 받고, 관련 기준을 상향하며 '질적인 면의 점수'를 받게 됨.

② 이민자 가족과 아동을 위한 주 정부 지원

소수민족 및 이중언어 배경의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각 주정부마다 다양한 정책이 있다. 일리노이 주의 몇몇 학군은 멕시코 정부와 공식협약을 맺고 영어와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이중언어 교사를 채용해 필요한 학군에 보낼 수 있도록 체계화시켰고, 스페인정부와도 유사한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운영 중이다. 또한 가정에서 사용되는 제1언어로 시험을 보거나 평가될 수 있도록, 시험문제를 번역하거나 질문을 통역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위해 학교에서는 자원봉사 통역

자를 구해주기도 하고, 통역비를 제공하기도 한다. 뉴욕시의 경우, 이민자 및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는 학교의 모든 계획과정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자료, 및 지원체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정보를 가정에서 언어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메릴랜드 주 등 몇몇 주는 소수민족의 언어로 부모용 지침서를 발간하기도 한다. 이민자 부모들의 자녀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함이다.

2) 뉴욕시

뉴욕시의 아동 육아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은 아동과 가족지원사무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이다. 육아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환급은 주로 보조금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보조금은 보조금 집행에 대한 주 정부의 규정에 따라 각 지역의 소셜 서비스 부서에서 집행된다. 아동과 가족지원사무국은 종합 서비스 기획 절차를 통해 지방 정부의 대표들과 협의를 하는데, 이때 각 지방 정부는 육아 서비스 요구 사항을 평가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육아 서비스와 관련된 필요 사항들을 확인한다. 이러한 노력에는 육아 제원 및 기관, 육아 협회,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경제 개발 단체, 영유아 프로그램 및 교육청 등이 모두 참여한다.

육아 지원은 바우처의 형태로 제공된다. 육아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아동의 가족의 권리이나 아동의 건강이나 안전 및 복지에 이익에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우처를 관리하는 해당 기관은 바우처 수혜자가 선택한 서비스 제공자를 부인할 수도 있다. 특별한 관심을 요하는 아동(children with special needs)이 있는 가정이나 저소득 계층의 가정은 연방 정부의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육아 서비스의 수혜 대상이 된다. 저소득 계층은 주 소득 기준의 20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지칭한다. 뉴욕시의 빈곤율을 14.2%이나 5세 미만 아동의 빈곤율은 21.3%에 이른다. 우선 수혜 대상을 위한 기금을 예산 내에서 따로 책정할 수도 있다. 수혜 자격은 각 지역의 해당 기관이 결정한다. 서비스 신청 접수 30일 이내에 수혜 자격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나 수혜자에게 수혜 여부가 통보된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육아 서비스 수혜 기간은 최장 12개월이며,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일시적 지원(TANF) 수혜 가정의 경우 수혜 기간은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일시적 지원(TANF) 규정에 따른다.

뉴욕시의 아동보호와 개발자금(CCDF)은 총 \$1,024,216,803이다. 아동보호와 개발자금(CCDF) 부담의 19.2%는 뉴욕주가 나머지 80.8%는 연방정부가 부담한다.

77,500가구의 127,600명의 아동이 개발자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일시적 지원(TANF)이 지출하는 육아비용은 \$548,582,508이다.

<표 III-3-2> 뉴욕시 아동보호와 개발자금(CCDF)

내용	지출액
아동보호와 개발자금(CCDF) 지출	\$1,024,216,803.00
연방정부 지출	\$827,449,012.00
주정부 지출	\$196,767,791.00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일시적 지원(TANF) 총 육아 지출	\$548,582,508.00

자료>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hild Care Bureau*. 2007

뉴욕 시정부의 주요한 육아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공조 체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표 III-3-3> 뉴욕시 육아 지원 프로그램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일시적지원(TANF)	아동과 가족지원사무국은 뉴욕시 장애지원사무국(OTDA)과 공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일시적지원(TANF) 수혜자들을 위한 육아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을 관리한다. 두 사무국과 건강부는 육아, 아동 복지, 공공 지원, 의료 지원 및 아동 지원을 망라하는 육아 관련 체제 및 규정을 공동개발한다.
뉴욕시 Pre-K 프로그램	공립 학교들이 관리하는 3-4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아동 조기 교육 및 개발 프로그램.
헤드스타트프로그램	헤드스타트공조 프로젝트를 통해 의사 교환, 기획, 규제 유연성, 프로그램 설계 및 서비스 제공 등의 분야를 관리한다.
장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부와 아동과 가족지원사무국은 장애 아동을 위한 육아 프로그램과 승인된 특수 교육 유치원을 통합 관리한다.

또한 대학 및 복지 기관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민/관 협력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 협력 프로그램은 뉴욕주립대학, 포드햄 대학, 로체스터, 청년교육을 위한 뉴욕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도 육아자원과 위탁(Child Care Resource and Referral, CCRF)이 육아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한 뉴욕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 주정부의 보험관련 부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험 혜택을 제공

하고 있다.

이 밖에 뉴욕시의 인허가 가족육아홈(Family Child Care Homes , FCCH)은 12,093개이고 소규모의 가족육아홈이 8,321개 대규모 가족육아홈이 3,772개로 소규모 가족육아홈이 68.9%를 차지한다(2006, National Association for Regulatory Administration & the National Child Care Information Center). 이와 같은 가족육아홈의 인가조건은 다음과 같다.

<표 III-3-4> 뉴욕시 보육시설 인가조건

구분		내용
수용 가능 아동 수		3-6 (+ 2 취학연령 아동)
소규모 가족육 아홈	제공업자 1인 당 수용 가능 아동 수	5(2세 미만 아동이 1인 이상인 경우) 6(2세 미만 아동이 없는 경우)
	제공업자 자신의 아동	유치원 이상 연령이 아닌 경우 포함
	제공업자 1인 당 최대 유아/영아 수	2세 미만 2인
수용 가능 아동 수		7-12(+ 2 취학연령 아동 2) 2:1(2세 미만)
대규모 가족육 아홈	제공업자 1인 당 아동 비율	6:1
	제공업자 자신의 아동	유치원 이상 연령이 아닌 경우 포함

자료: National Child Care Information Center(2007).

3)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의 육아 정책은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CDE)이 총괄한다. 육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1순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가정이나 아동이 방치되거나 학대를 당할 위험이 높은 가정이다. 2순위는 1인당 소득이 최저에 속하는 가정이다. 육아 서비스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된 가정은 수혜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는 한 계속 수혜자가 된다. 이때 가구 소득은 캘리포니아 주 중위 소득의 7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육아 증서(certificate)에는 부모, 아동, 육아 서비스 제공 시간, 서비스 제공자의 요율이나 주 정부가 제공하는 최대 지원 금액, 유효 기간이 기재되며, 부모에게 다양한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가 제공한 육아 서비스의 가격이 기재되며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 간에 현금처럼 사용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주요한 육아 서비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공조 체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표 III-3-5> 캘리포니아주 육아지원 프로그램

인디언 부족 기관	원주민 대표들은 육아 문제를 확인하고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헤드스타트 주 협력자문 위원회(Head Start-State Collaboration Advisory Committee)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보건	주 보건 당국 (California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과 협력을 통해 육아와 보건 분야를 연결한다.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임신부에 대한 의료지원, 영유아와 엄마를 위한 접근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임신한 여성들과 아동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교육	교육부는 각 지역의 교육 부처, 공립 및 사립 학교들과 협력하여 주 전역에 걸쳐 육아 및 발달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정자의 역할을 한다.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일시적 지원(TANF)	캘리포니아 주의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일시적지원(TANF) 담당 기관과 지속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Pre-K 프로그램	각 지역의 교육 기관, 대학 및 민간 비영리 기관들과의 계약을 통해 60여년 간 주 정부 차원의 유아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주립 프리스쿨은 저소득 계층 가정의 3-5세 아동을 위한 종합적인 발달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Head Start 프로그램	교육부 내의 캘리포니아 헤드스타트 협력사무국(CHSSCO)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의 헤드스타트 협회와 협력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또한 다양한 민/관 협력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육아우선프로젝트(Child Care Initiative Project)의 경우 아메리카은행과 공동으로 1985년에 시작된 프로그램으로서 캘리포니아 주가 겪고 있는 인가된 양질의 육아 서비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유아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The Program for Infant/Toddler Care, PITC)은 영유아 교사들을 위한 양질의 훈련 및 훈련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에 기반을 둔 종합적인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영유아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은 0-3세의 영유아들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을 질적/양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장기간의 공동 노력의 산물이다. 이 밖에도 육아 분야 전문 종사자들의 수를 늘리기 위한 육아관련 전문가 표준(Child Care Apprenticeship Standards)이나 아동 교육을 위해 TV를 적절히 이용하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육아 정책의 핵심이 되는 아동보호와 개발자금과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일시적 지원(TANF)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III-3-6> 캘리포니아주 아동보호와 개발자금(CCDF)

구분	내역
아동보호와 개발자금(CCDF) 지출	\$1,474,163,184.00
연방정부 지출	\$946,032,577.00
주정부 지출	\$528,130,607.00
월 평균 수혜 아동 수	140,70
월 평균 수혜 가정 수	92,50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일시적 지원(TANF) 총 육아 지출	\$489,566,256.0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일시적 지원(TANF)육아직접 지출액	\$399,786,256.0
TANF CCDF로 전환	\$89,780,000.0

자료: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hild Care Bureau. 2007.

이 밖에 캘리포니아주의 인허가 가족육아홈(Family Child Care Homes , FCCH)은 44,494개이고 소규모의 가족육아홈이 37,820개 대규모 가족육아홈이 6,674개로 소규모 가족육아홈이 85.0%를 차지한다(2006, National Association for Regulatory Administration & the National Child Care Information Center). 인가 센터의 현황 및 요건은 다음과 같다.

<표 III-3-7> 캘리포니아 보육시설 인가조건

구분	내용
수용 가능 아동 수	2-6 (+ 2 취학연령 아동)
소규모 가족 육아홈	제공업자 1인 당 수용 가능 아동 수 8
	제공업자 자신의 아동 10세 미만인 경우 포함
	제공업자 1인 당 최대 유아/영아 수
대규모 가족 육아홈	수용 가능 아동 수 최대 12 (+ 취학연령 아동 2)
	제공업자 1인 당 아동 비율 8:1
	제공업자 자신의 아동 10세 미만인 경우 포함

자료: National Child Care Information Center(2007).

이상과 같이 일본, 호주, 미국의 사례로부터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의 육아지원 정책을 기획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개별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특색에 맞추어 지역 현장에서 정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면, 지방자

치단체들은 지역 특성별로 지역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하고 현장밀착형 사업들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구가의 14단계 지원을 지역에 따라 18단계, 25단계 등으로 세분화하여 지원하는 것은 물론 국가가 명시한 부모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지원하는 것은 좋은 사례라 하겠다. 그 이외에도 일본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사업의 활성화, 영유아 정책과 학교교육의 연계, 호주에서 양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시설 보육은 물론 친인척에 의한 양육을 지원하는 점,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에서만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점 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미국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수행되고 있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통합적 육아지원 방식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으로 수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는 소수 민족 및 이중언어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에 따라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는 점은 육아지원정책의 효과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IV.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지원정책 효과 분석

본 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객관적 지표에 의한 상대적 효율성 측정과 주관적 만족도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지원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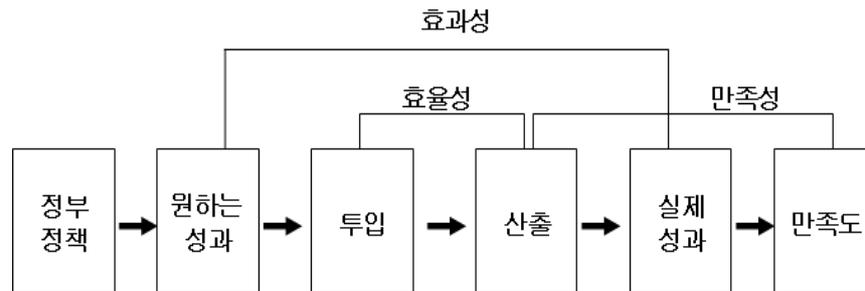
1. 정책의 객관적 성과 분석

가. 상대적 효율성 평가

1) 성과와 효율성

효율성을 측정하는 목적은 주민에게 보다 나은 가치와 서비스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지만, 정부 활동이 계량화와 측정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성과는 ‘정부 수준에서 투입과 산출의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Roger, 1990). Rogers(1990)는 성과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조직목표를 자치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의 정도로 보고 있으며, 김영기(1991)는 성과란 정부의 의도된 활동으로서 공공서비스를 통하여 주민들의 욕구충족이나 가치 실현에 미친 결과나 영향의 정도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한국능률협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9)에서는 성과란 조직이 가지고 있는 예산과 자원을 활용하여 어느 정도의 서비스 산출(Output)과 결과(Outcome)를 달성하였는가를 말한다. 이렇듯 성과의 개념은 다의적이고 복합적인데, 그 이유는 성과를 접근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자원 투입(Input)과 과정(Process)을 통하여 발생하는 일차적 산출물(Output)과 이차적 산출물인 욕구충족이나 가치실현에 미친 결과(Outcome)나 영향(Impact)까지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과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측정대상에 따라 투입(input), 활동(activity), 산출(output), 결과(outcome), 영향(impact)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정부활동의 성과에는 경제적 측면을 지칭하는 효과성, 효율성과 사회내의 배분 문제를 다루는 형평성, 시민들의 선호나 수요를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대응성 등이 포함된다(김인,

김영기, 류기형, 1991).²¹⁾ 각 개념들의 연관관계를 도식화 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IV-1-1> 정책 효과의 구성

먼저 효과성(effectiveness)은 추진기관이 의도한 목적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의 실현 정도 또는 조직 활동의 결과물인 산출이 목표를 실질적으로 성취한 정도를 의미한다. 이것은 행정활동의 궁극적인 영향 또는 결과에 기초하여 주어진 목적을 얼마나 실현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효율성(efficiency)은 투입(input)에 대한 산출(output)의 비율로 정의된다(Rogers, 1990:15).

산출은 어떤 활동이나 업무수행의 직접적 결과를 의미하고, 투입은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적·물적 자원을 의미한다. 결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투입으로부터 최대의 산출을 생산하거나 일정한 산출에 대한 최소한의 투입으로부터 달성된다. 효율성의 상위개념인 효과성은 프로그램의 효과와 서비스의 질을 고려하는 효과성의 개념도 포함하며(이성복, 2000; 김종성 외, 2000; 김대원, 1999),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될 때 효율성과 동일시된다(오승은, 2000; 임동진·김상호, 2000).

이러한 효율성의 측정을 위하여 흔히 사용되는 지표로는 단위원가(unit cost), 순편익(net benefits), 비용편익비율(cost-benefit ratio) 등이 있다. 공공서비스 성과 평가에서 효율성 기준의 적용을 위한 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일반

21) 공공서비스 성과 평가는 효과성, 능률성, 수입(revenue)으로 나누는 경우(Epstein, 1992)도 있고 업무량, 능률성, 효과성, 생산성의 범주로 구분되는 경우(Ammons, (1995)도 있다. 때로는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서비스 수준과 대응이라는 다섯 가지 기준을 사용(Rogers, 1990)하기도 한다. 이들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성과 평가 기준을 다양한 각도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으나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준이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대응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라휘문·한표환, 1999; 김시영·김규덕, 1996).

적인 것들로서 매 투입단위당 완성한 업무단위의 수로 표시된 비율, 이용가능한 자원의 양에 대한 실제 활용자원의 양의 비율, 효율성 지수(efficiency indices) 등이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매 투입단위당 완성한 업무단위의 수로서 표시되는 비율은 전형적인 효율성의 측정방법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가시적인 성과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효율성 진단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2) 상대적 효율성 평가 방법으로서 자료포락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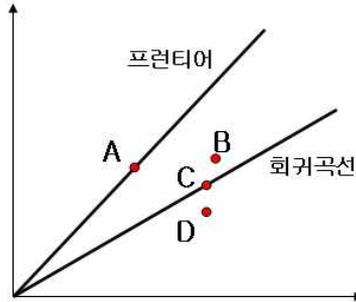
자료포락분석은 Charnes, Cooper and Rhodes(1978)에 의해 처음 도입된 후 공공조직의 효율성 측정에 있어 유용성이 인정된 연구방법이다. 이 방법은 실제로 관측된 다수의 투입물과 다수의 산출물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만들어진 비모수적인 모형이다. 특히, 동질적이거나 유사한 업무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여 병원, 공공기관, 정부 투자기관 등 비영리조직 등 투입과 산출을 결합할 수 있는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조직들간의 상대적 효율성 비교에 사용되어 왔다.

자료포락분석은 타 기법들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유용성을 가진다(윤경준, 최신용·강정석, 2004: 72-4). 첫째, 비용-효과분석이나 회귀분석과는 달리 개별조직의 비효율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가장 효율적인 기준으로 0-1 사이의 점수로 개별 조직의 효율성 점수를 알려줌으로써 조직간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다. 여기서 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효율성 프런티어²²⁾ 위에 있는 의사결정단위들이며 프런티어 밖에 있는 단위들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즉, 프런티어로부터의 거리로 비효율성을 측정한다.

<그림 3>은 단일투입과 산출을 가정하였을 경우, 회귀분석과 자료포락분석 분석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원점을 통과하는 회귀곡선은 데이터들이 거의 중앙을 지나며 평균 효율성을 보여주는 직선으로 이보다 위쪽에 위치하는 단위들은 효율성이 높고, 아래 쪽에 위치하는 단위들은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자료포락분석의 경우는 가장 우수한 단위를 기준으로 한 평가 방법으로 프런티어 라인 위에 있는 단위 A가 효율성 100%이며, 그 외의 단위들은 비효율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소위 상대 평가의 개념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른 비효율 단위들은 투입이나 산출 요소의 변화를 통하여 프런티어 라인 쪽으로 이동

22) 프런티어(frontier)는 최대의 산출을 나타내는 범위 내지 영역을 의미한다.

할 필요가 있다고 가정된다.



<그림 IV-1-2> 회귀곡선과 프런티어곡선

둘째, 투입요소나 산출요소의 가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공공부문의 경우 가격으로 환원할 수 없는 요소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과 측정을 위한 계량화가 쉽지 않았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셋째, 복수의 산출물을 생산하는 경우를 쉽게 다룰 수 있는 점이다²³⁾.

나. 측정 설계

1) 자료포락분석의 수식 모형

자료포락분석 모형에서는 분석대상이 되는 의사결정단위(Decision Making Unit:DMU)가 n 개 있다고 가정한다. 각 $DMU_j (j = 1, 2, 3, \dots, n)$ 는 같은 투입·산출항목을 가지고 있으며, m 개의 투입벡터 $X_j = (x_{1j}, x_{2j}, \dots, x_{mj}) > 0$ 을 사용하여 p 개

23) 반면 자료포락분석이 갖는 한계점도 존재하는데(김용민, 2004: 139-140), 우선 자료포락분석은 기술적 관계를 나타내지 못함으로 투입자원을 보다 싼 가격에 구입하였는지 여부나 동일 산출물이라 하더라도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알 수 없다. 둘째, 자료포락분석을 통한 효율성 평가시 전체를 비교집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산출과 투입의 비슷한 규모를 갖는 의사결정단위(DMU)를 비교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평가를 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의사결정단위들의 효율성 점수는 완벽하게 서열화할 수 없다(윤경준, 2003: 14). 셋째, 자료포락분석은 투입과 산출요소간의 동질성이 중요한데, 자료의 내용이 서로 다른 기관을 동시에 비교할 수 없다. 넷째, 자료포락분석은 분석대상이 내재적으로 안고 있는 비효율성을 밝혀내지 못한다. 예를 들면 모든 분석대상이 동일한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것이 더 비효율적인가를 규명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자료포락분석은 투입변수와 산출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없이 단순히 모형을 적용해 보는 것이므로 투입 및 산출 변수의 정의와 관련된 오류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의 산출물 벡터 $Y_j = (y_{1j}, y_{2j}, \dots, y_{nj}) > 0$ 을 가정한다. 이 때 분석대상으로 한 각 $DMU_k (k = 1, 2, \dots, n)$ 에 대한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원모형을 쌍대모형으로 전환한 기본 모형은 다음과 같이 정식화될 수 있다.

$$\begin{aligned} & \text{Minimize } \theta \\ & \text{Subject to } \sum_{j=1}^n X_j \lambda_j + \theta_{xk} \geq 0 \\ & \quad \sum_{j=1}^n Y_j \lambda_j \epsilon \geq y_k \\ & \quad L \leq \sum_{j=1}^n \lambda_j \leq U \\ & \quad \lambda \geq 0 \text{ and } \theta \geq 0 \end{aligned}$$

여기서 x_k 는 DMU_k 의 m 벡터 투입요소이고 y_k 는 DMU_k 의 p 벡터 산출물이며, λ 는 n 벡터의 생산행위에 부여되는 가중치이다. 위 식에서 k 번째의 DMU의 효율을 n 개의 DMU집합의 생산활동과 비교하여 구하고 있다. 그리고 λ 는 다른 자료를 비부(非負)결합하기 위하여 이용되고 있는 λ 의 총합에 대하여 하한(L)과 상한(U)으로 제한하고 있다. 위 식에서 최적해(θ^*, λ^*)에서 $\theta^* = 1$ 이고 또한 모든 최적해에 대하여 s_x 가 $X_k - X\lambda^* = 0$ 이거나 s_y 가 $Y\lambda^* - Y_k = 0$ 인 경우, k 번째 DMU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효율적으로 판단된다.

2) 투입 및 산출 요소

① 지방정부 자료구성

투입 요소는 예산과 인력을 지표로 활용하였다. 예산 지표는 영유아 1인당 비용(<표 II-3-4>부터 <표 II-3-19> 까지 참조)을 사용하였고, 인력 지표는 지방정부 별 영유아 100명당보육정책 담당 공무원 수(<표 IV-1-1>참조)를 계산하여 변수로 사용하였다. 산출요소는 2007년 12월 발간된 보육통계와 각 시도 보육자료 및 보육 시설 평가인증사무국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양적 확산'과 '질 관리'를 지표로 설계하였다. 양적 확산은 지방정부 영유아 100명당 시설 이용 영유아 수로 질 관리는

지방정부별 취원 영유아 100명당 평가인증참여 시설 영유아 수를 계산하였다.

<표 IV-1-1> 지방정부 투입 및 산출 지표

단위: 명

구분	인력	양적 확산		질관리	
	아동100명당 공무원수	영유아수	영유아 100명당 시설 이용 영유아 수	보육시설 영유아수	취원 영유아 100명당 평가인증참여 시설 영유아 수
서울	0.095	186,708	35.2	66,089	35.4
부산	0.097	62,059	38.4	19,613	31.6
대구	0.049	52,979	40.5	25,858	48.8
인천	0.098	49,206	31.9	14,925	30.3
광주	0.046	41,055	46.4	9,039	22.0
대전	0.064	31,063	34.2	11,433	36.8
울산	0.102	21,481	32.1	8,922	41.5
경기	0.066	242,511	33.0	51,784	21.4
강원	0.097	34,991	43.3	20,221	57.8
충북	0.066	39,537	45.9	12,621	31.9
충남	0.075	45,190	38.8	16,135	35.7
전북	0.046	54,693	53.7	29,243	53.5
전남	0.073	49,027	48.6	22,378	45.6
경북	0.085	58,540	41.6	21,202	36.2
경남	0.087	72,243	38.2	21,866	30.3
제주	0.052	21,132	57.6	8,053	38.1

*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2007.12), 보육통계(2007.12)

② 시도교육청 자료 구성

투입 요소는 예산과 인력을 지표로 활용하였다. 유아 1인당 예산액(<표 54-55> 참조)과 시도교육청 유아 100명당 유아교육정책 담당 공무원 수(<표 73>참조)를 계산하여 변수로 사용하였다. 산출 요소로는 양적 확산을 지표로 하여 시도교육청 3-5세 유아 100명당 기관 이용 영유아 수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IV-1-2> 시도교육청 투입 및 산출 지표

단위:명

지역	인력	양적확산
	유아100명당 공무원수	3-5세 유아 100명당 기관 이용 영유아 수
서울	0.030	29.8
부산	0.032	44.4
대구	0.036	40.1
인천	0.037	37.8
광주	0.023	37.3
대전	0.024	45.4
울산	0.033	48.6
경기	0.018	36.0
강원	0.117	34.7
충북	0.072	36.2
충남	0.124	35.7
전북	0.091	36.0
전남	0.091	36.1
경북	0.075	44.8
경남	0.051	45.5
제주	0.076	27.1

* 유아합계(2007.12), 주민등록 아동 통계, 유치원이용유아(2007)

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효율성

1) 지방정부의 상대적 효율성

자료포락분석에 이용된 프로그램은 선형계획법의 소프트웨어인 K-OPT를 이용하였다. 투입·산출지표에 의한 자료포락분석의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IV-1-3>과 같다.

16개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그 값이 0에서 1 사이의 값을 나타내고, 그 값이 1이면 가장 효율적임을 나타내는 효율성은 8개 지방정부에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지방정부²⁴⁾는 8개로 나타났다. 8개의 효율적인 시도는 효율

24) 효율적인 의사결정단위(DMU)라 함은 평가대상의 DMU들 가운데 비교되는 다른 DMU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투입·산출의 비율에 있어 우위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효율성 프론티어 상에

성 평점(E)이 1이고, 모든 여유변수(slack variable)의 값이 0으로 파레토 효율성(pareto optimality)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반면, 8개의 지방정부는 준거집단²⁵⁾에 비하여 비효율적인 자원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효율성 값이 1인 지역은 B, C, E, I, L, M, O와 P이며 비효율성의 정도는 0.67에서 0.88에 이르고 있다. F는 0.66904로 효율성 값이 가장 낮고, J는 0.99919로 효율성 값 1에 근접한 값이며 A, G, H, K, N는 0.80~88사이에 위치해 있다.

다음으로 준거집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윤경준, 1995: 102). 하나는 각각의 비효율적인 의사결정단위(DMU, 이하부터 DMU)에 대해 준거집단이 되는 DMU에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효율적 DMU가 준거집단으로 출현한 회수와 관련한 것이다. 먼저 전자의 경우 자료포락 분석결과 비효율적인 DMU의 준거집단을 표시해 주며, 이들 준거집단이 비효율적 DMU에 미친 영향력의 크기를 가중치(λ) 값으로 나타내준다. 즉 가중치 값이 0에서 1 사이에 위치하며 1에 가까울수록 미친 영향력의 크기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준거집단을 분석하는 두 번째 측면은 비효율적인 DMU의 평가에 사용된 효율적인 DMU들의 참조횟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참조횟수가 많을수록 다른 DMU의 평가에 사용된 빈도수가 많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준거집단의 문제는 투입·산출 배합구조면에서 가장 유사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F의 경우 A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G 역시 영향을 미치는 반면 H는 참조되기는 했으나 영향력의 크기는 작다. G와 N, 그리고 O에는 모두 C와 E가 영향력을 미쳤다. K에는 I가 가장 영향력의 정도가 높다. A의 경우, E와 C가, 그리고 P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상대적인 효율성이 평가되었다.

놓이게 되는 DMU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절대적인 관점에서 100%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비효율적인 DMU라 함은 효율성프런티어의 안쪽에 놓이게 되어 효율성 프런티어상에 있는 효율적인 DMU에 비해 투입·산출에 있어 열위의 입장에 있는 DMU들을 의미한다.

- 25) 준거집단은 특정 지방정부의 양과 질에서 유사한 투입·산출 구조를 가지는 지방정부로 특정 지방정부를 평가하는데 이용되는 지방정부를 말한다. 각 DMU의 효율성과 비효율성 정도 그리고 비효율적 부문이 준거집단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측정되기 때문이다. 비효율적인 지방정부는 준거집단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비효율적인 자원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효율적인 DMU라 함은 효율성 프런티어 안쪽에 놓이게 되어 효율성 프런티어상에 위치하는 효율적인 DMU에 비해 비효율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서로 다른 준거집단을 가지고 있는 DMU들을 같은 척도로 비교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이은국 외, 2003: 97-8).

<표 IV-1-3> 자료포락분석 모형에 의한 보육서비스의 상대적 효율성평가

DMU(의사결정단위)	효율성 평점(E)	효율성여부 (참조횟수)	준거집단(j) 가중치(λ)	효율성순위
DMU A(#A)	0.80132	E(1)		12
DMU B(#B)	1.00000		#F의 경우	7
DMU C(#C)	1.00000	E(5)	$\lambda_{WA}=0.66843$	2
DMU D(#D)	0.85858		$\lambda_{WG}=0.30060$	14
DMU E(#E)	1.00000	E(6)	$\lambda_{WH}=0.03098$	1
DMU F(#F)	0.66904			16
DMU G(#G)	0.88799	E(1)	#J의 경우	10
DMU H(#H)	0.88103	E(1)	$\lambda_{WC}=24198$	11
DMU I(#I)	1.00000	E(1)	$\lambda_{WE}=0.59335$	4
DMU J(#J)	0.99919		$\lambda_{WM}=0.10184$	9
DMU K(#K)	0.87282	E(1)	$\lambda_{WP}=0.06283$	13
DMU L(#L)	1.00000	E(1)	#K의 경우	4
DMU M(#M)	1.00000	E(1)	$\lambda_{WI}=0.81330$	4
DMU N(#N)	0.79273		$\lambda_{WK}=0.16665$	15
DMU O(#O)	1.00000		$\lambda_{WL}=0.02005$	7
DMU P(#P)	1.00000	E(2)		3

분석 결과, G가 가장 빈번하게 준거집단이 되었고, 그 다음으로 C와 P 순서이다. 그리고, A, G, H, I, K, L, M이 각각 한 번씩 준거집단으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효율성 값이 1이고 E가 가장 준거집단으로 출현한 횟수가 많다는 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으로 C와 P가 효율성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조합할 때, 효율성이 가장 높은 3개 집단(C, E, P), 다소 높은 5개 집단(I, L, M, B, O), 다소 낮은 5개 집단(A, G, H, J, K), 가장 낮은 3개 집단(F, N, D)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대적 효율성 점수를 알고 준거집단을 이루는 DMU들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부문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알아야 효율성 향상의 목표를 세울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비효율적인 DMU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준거집단이 존재하고 있는 효율성 프로티어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효율선 상의 값에 대한 계산은 특정 비효율적 DMU에 대한 준거집단들을 대상으로 하여 각 준거집단의 가중치와 실제값을 곱한 후에 이를 모두 더해서 구한다. 비효율적 DMU가 달성해야 할 목표치인 효율성 값은 각 투입과 산출에 있어서 참조합성

값에서 실제값을 감해줌으로서 구한다. 이러한 달성목표량은 각 투입 산출요소에 대한 여유변수(slack)의 형태로 제시된다. 아래의 <표 IV-1-4>를 보면 K의 경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건비 비중은 낮추고 운영비와 환경개선비의 비중은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K는 여타의 투입 변수들보다 인건비 지원액에 투입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인건비 지원시설과 미지원 시설 모두 인건비 지원액은 효율성 기준선을 상회하는 비용이 투입되는 반면, 운영비는 모두 효율성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와 같은 예산 상태를 유지한다면 인건비 지원액을 운영비로 대체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지원시설의 경우는 운영비와 환경개선비를 모두 증액해야 한다. 또한, 평가인증 시설 영유아수 및 평가인증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와 담당 공무원 수도 증가시켜야 효율성 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겠다.

<표 IV-1-4> DMU K의 자료포락분석결과해석

단위: 명, 원

	구분	실제값	참조합성값	여유변수
투입	X1(지원시설인건비)	1,935,578	1,701,180	-234,398
	X2(지원시설운영비)	9,775	13,249	3,474
	X3(지원시설환경개선비)	7,421	6,627	-794
	X4(미지원시설인건비)	135,994	46,967	-89,027
	X5(미지원시설운영비)	2336	2503	167
	X6(미지원시설환경개선비)	63	494	431
	X7(모든시설평가인증지원비)	1,602	4,008	2,406
	X8(취원영유아100명당담당공무원수)	0.075	0.092	0.017
산출	Y1(영유아 100명당 취원영유아수)	38.8	42.8	4.0
	Y2(취원영유아100명당평가인증시설영유아수)	35.7	54.0	18.3

2) 시도교육청의 상대적 효율성

16개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정책의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효율성 값이 1인 교육청은 11개 시도 교육청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시도 교육청은 5개 지역이다. 비효율적이라고 판명된 시도교육청의 효율성 정도는 0.63884에서 0.71275에 이르고 있다.

H, G, P가 가장 빈번하게 준거집단이 되었고, 그 다음으로 E, M이다. 효율성 값

이 1인 지역은 A, B, C, E, F, G, H, K, M, N, P이다. 가장 낮은 효율성 점수를 나타낸 지역은 I이다. 효율성 점수와 준거집단으로 참조된 횃수를 종합할 때, 효율성이 가장 높은 5개 집단(H, G, P, E, M), 높은 6개 집단(A, B, C, F, K, N), 낮은 5개 집단(D, L, J, O, I)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IV-1-5> 자료포락분석 모형에 의한 유아교육서비스의 상대적 효율성평가

DMU(의사결정단위)	효율성 평점(E)	효율성여부 (참조횃)수	준거집단(j) 가중치(λ)	효율성순위
DMU A(#A)	1.00000			6
DMU B(#B)	1.00000		#I의 사례	6
DMU C(#C)	1.00000		$\lambda_{WE}=0.48711$	6
DMU D(#D)	0.98644		$\lambda_{WH}=0.45877$	12
DMU E(#E)	1.00000	E(3)	$\lambda_{WM}=0.05322$	4
DMU F(#F)	1.00000		$\lambda_{WP}=0.00089$	6
DMU G(#G)	1.00000	E(4)	#J의 사례	2
DMU H(#H)	1.00000	E(5)	$\lambda_{WE}=0.48058$	1
DMU I(#I)	0.63884		$\lambda_{WG}=0.30843$	16
DMU J(#J)	0.68935		$\lambda_{WH}=0.14639$	14
DMU K(#K)	1.00000		$\lambda_{WP}=0.06460$	6
DMU L(#L)	0.71275			13
DMU M(#M)	1.00000	E(1)	#O의 사례	5
DMU N(#N)	1.00000		$\lambda_{WE}=0.10459$	6
DMU O(#O)	0.67380		$\lambda_{WG}=0.74318$	15
DMU P(#P)	1.00000	E(4)	$\lambda_{WH}=0.15223$	2

아래의 <표 IV-1-6>을 보면 D의 경우 현재의 예산과 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원 유아수를 100명 당 4.5명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즉, 지역 내에서 취원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른 준거 집단과 비교했을 때 D의 국공립 유치원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기타 목적사업비와 사립유치원의 운영비, 시설비, 기타 목적사업비는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인건비나 시설비에 대한 예산지원보다 운영비 지원이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항목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운영비와 유치원 운영 관련 목적 사업 경비에 대한 예산 지원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큰 만큼 더 많은 지역 내 유아들에게 취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IV-1-6> DMU D의 자료포락분석결과해석

단위 : 명, 원

	관측치	효율성기준선	여유변수	
투입	X1(국공립유치원인건비)	154,646	152,548	-2,098
	X2(국공립유치원운영비)	87,670	42,722	-44,948
	X3(국공립유치원시설비)	8,236	8,124	-112
	X4(국공립유치원기타경비)	70,095	47,665	-22,430
	X5(사립유치원운영비)	2,084	2,056	-28
	X6(사립유치원시설비)	474	28	-446
	X7(사립유치원기타)	5,864	4625	-1,239
	X8(취원 유아100명당 담당공무원수)	0.037	0.029	-0.008
산출	Y1(유아 100명당 취원유아수)	37.8	42.3	4.5

2. 정책의 주관적 만족도 분석

가. 지방자치단체 수요자별 정책 만족도

효율성 중심 성과 이론의 다른 한 편에는 성과 평가의 기준을 반응성(responsiveness), 형평성(equity) 등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는 성과 이론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주민들의 요구 및 선호를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에 조응시키는 지표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하거나 주민만족도 등을 측정 지표화 하고 있다²⁶⁾.

본 연구에서도 육아정책의 대상자인 기관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공공서비스가 지역 사회 수요에 얼마나 대응적으로 수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해보았다.

27). 대응적 수용의 문제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충족

26) 일반적으로 만족도 조사와 같은 주관적 평가는 산출된 서비스와의 관련이 미약하고,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평가로 인하여 정책결정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평가하는 시민들의 인지 및 평가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등의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Brudney and England, 1982)

27) 물론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끼는 직관적이며 주관적인 만족도 조사이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감(expectation), 인식(perceptions) 및 객관적인 결과 또는 산출 측정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반드시 서비스 수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켜 주는가 하는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공급 수준의 문제와 관련된다²⁸⁾.

16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육아지원정책별로 수요자들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보육시설 시설장과 학부모, 유치원 원장과 학부모에게 동일하게 4개 영역 10문항으로 측정하였다²⁹⁾. 아래의 <표 IV-2-1>은 유치원 원장과 학부모, 보육시설 시설장과 학부모 전체의 만족도 결과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무 회계관리와 지역 특수한 정책 및 재정지원을 제외한 정책 영역들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교육비/보육료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평균(2.56)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인 지방자치단체는 인천(2.72), 대구(2.69), 부산(2.66), 대전(2.64), 전북(2.63), 강원(2.62), 충남(2.59), 경기(2.58), 제주(2.58), 서울(2.57)이다. 인건비 지원 정책에서 평균(2.18)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인 지방자치단체는 부산(2.53), 제주(2.35), 대구(2.29), 인천(2.29), 경북(2.27), 울산(2.24), 전북(2.18)이다. 운영비 지원 정책에서 평균(2.26)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인 지방자치단체는 부산(2.54), 인천(2.43), 경남(2.35), 서울(2.34), 제주(2.32), 대구(2.29), 경북(2.29), 전북(2.27), 대전(2.26)이다. 표준교육/보육과정 운영지원 정책에서 평균(2.75)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인 지방자치단체는 제주(2.97), 부산(2.86), 인천(2.84), 강원(2.80), 대구(2.79), 경북(2.77), 광주(2.77), 대전(2.76), 경기(2.76)이다.

교사교육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평균(2.54)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인 지방자치단체는 대구(2.68), 부산(2.67), 제주(2.64), 강원(2.63), 서울(2.61), 경기(2.59), 대전(2.58), 광주(2.57)이다. 학사 및 행정관리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평균(2.71)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인 지방자치단체는 부산(2.90), 제주(2.88), 경북(2.80), 충남(2.75), 대구(2.75), 인천(2.74), 서울(2.72), 강원(2.71), 전북(2.71)이다. 장학 및 평가와 관련하여 평균(2.78)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인 지방자치단체는 제주(3.03), 서울(2.91), 인천(2.90), 대구(2.84), 경북(2.84), 전북(2.80), 부산(2.78)이다. 재무회계관리 및 지역 특수한 정책과 재정지원 정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별 만족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재무 회계관리 정책에 대해서 제주(2.91)와 경북(2.84)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지역 특수한 정책 및 재

28) 일반적으로 대응성은 지역주민들이 지방정부로부터 자신들의 복지에 대한 수요 등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으며, 그 혜택은 주민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만족시켜 주었는가를 의미한다(정우열, 2001: 179).

29) 보육정책에 대해서 보육시설 시설장과 학부모에게는 4개 영역 11문항으로 만족도를 측정했으나, 유치원 원장과 학부모와 동일하게 비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요자별 만족도 분석에서는 유치원 원장과 학부모에게 질문한 4개 영역 10개 문항에 대한 결과만 활용하였다.

정지원에 대해서 제주(2.54, 2.44)와 부산(2.43, 2.32)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표 IV-2-1> 지방자치단체 별 수요자 만족도

단위 : 점, 명

		교육비/ 보육료 지원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표준교육/ 보육과정 운영	교사 교육지원	학사/ 행정관리	재무· 회계관리	장학평가	지역 특수한 정책	지역 특수한 재정지원
서울	평균	2.57	2.17	2.34	2.68	2.61	2.72	2.67	2.91	2.18	2.20
	사례수	134	98	97	102	99	97	91	110	84	84
부산	평균	2.66	2.53	2.54	2.86	2.67	2.90	2.77	2.78	2.43	2.32
	사례수	119	93	89	90	94	87	87	91	75	78
대구	평균	2.69	2.29	2.29	2.79	2.68	2.75	2.61	2.84	2.27	2.07
	사례수	102	82	80	82	84	71	74	88	71	71
인천	평균	2.72	2.29	2.43	2.84	2.47	2.74	2.74	2.90	2.26	2.27
	사례수	121	90	89	94	93	91	85	104	84	78
광주	평균	2.43	2.00	1.91	2.77	2.57	2.58	2.62	2.69	2.19	2.06
	사례수	111	85	78	87	81	77	73	84	70	69
대전	평균	2.64	2.14	2.26	2.76	2.58	2.70	2.69	2.72	2.39	2.25
	사례수	105	80	81	79	80	82	75	88	62	67
울산	평균	2.45	2.24	2.22	2.66	2.42	2.53	2.55	2.72	2.18	2.09
	사례수	92	72	68	70	67	70	69	78	67	68
경기	평균	2.58	2.16	2.21	2.76	2.59	2.61	2.57	2.67	2.29	2.23
	사례수	91	75	70	74	76	72	69	75	55	52
강원	평균	2.62	2.05	2.21	2.80	2.63	2.71	2.70	2.75	2.29	2.20
	사례수	133	105	97	102	103	101	97	110	85	86
충북	평균	2.54	2.04	2.08	2.74	2.51	2.69	2.63	2.68	2.31	2.18
	사례수	117	89	85	88	84	86	81	87	74	76
충남	평균	2.59	2.02	2.15	2.74	2.48	2.75	2.65	2.72	2.27	2.14
	사례수	120	87	86	89	92	80	81	92	75	78
전북	평균	2.63	2.18	2.27	2.61	2.53	2.71	2.62	2.80	2.32	2.25
	사례수	97	73	71	71	74	70	66	82	53	61
전남	평균	2.38	2.11	2.23	2.58	2.36	2.66	2.64	2.71	2.11	2.03
	사례수	90	73	66	72	74	68	67	80	63	65
경북	평균	2.47	2.27	2.29	2.77	2.45	2.80	2.84	2.84	2.30	2.21
	사례수	113	83	82	92	88	81	81	100	77	78

경남	평균	2.41	2.10	2.35	2.69	2.38	2.66	2.64	2.75	2.21	2.07
	사례수	110	93	84	96	96	95	87	97	75	74
제주	평균	2.58	2.35	2.32	2.97	2.64	2.88	2.91	3.03	2.54	2.44
	사례수	77	66	63	67	64	57	58	69	48	52
계	평균	2.56	2.18	2.26	2.75	2.54	2.71	2.68	2.78	2.28	2.18
	사례수	1732	1344	1286	1355	1349	1285	1241	1435	1118	1137
F값		2.404***	2.889****	3.161****	1.895**	1.813**	1.593*	1.363	1.616*	1.261	1.349

1점: 매우 불만족스럽다 - 4점: 매우 만족한다

****P< 0.001 ***P< 0.01 **P< 0.05 *P< 0.1

정책 만족도를 수요자-유치원 원장, 학부모, 보육시설 시설장, 학부모-별로 살펴 보았을 때, 수요자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 시설장 및 학부모 집단들 중에서 유치원 원장 집단의 만족도가 가장 낮다. 또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장 보다는 학부모 집단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개별 정책에 대해서 유치원 장학과 보육시설 평가인증(2.78)과 교육과정/표준보육과정 운영(2.75)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지역 특수한 정책 입안(2.28)과 재정 지원(2.18) 및 인건비 지원(2.18)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이상의 결과에 따르자면, 수요자들은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서 운영되는 기본적인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반면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주체이자 과정 운영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사 또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는 상대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요구하는 유아교육 및 보육관련 수요를 적절히 반영한 정책과 사업을 만들고 이를 지원하는 데에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여준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평가는 수요자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준다. 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유치원 원장(2.37)보다는 학부모의 만족도(2.49)가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보육시설 시설장(2.66) 보다는 학부모(2.67)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표 IV-2-2> 수요자별 정책 만족도 1

단위: 점,명

		교육비/보육료 지원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표준교육/ 보육과정운영	교사 교육지원
유치원 원장	평균	2.37	2.03	2.19	2.63	2.47
	사례수	419	403	415	408	422
보육시설 시설장	평균	2.66	2.10	2.13	2.78	2.37
	사례수	434	432	408	410	418
유치원 학부모	평균	2.49	2.36	2.47	2.73	2.77
	사례수	364	211	202	212	208
보육시설 학부모	평균	2.67	2.38	2.42	2.88	2.70
	사례수	522	302	267	329	307
계	평균	2.56	2.18	2.26	2.75	2.54
	사례수	1739	1348	1292	1359	1355
F값		19.565****	17.483****	15.372****	10.944****	24.828****

1점: 매우 불만족스럽다 - 4점: 매우 만족한다

****P< 0.001

또한, 유치원 원장과 학부모보다는 보육시설 시설장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인건비 지원 정책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도 교육비/보육료 지원 정책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줬다.

하지만, 운영비 지원 정책과 교사 교육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시설장(2.13, 2.37)과 학부모(2.42, 2.70) 보다 유치원 원장(2.19, 2.47)과 학부모(2.47, 2.77)의 상대적인 만족도가 크고, 유치원 원장이나 보육시설 시설장보다 유치원 학부모와 보육시설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크다.

학부모들은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지원 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해줄 것을 기본으로 하여,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에 있어 “엄격한 자격 심사를 통한 공정성 증대”를 요청하고 있다.

- 교육비를 보조 받기 위해 몇 가지 서류를 참고하는 것으로 교육비 보조 액수가 달라지고 있는데 대해 불만이 있고 개선되어지기를 바란다. 월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보조 지원이 달라지지만 실제와는 많이 다르다(전북 사립유치원 학부모)
- 자영업자나 소득이 눈에 띄지 않은 사람들만 혜택 많이 받고, 월급쟁이들은 저소득

혜택을 못 받는데, 소득이 불투명한 자영업 관련직 계층으로 인해 불필요한 지원(교육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소득에 대한 근거자료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강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 학부모의 편법으로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가 많아 공정성을 가려 지원했으면 좋겠다(인천, 개인보육시설 학부모).
- 공립유치원에 교육비 지원이 너무 작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유아는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는 방법까지 알려 주는데 공립유치원은 분기별로 수업료와 급식비로 165,000원 지원 받고 나서도 추가로 급식비를 일부 부담해야 하니 공립유치원 다니는 것이 불리한 생각이 든다(경북 국공립 유치원 학부모)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 정책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공정하고 엄격한 지원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편법으로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 정책에 대해서 수요자 집단별 만족도는 유치원 학부모들이 상대적으로 낮는데, 유치원 학부모들은 국공립 유치원과 보육시설 모두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원을 받는다는 것 또한 공평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인건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수요자별 만족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학부모들보다 원장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수요자들은 인건비 지원의 문제를 교사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교사의 이직 문제나 보육 및 교육의 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국공립과 사립/민간간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사립유치원비의 대부분이 교사 인건비로 나가는 현실에서 나라에서 국공립 유치원과 똑같이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설립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나라에서 지원받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에 따라 교육비 지원이 되어야 한다 (경남 사립유치원 학부모)
- 보육시설에도 국공립 유치원처럼 종일반 교사를 지원해 주어서 하루 종일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질 높은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으면 한다(전북, 법인보육시설 학부모).
- 교사들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동이 잦아서 아이들 정서에도 좋지 않고, 일한만큼 급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결국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온다(전남, 민간보육시설 학부모)
-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급여 및 복지 혜택이 병설유치원에 근무하고 선생님과 비슷해져서 선생님들의 이직이 줄어들고 전문적인 유치원교사들이 많아져서 교육의 기초단계

에서 아주 중요한 유치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교사의 질이 향상 된다면 유아 사교육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전북 사립유치원 학부모)

특히, 정부의 재정 지원은 시설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지원 방식을 차별화시키고 있지만 지역 내에서 여러 개의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놓고 고민하는 학부모들에게는 최상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기준이고 모든 기관이 최상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사립 기관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는 국공립 수준의 교사 안정성을 요구하고, 인건비가 지원되는 기관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는 기준 보육교육 시간 외에도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관만큼의 지원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 학부모들의 경우 교사의 이직으로 인한 영유아들의 정서적 불안감을 더욱 크게 문제 삼고 있고, 위생 관리를 위해 청소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원장들의 경우, 인건비 지원을 시설운영의 어려움과 연결시켜 요구하고 있다. 인건비를 지출해야 하는 원장의 경우 인건비 지원에서의 정원 조건과 근무시간의 문제를 가장 빈번하게 지적하고 있다.

- 유아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이 30%밖에 되지 않으므로 초봉이 높은 교사를 지원 비율이 80%인 영아반 담임을 계속 줄 수 밖에 없다(경북, 법인보육시설 시설장).
- 영아전담보육시설로 교사 근무시간이 실제로 7:30-17:30 보육하고 있는데 8시간이후 초과 시간 수당이나 보조교사인력이 필요하다(광주, 법인보육시설 시설장).
- 노동법에는 하루8시간 노동이지만, 보육시설 종사자는 하루 12시간 근무한다, 초과근무시간 수당은 시설장에게 떠넘기는 형태인데 개선되었으면 한다(충북, 법인보육시설 시설장).
- 교사의 휴게 시간과 연구시간이 주어져야 하는데 현 근무 조건에서는 불가능하다. 학급당 보조교사 또는 보육 도우미가 필요하다(제주 국공립보육시설 시설장).
- 농어촌 영유아수 감소로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어렵다. 정원을 하향 조정하여 인건비가 나오도록 하였으면 한다(전북, 법인보육시설 시설장).

반면, 표준보육과정/교육과정 운영(유치원 원장 2.63, 학부모 2.73, 보육시설 시설장 2.78, 학부모 2.88)과 교사 교육지원(유치원 원장 2.47, 학부모 2.77, 보육시설 시설장 2.37, 학부모 2.70)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교육/보육료나 인건비 등의 재정 지원 정책 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 수준을 나타냈다. 교사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원장과 학부모 모두 교사 전문성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좋은 연수 프로그램”, “적합한 놀이교육 프로그램”, “교사교육으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교사의 참여를 증대시켜서 자녀들에게 혜택이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표 IV-2-2> 참조)

- 표준보육과정의 개정되었음에도 표준보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교사 교육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대구, 개인보육시설 시설장).
- 보육교사의 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실재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해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위한 상담심리, 특수치료나 유아 체육 같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이 제공되면 좋겠다(강원, 법인의 보육시설 시설장)
- 보수교육이나 기타교육이 평일에 이뤄지고 있고, 교사가 교육을 간다던지 출산시에 대체교사가 없어서 너무나 어려운 현실에 봉착해 있다(전남, 법인보육시설 시설장).

운영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수요자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유치원 원장 2.19, 학부모 2.47, 보육시설 시설장 2.13, 학부모 2.42). 학부모들은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반면,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원장들은 장애영유아나 종일제와 관련된 새로운 수요에 따른 운영비의 부족 및 영유아 감소로 보육료는 줄어드나 차량운행은 지속해야 하는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혜택이 있었으면 한다(충남, 개인보육시설 학부모).
- 읍면지역이라 도시보다는 교육적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 다양한 교육 활동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더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경남 사립법인유치원 학부모)
- 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수업준비 시간 부족하기 때문에 각종 교재와 교구를 보급해 주었으면 좋겠다. 장애유형에 따른 교구나 의료기등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법인 외 보육시설 시설장)
- 지역특성상 장애영유아가 갈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정보나 시설도 부족하고, 후원시 교육연계가 되지 않는다. 일반 보육시설과 차별화된 (장애유형의 따른 학습지 교구, 의료기)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전북, 법인보육시설 학부모)

학사관리에 대해서 유치원 원장(2.62)보다 학부모(2.89)가 행정관리에 대해서 보육시설 시설장(2.64)보다 학부모(2.84)가 상대적인 만족도 수준이 높다.

<표 IV-2-3> 수요자별 정책 만족도 2

단위: 점,명

		학사/ 행정관리	재무· 회계관리	장학/평가	지역특수한 정책	지역특수한 재정지원
유치원 원장	평균	2.62	2.57	2.61	2.26	2.11
	사례수	406	403	423	366	372
보육시설 시설장	평균	2.64	2.64	2.67	2.21	2.14
	사례수	425	437	434	358	364
유치원 학부모	평균	2.89	2.79	2.88	2.42	2.39
	사례수	203	165	179	173	176
보육시설 학부모	평균	2.84	2.87	3.05	2.30	2.22
	사례수	256	240	405	225	229
계	평균	2.71	2.68	2.78	2.28	2.18
	사례수	1290	1245	1441	1122	1141
F값		13.005****	11.455****	33.827****	3.287**	6.050****

1점: 매우 불만족스럽다 - 4점:매우 만족한다

****P< 0.001 ***P< 0.01 **P< 0.05

장학지원 정책에 대해서 유치원 원장(2.61)보다 학부모(2.88)가 평가인증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시설장(2.67)보다 학부모(3.05)가 상대적인 만족도 수준이 높다.

평가인증에 대해서 보육시설 시설장은 “평가인증으로 인한 운영 및 모집 관련 인센티브”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반면 부모들은 평가인증이 현실적인 시설 운영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요청하고 있다.

- 평가인증제 검사 받을 기간만 반짝하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의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있었으면 한다(충북, 법인보육시설 학부모).
- 평가인증의 경우는 단계적 실시가 필요하며 서류와 보이는 것 위주의 평가는 바뀌어야 할 것이다(울산, 국공립보육시설 학부모).
- 보육현장의 질을 높이기 위해 평가 인증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많은 도움은 되지만 현실성이 낮아 시설에는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노후 시설의 경우 환경개선 부담금이 커서 신규시설에 미치지 못한다(충남, 법인보육시설 시설장).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특수한 정책을 만들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유치원과 보육시설 시설장보다는 학부모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

족도를 나타냈다.

<표 IV-2-4> 인지도와 만족도 상관관계

	만족도									
	교육비	인건비	운영비	과정	교사	학사	재무	장학	지역정책	지역재정
교육비	.141(**)	-.014	-.001	.102(**)	.012	.051	.100(**)	.053(*)	.048	.005
인건비	.041	.026	-.043	.062(*)	-.111(**)	-.033	.049	-.030	.013	-.007
지원	-.001	-.001	.088(**)	.088(**)	-.056(*)	.024	.041	-.009	.100(**)	.071(*)
과정	.051(*)	-.028	-.010	.258(**)	.016	.033	.087(**)	.073(**)	.071(*)	.033
교사	.045	.001	.032	.172(**)	.144(**)	.079(**)	.095(**)	.034	.101(**)	.037
학사	.045	-.058(*)	-.015	.101(**)	-.017	.171(**)	.146(**)	.040	.064(*)	.025
재무	.015	-.055(*)	-.056(*)	.083(**)	-.083(**)	.062(*)	.213(**)	.018	.034	.016
장학	.037	-.057(*)	-.044	.134(**)	-.045	.085(**)	.167(**)	.218(**)	.034	.002
지역정책	.022	.051	.076(**)	.109(**)	.050	.070(*)	.100(**)	.033	.292(**)	.169(**)
지역재정	.032	.067(*)	.059(*)	.082(**)	.054(*)	.051	.082(**)	.027	.231(**)	.259(**)

**P< 0.001 *P< 0.05

인건비 지원 정책을 제외하고는 교육비/보육료 지원, 운영비 지원, 표준교육/보육과정 운영, 교사 교육지원, 학사/행정 관리, 재무/회계 관리, 장학/평가, 지역 특수한 정책, 지역 특수한 재정지원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는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런점에서, 수요자들이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만족도를 낳게 할 수 있다.

육아지원정책별로 수요자들의 인지도는 만족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높다. 교육비,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과 같은 재정지원 정책과 평가인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인지도의 차이가 있다. 그 밖의 다른 정책 영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인지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2-5> 지방자치단체 별 수요자 인지도

단위: 점,명

		교육비 지원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교육과정 개발· 보급	교사연수	학사· 행정관리	재무· 회계관리	장학· 평가	지역 특수한 정책	지역 특수한 재정지원
서울	평균	3.29	2.81	2.66	2.79	2.78	2.71	2.64	3.01	2.29	2.21
	사례수	146	146	147	146	146	147	147	147	147	147
부산	평균	3.34	2.92	2.75	2.82	2.80	2.74	2.68	2.98	2.44	2.40
	사례수	133	133	132	132	132	130	130	130	130	130
대구	평균	3.17	2.72	2.55	2.88	2.83	2.73	2.68	3.10	2.42	2.35
	사례수	113	113	113	113	113	113	112	113	113	113
인천	평균	3.41	2.94	2.89	3.02	2.86	2.89	2.81	3.23	2.51	2.38
	사례수	133	133	132	132	133	132	133	132	133	133
광주	평균	3.27	2.68	2.58	2.87	2.75	2.71	2.67	2.97	2.37	2.30
	사례수	119	117	119	120	120	120	120	117	118	120
대전	평균	3.39	2.79	2.68	2.82	2.75	2.81	2.82	3.17	2.35	2.24
	사례수	113	113	113	113	113	112	113	113	113	113
울산	평균	3.42	2.88	2.79	2.82	2.65	2.77	2.76	3.04	2.45	2.43
	사례수	99	99	98	100	100	99	99	97	99	99
경기	평균	3.32	2.81	2.68	2.79	2.74	2.76	2.65	3.02	2.23	2.21
	사례수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강원	평균	3.28	2.76	2.69	2.86	2.89	2.77	2.61	3.01	2.26	2.22
	사례수	145	144	140	142	142	141	143	143	140	142
충북	평균	3.36	2.89	2.72	2.87	2.83	2.84	2.74	3.02	2.43	2.45
	사례수	121	120	119	120	120	121	121	121	120	119
충남	평균	3.38	2.81	2.68	2.81	2.75	2.64	2.51	2.90	2.25	2.27
	사례수	125	125	126	125	126	125	125	126	125	125
전북	평균	3.17	2.70	2.49	2.67	2.65	2.65	2.54	2.92	2.22	2.25
	사례수	114	115	114	115	114	113	112	114	114	114
전남	평균	3.27	2.90	2.77	2.81	2.73	2.87	2.71	3.13	2.32	2.36

	사례수	101	101	101	100	99	99	99	100	98	98
경북	평균	3.35	2.90	2.78	2.94	2.88	2.77	2.68	3.17	2.40	2.29
	사례수	121	119	120	121	121	119	120	121	121	119
경남	평균	3.32	2.95	2.76	2.85	2.76	2.94	2.86	3.18	2.37	2.26
	사례수	119	119	118	118	119	119	119	119	118	117
제주	평균	3.46	3.27	2.96	3.05	2.98	2.89	2.85	3.28	2.37	2.44
	사례수	85	85	83	85	83	83	84	83	84	84
계	평균	3.32	2.85	2.71	2.85	2.79	2.78	2.69	3.07	2.35	2.31
	사례수	1887	1882	1875	1882	1881	1873	1877	1876	1873	1873
F값		1.772**	2.411**	1.936**	1.283	1.165	1.178	1.409	1.878'	1.316	1.144

1점 : 전혀 모른다 - 4점:잘 알고 있다

**P< 0.05 'P< 0.1

먼저, 인지 정도 역시 교육비·보육료 지원과 장학 및 평가인증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정도가 보통 정도를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관 운영 및 기관 내에서 영유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표준보육과정/교육과정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수요자들의 인지도가 교육비/보육료 지원 정책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다.

정책에 대한 인지도의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만족도와 반대로 원장 집단의 인지도가 학부모의 인지도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특히 운영비 지원 정책(유치원 원장 3.25, 보육시설 시설장 3.18, 유치원학부모 2.24, 보육시설 학부모 2.25)이외에 보육료 지원(유치원 원장 3.46, 보육시설 시설장 3.62, 유치원학부모 3.06, 보육시설 학부모 3.16), 인건비 지원(유치원 원장 3.14, 보육시설 시설장 3.56, 유치원학부모 2.23, 보육시설 학부모 2.50), 표준보육과정 운영 지원(유치원 원장 3.19, 보육시설 시설장 3.36, 유치원학부모 2.31, 보육시설 학부모 2.57), 교사 교육지원(유치원 원장 3.15, 보육시설 시설장 3.24, 유치원학부모 2.35, 보육시설 학부모 2.47)에 대한 보육시설 시설장의 인지도는 다른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수요자 집단간의 차이를 보인다.

<표 IV-2-6> 수요자별 정책 인지도 1

단위: 점,명

		교육비/보육료 지원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표준교육/ 보육과정운영	교사 교육지원
유치원 원장	평균	3.46	3.14	3.25	3.19	3.15
	사례수	450	449	450	452	451
보육시설 시설장	평균	3.62	3.56	3.18	3.36	3.24
	사례수	456	455	450	456	454
유치원 학부모	평균	3.06	2.23	2.24	2.31	2.35
	사례수	418	416	416	413	415
보육시설 학부모	평균	3.16	2.50	2.25	2.57	2.47
	사례수	571	570	567	568	569
계	평균	3.32	2.85	2.71	2.85	2.79
	사례수	1895	1890	1883	1889	1889
F값		78.902***	307.318***	267.594***	210.447***	177.074***

1점: 매우 불만족스럽다 - 4점: 매우 만족한다

***P< 0.001

또한, 행정관리(유치원 원장 3.25, 보육시설 시설장 3.36, 유치원학부모 2.31, 보육시설 학부모 2.28), 재무 회계관리(유치원 원장 3.14, 보육시설 시설장 3.44, 유치원학부모 2.03, 보육시설 학부모 2.22), 평가인증 및 장학평가(유치원 원장 3.38, 보육시설 시설장 3.60, 유치원학부모 2.27, 보육시설 학부모 2.97), 지역 특수한 정책(유치원 원장 2.62, 보육시설 시설장 2.64, 유치원학부모 2.89, 보육시설 학부모 2.84) 및 재정 지원(유치원 원장 2.57, 보육시설 시설장 2.64, 유치원학부모 2.79, 보육시설 학부모 2.87)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수요자 집단간의 차이를 보이고 보육시설 시설장의 인지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학사 관리와 지역 특수한 정책 이외에 교육비 지원,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표준 교육과정, 교사 교육지원, 재무 회계관리 및 장학 제도에 대한 유치원 학부모들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표 IV-2-7> 수요자별 정책 인지도 2

단위: 점,명

		학사/ 행정관리	재무· 회계관리	장학평가	지역특수한 정책	지역특수한 재정지원
유치원 원장	평균	3.25	3.14	3.38	2.62	2.57
	사례수	446	451	448	406	403
보육시설 시설장	평균	3.36	3.44	3.60	2.64	2.64
	사례수	454	454	455	425	437
유치원 학부모	평균	2.31	2.03	2.27	2.89	2.79
	사례수	414	414	411	203	165
보육시설 학부모	평균	2.28	2.22	2.97	2.84	2.87
	사례수	566	565	570	256	240
계	평균	2.78	2.69	3.06	2.71	2.68
	사례수	1880	1884	1884	1290	1245
F값		316.570****	415.391****	286.827****	13.005****	11.455****

1점: 매우 불만족스럽다 - 4점: 매우 만족한다

****P < 0.001

정책 인지도가 높았던 영역은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지원과 보육시설평가인증 및 유치원 장학과 관련된 영역이다. 전반적으로 보육시설 시설장과 유치원장보다는 학부모들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육비와 유아교육비는 학부모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면이 넓고 보육시설평가인증과 유치원 장학 역시 학부모들에게 시설 및 기관운영과 관련하여 홍보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만족도가 높았던 영역은 보육시설장의 경우 표준보육과정 운영(2.78)과 보육료 지원(2.66)에서, 유치원 원장은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2.63)과 교사교육지원(2.4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부모들의 경우 보육시설 학부모들은 보육시설 평가인증(3.05)과 표준보육과정운영(2.88)이며 유치원학부모들은 학사 및 행정관리(2.89)와 유치원 장학(2.88)영역이다. 육아지원기관의 교육 및 보육과정 및 이와 연결된 교사교육 지원이나 장학 등에 대한 상대적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교육 및 보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질 관리가 일정 수준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반면, 학부모들에게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지원은 높은 인

지도에도 불구하고 집행의 공정성과 관련된 논란을 일으키는 영역으로 더욱 세밀한 사업수행이 요청되는 영역이라 볼 수 있다.

나. 지방정부 정책 만족도

보육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4개 영역 11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첫째,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보육료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둘째,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과 보육 과정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인 표준보육과정 운영 및 교사 교육, 셋째,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으로 행정관리, 재무·회계관리, 평가인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도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가를 측정하였다.

먼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했다.

<표 IV-2-8> 보육정책 수요자 만족도

단위: 점,명

	인지도와 만족도 차이	만족도 평균	보육료 지원	운영비 지원	서비스 지원	관리감독	지역정책/재정
서울	0.22	2.56	2.73	2.21	2.67	2.83	2.23
부산	0.21	2.64	2.71	2.52	2.76	2.83	2.24
대구	0.24	2.50	2.74	2.23	2.71	2.74	2.00
인천	0.12	2.67	2.78	2.46	2.77	2.96	2.27
광주	0.18	2.48	2.63	2.07	2.69	2.59	2.32
대전	0.31	2.57	2.71	2.24	2.74	2.74	2.32
울산	0.47	2.45	2.64	2.31	2.55	2.59	2.15
경기	0.24	2.62	2.76	2.30	2.83	2.76	2.37
강원	0.31	2.59	2.78	2.14	2.78	2.81	2.32
충북	0.35	2.49	2.65	2.02	2.76	2.67	2.19
충남	0.36	2.38	2.58	2.00	2.61	2.61	1.98
전북	0.19	2.51	2.70	2.25	2.62	2.74	2.17
전남	0.38	2.43	2.51	2.25	2.55	2.69	1.99
경북	0.2	2.59	2.69	2.29	2.69	2.85	2.32
경남	0.45	2.46	2.51	2.09	2.59	2.79	2.13
제주	0.29	2.58	2.55	2.23	2.72	2.84	2.36
계	0.27	2.54	2.67	2.23	2.69	2.76	2.21

1점:매우불만족스럽다 - 4점:매우만족한다

보육정책에 대해서 평균(2.54)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낸 지방정부는 인천시(2.67), 부산시(2.64), 경기도(2.62), 강원도(2.59), 경상북도(2.59), 제주도(2.58), 대전시(2.57), 서울시(2.56)이다. 반면, 전북(2.51), 대구시(2.50), 충북(2.49), 광주시(2.48), 경남(2.46), 울산시(2.45), 전남(2.43), 충남(2.38)은 평균 이하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보육정책 영역들에 대한 전체 만족도 평균은 관리감독 영역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지역 특수한 정책을 만들고 이에 따른 재정지원을 한다는 영역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교사 교육 지원 정책을 제외하고 모든 정책 영역에서 시설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만족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 시설장과 학부모들의 정책 만족도가 인건비 지원(2.34), 운영비 지원(2.36), 표준보육과정 운영(2.91), 교사교육지원(2.58), 정보의 적절한 제공(2.83), 행정관리(2.89), 재무회계관리(2.98), 보육시설 평가인증(3.04), 지역특수한 정책(2.39), 및 재정지원(2.32) 등 보육료 지원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표 IV-2-9> 보육정책에 대한 시설유형별 수요자 만족도

단위: 점,명

	보육료 지원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표준보육과정운영	교사 교육지원	정보	행정관리	재무·회계관리	평가인증	지역 특수한 정책	지역 특수한 재정지원	
국공립	평균	2.75	2.34	2.36	2.91	2.58	2.83	2.89	2.98	3.04	2.39	2.32
	사례수	306	237	222	239	232	248	222	220	275	191	188
법인	평균	2.63	2.17	2.18	2.83	2.54	2.74	2.69	2.70	2.89	2.18	2.17
	사례수	269	198	182	209	201	218	180	172	236	155	156
법인외	평균	2.78	2.33	2.25	2.76	2.42	2.64	2.65	2.74	2.79	2.12	1.94
	사례수	51	40	36	41	38	42	40	35	43	33	35
개인	평균	2.56	2.05	2.15	2.70	2.40	2.65	2.56	2.48	2.59	2.19	2.09
	사례수	169	138	119	130	133	137	120	129	148	112	116
가정	평균	2.67	2.19	2.23	2.82	2.47	2.72	2.56	2.52	2.65	2.18	2.07
	사례수	144	113	106	108	110	117	108	111	123	83	89
합계	평균	2.67	2.21	2.25	2.83	2.51	2.74	2.71	2.72	2.85	2.25	2.17
	사례수	939	726	665	727	714	762	670	667	825	574	584
F값	2739*	4344***	2387*	3399*	1830	2220*	7376***	14968***	12535***	3250*	4164**	

1점: 매우 불만족스럽다 - 4점: 매우 만족한다

***P< 0.001 **P< 0.01 *P< 0.05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법인의 보육시설의 시설장과 학부모들(2.78)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개인 보육시설 시설장과 학부모들의 정책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보육 정책에 대해서 원장과 부모의 만족도의 차이도 지역 특수한 정책 구성 및 재정 지원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정책 영역에서 보육시설 시설장보다는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보육료 지원과 지역 특수한 정책 운영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인건비 지원(2.38), 운영비 지원(2.42), 표준보육과정 운영(2.88), 교사교육지원(2.70), 정보의 적절한 제공(2.79), 행정관리(2.84), 재무회계관리(2.87), 보육시설 평가인증(3.05)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표 IV-2-10> 보육정책에 대한 수요자 집단별 만족도

단위: 점,명

		보육료 지원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표준보육과정운영	교사교육지원	정보	행정관리	재무·회계관리	평가인증	지역 특수한 정책	지역 특수한 재정지원
시설장	평균	2.66	2.10	2.13	2.78	2.37	2.70	2.64	2.64	2.67	2.21	2.14
	사례수	434	432	408	410	418	424	425	437	434	358	364
부모	평균	2.67	2.38	2.42	2.88	2.70	2.79	2.84	2.87	3.05	2.30	2.22
	사례수	522	302	267	329	307	351	256	240	405	225	229
합계	평균	2.67	2.21	2.24	2.83	2.51	2.74	2.71	2.72	2.85	2.25	2.17
	사례수	956	734	675	739	725	775	681	677	839	583	593
	F값	.063	28.581***	27.981***	6.619*	44.375***	4.466*	15.820***	17.312***	62.321***	2.150	1.958

1점: 매우 불만족스럽다 - 4점:매우 만족한다

***P< 0.001 **P< 0.01 *P< 0.05

보육정책에 대한 수요자들은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이 낮은 편이다. 수요자들에게 이와 같은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현재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한 요인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보육시설 시설장들은 지역별로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중앙정부의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현재 지방정부의 보육정책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에 시·도의 재정능력 또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평가했고, 서울과 경기의 경우는 실무담당 공무원의 의지가 영향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보육정책을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미치는 데에 바람직한 요소가 무엇이나
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지역의 보육시설 시설장들이 자신들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더불어 여전히 중앙정부의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통일적인 정책이
집행되기를 기대하거나 전문가/학자 집단의 개입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여줬다.
바람직한 영향력 요소에 대해서도 서울과 경기의 보육시설 시설장은 중앙정부 정책
가이드라인보다 전문가/학자 또는 기타 다른 영향력 요소가 중요해졌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보여줬다. 이 밖에도 충북과 전북 역시 중앙정부 정책 가이드라인 보다
전문가/학자의 영향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표 IV-2-11> 정책 결정요인(다중응답, 보육시설 시설장)

	현재 영향력	바람직한 영향력
서울	중앙정부 정책, 실무담당 공무원	보육시설 시설장, 전문가/학자
부산	중앙정부 정책, 시 재정능력	보육시설 시설장, 중앙정부 정책
대구	중앙정부 정책, 시 재정능력	중앙정부 정책, 보육시설 시설장
인천	시 재정능력, 중앙정부 정책	중앙정부 정책, 보육시설 시설장
광주	중앙정부 정책, 시 재정능력	중앙정부 정책, 보육시설 시설장
대전	중앙정부 정책, 시 재정능력	보육시설 시설장, 중앙정부 정책
울산	중앙정부 정책, 시 재정능력	중앙정부 정책, 보육시설 시설장
경기	실무담당공무원, 중앙정부 정책정책	보육시설 시설장, 기타
강원	중앙정부 정책, 도 재정능력	보육시설 시설장, 중앙정부 정책
충북	중앙정부 정책, 도 재정능력	보육시설 시설장, 전문가/학자
충남	중앙정부 정책, 도 재정능력	보육시설 시설장, 중앙정부 정책
전북	도 재정능력, 중앙정부 정책	보육시설 시설장, 전문가/학자
전남	중앙정부 정책, 도 재정능력	중앙정부 정책, 보육시설 시설장
경북	중앙정부 정책, 도 재정능력	보육시설 시설장, 중앙정부 정책
경남	중앙정부 정책, 도 재정능력	보육시설 시설장, 중앙정부 정책
제주	중앙정부 정책, 도 재정능력	중앙정부 정책, 보육시설 시설장

* 421 사례의 1-3순위 응답결과

동일한 질문을 보육시설 학부모에게 한 결과도 유사하다. 현재 가장 강력한 영향
력을 행사하는 요인으로는 지방정부의 재정능력과 중앙정부의 정책 가이드라인을
꼽았다. 강원 지역에서만 현재 정책을 결정하는데에 도의 재정 능력과 더불어 보육

시설 시설장 또는 단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향후에 가능하다면 누가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학자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인천, 대전, 강원, 전북을 제외한 12개 지역에서 학부모 본인 또는 학부모 단체의 영향력이 중요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표현했다. 4개 지역에서는 보육시설 시설장, 재정능력이나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표 IV-2-12> 정책 결정요인(다중응답, 보육시설 학부모)

	현재 영향력	바람직한 영향력
서울	시 재정능력, 중앙정부 정책	학부모또는학부모단체, 전문가/학자
부산	시 재정능력, 중앙정부 정책	전문가/학자, 학부모또는학부모단체
대구	중앙정부 정책, 시 재정능력	학부모또는학부모단체, 전문가/학자
인천	시 재정능력, 중앙정부 정책	전문가/학자, 보육시설 시설장
광주	중앙정부 정책, 시 재정능력	학부모또는학부모단체, 전문가/학자
대전	중앙정부 정책, 시 재정능력	전문가/학자, 중앙정부 정책과 보육시설 시설장
울산	중앙정부 정책, 시 재정능력	학부모 또는 학부모단체와 전문가/학자
경기	중앙정부 정책, 도 재정능력	학부모 또는 학부모단체, 전문가/학자
강원	도 재정능력, 보육시설 시설장 또는 단체	전문가/학자, 도 재정능력
충북	중앙정부 정책, 도 재정능력	보육시설 시설장, 학부모 또는 학부모단체
충남	중앙정부 정책, 도 재정능력	학부모또는학부모단체, 전문가/학자
전북	도 재정능력, 중앙정부 정책	전문가/학자, 보육시설 시설장
전남	중앙정부 정책, 도 재정능력	전문가/학자, 학부모또는학부모단체
경북	도 재정능력, 중앙정부 정책	전문가/학자, 학부모 또는 학부모단체와 보육시설 시설장
경남	도 재정능력, 중앙정부 정책	학부모또는학부모단체, 전문가/학자
제주	도 재정능력, 중앙정부 정책	학부모또는학부모단체, 전문가/학자, 보육위원회

* 493 사례의 1-3순위 응답결과

정책 결정요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평가 결과는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이나 영유아를 시설에 보내는 학부모들 모두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사업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역의 정책이 결정되고, 그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는 지방정부의 재정 능력에 따라서 제약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 시도교육청 정책 만족도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4개 영역 10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먼저, 만족도 영역은 첫째, 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유아교육비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둘째, 유치원 관련 서비스 지원으로 교육과정 개발/보급과 교사 연수 셋째, 관리 감독으로 학사 행정관리, 재무회계관리, 장학 및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도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가를 측정하였다. 또한 동일한 문항에 대해서 인지도 역시 측정하였다.

<표 IV-2-13> 유아교육정책 수요자 만족도

단위: 점,명

	인지도와 만족도 차이	만족도 평균	교육비 지원	운영비 지원	서비스 지원	관리감독	지역정책/재정
서울	0.31	2.49	2.51	2.29	2.62	2.69	2.23
부산	-0.38	3.11	2.83	2.82	3.13	3.34	3.17
대구	0.05	2.70	2.61	2.36	2.96	2.90	2.52
인천	0.33	2.77	2.89	2.54	2.88	2.89	2.67
광주	1.6	2.41	2.25	1.85	2.77	2.83	2.07
대전	0.21	2.66	2.68	2.33	2.87	2.82	2.52
울산	0.15	2.92	2.53	2.65	3.10	3.26	2.68
경기	0.03	2.56	2.53	2.25	2.77	2.74	2.40
강원	-0.02	2.74	2.64	2.51	3.00	2.88	2.56
충북	0.17	2.62	2.42	2.38	2.70	2.87	2.48
충남	-0.02	2.69	2.70	2.38	2.73	2.94	2.57
전북	-0.03	3.10	3.09	2.75	3.12	3.22	3.25
전남	0.08	2.92	2.55	2.51	3.00	3.26	2.92
경북	0.45	2.60	2.18	2.44	2.69	2.96	2.36
경남	0.28	2.43	2.29	2.36	2.49	2.67	2.15
제주	0.1	3.10	3.00	2.58	3.06	3.45	3.19
계	0.21	2.72	2.59	2.44	2.85	2.96	2.57

1점: 매우 불만족스럽다 - 4점:매우 만족한다

다음으로, 교육과정개발 및 보급 정책을 제외하고 모든 정책 영역에서 시설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만족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국공립유치원

및 법인유치원 원장과 학부모들은 정책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표 IV-2-14> 시설유형별 유아교육 만족도

단위: 점,명

		교육비 지원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교육과 정개발 보급	교사 연수	학사· 행정 관리	재무· 회계관리	장학· 평가	지역 특수한 정책	지역 특수한 재정지원
국공립	평균	2.64	2.81	2.83	2.98	2.90	3.00	2.91	2.94	2.75	2.67
	사례수	297	247	260	263	259	259	248	257	235	234
법인	평균	2.90	2.24	2.50	3.13	3.02	3.58	3.55	3.67	3.05	2.95
	사례수	63	49	50	48	50	50	47	48	44	43
사립	평균	2.50	2.02	2.21	2.79	2.61	2.81	2.79	2.88	2.43	2.24
	사례수	422	325	316	322	328	312	287	310	275	286
합계	평균	2.58	2.35	2.49	2.89	2.76	2.95	2.90	2.96	2.61	2.47
	사례수	782	621	626	633	637	621	582	615	554	563
F값		3.615**	22.535****	14.184****	2.264	4.689*	7.173**	5.540**	6.201**	4.469**	6.986**

1점: 매우 불만족스럽다 - 4점:매우 만족한다

****P< 0.001 ***P< 0.01 **P< 0.05

반면, 사립 유치원 원장과 학부모들은 유아교육비 지원(2.50), 인건비 지원(2.02), 운영비 지원(2.21), 교육과정 개발/보급(2.79), 교사 연수(2.61), 학사 행정관리(2.81), 재무·회계관리(2.79), 장학 및 평가(2.88),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정책 산출(2.43), 지역적 특성에 적절한 재정 지원(2.24) 등 모든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다.

<표 IV-2-15> 수요자별 유아교육 만족도

단위: 점,명

		교육비 지원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교육과정 개발· 보급	교사연수	학사· 행정관리	재무· 회계관리	장학· 평가	지역 특수한 정책	지역 특수한 재정지원
원장	평균	2.45	2.10	2.27	2.69	2.53	2.69	2.65	2.68	2.34	2.18
	사례수	424	407	420	412	426	410	408	428	370	376
부모	평균	2.73	2.82	2.97	3.29	3.27	3.51	3.52	3.60	3.22	3.09
	사례수	378	227	219	233	226	226	187	203	197	197
합계	평균	2.58	2.36	2.51	2.91	2.79	2.98	2.92	2.98	2.64	2.50
	사례수	802	634	639	645	652	636	595	631	567	573
F값		10.539*	38.183****	36.382****	28.687****	47.503****	53.344****	47.768****	56.959****	40.336****	44.645****

1점: 매우 불만족스럽다 - 4점:매우 만족한다

****P< 0.001 ***P< 0.01 **P< 0.05

유아교육정책에 대해서 원장과 부모의 만족도의 차이는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육과정 개발과 보급(3.29), 교사 연수(3.27), 학사행정관리(3.51), 재무회계관리(3.52) 등 유치원 교육과정 및 운영과 관련된 정책 영역에 대해서 모두 만족한다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유아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시설 운영자와 학부모들의 만족도의 차이는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요자들에게 이와 같은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현재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한 요인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유치원 원장들은 지역별로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중앙정부의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현재 지방정부의 보육정책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 시도 교육청의 재정능력 또는 시도의 교육위원회나 실무담당공무원의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한 지역들이 있다. 강원도의 경우는 유치원장들의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표 IV-2-16> 정책 결정요인(다중응답, 유치원 원장)

	현재 영향력	바람직한 영향력
서울	중앙정부 정책, 시 재정능력과 교육위원회	중앙정부 정책정책, 학부모 또는 학부모단체
부산	시 재정능력, 중앙정부 정책	학부모또는학부모단체, 전문가/학자
대구	중앙정부 정책,시 재정능력	중앙정부 정책, 유치원장
인천	중앙정부 정책,실무담당공무원	실무담당공무원, 중앙정부 정책정책
광주	시 재정능력, 중앙정부 정책	중앙정부 정책정책, 전문가/학자
대전	중앙정부 정책, 시 재정능력	중앙정부 정책정책, 전문가/학자
울산	중앙정부 정책, 시 재정능력	시 재정능력, 전문가/학자
경기	중앙정부 정책, 도 재정능력	중앙정부 정책, 유치원장
강원	중앙정부 정책, 도 재정능력과 유치원장	도 재정능력, 유치원장
충북	중앙정부 정책, 도 재정능력	중앙정부 정책정책, 교육위원회와 유치원장과 학부모
충남	중앙정부 정책, 교육위원회	중앙정부 정책, 유치원장
전북	중앙정부 정책, 교육위원회	유치원장, 중앙정부 정책
전남	중앙정부 정책, 도 재정능력	유치원장, 중앙정부 정책
경북	중앙정부 정책, 실무담당공무원	중앙정부 정책, 실무담당공무원
경남	중앙정부 정책, 도 재정능력	중앙정부 정책, 유치원장
제주	중앙정부 정책, 도지사	중앙정부 정책, 도지사

* 428 사례의 1-3순위 응답결과

유아교육정책을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미치는 데에 바람직한 요소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9개 지역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통일적인 정책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줬다. 유치원장 본인의 영향력이 커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준 지역이 5 개의 지역인 반면, 유치원장 보다 학부모 또는 학부모단체의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평가한 지역도 2개 지역이 있다. 반면, 전문가나 학자의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평가한 지역은 4개 지역이다.

동일한 질문을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한 결과, 13개 지역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현재의 정책이 결정되고 있고, 여기에 교육위원회나 시도교육청의 재정적 능력에 따라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평가를 하였다.

<표 IV-2-17> 정책 결정요인(다중응답, 유치원 학부모)

	현재 영향력	바람직한 영향력
서울	중앙정부 정책, 교육위원회	전문가/학자, 학부모또는학부모단체
부산	시 재정능력, 교육위원회	전문가/학자, 학부모또는학부모단체
대구	교육위원회, 중앙정부 정책정책	전문가/학자, 학부모또는학부모단체
인천	중앙정부 정책, 시 재정능력	전문가/학자, 학부모또는학부모단체과 유치원장
광주	유치원장, 시 재정능력	중앙정부 정책정책, 전문가/학자
대전	교육위원회, 유치원장	전문가/학자, 학부모또는학부모단체
울산	중앙정부 정책, 교육위원회	전문가/학자, 학부모또는학부모단체
경기	교육위원회, 시 재정능력	전문가/학자, 학부모또는학부모단체
강원	중앙정부 정책정책, 도 재정능력	전문가/학자, 학부모또는학부모단체
충북	도 재정능력, 중앙정부 정책 정책	중앙정부 정책정책, 학부모또는학부모단체와 전문가/학자
충남	도 재정능력, 중앙정부 정책 정책	전문가/학자, 학부모또는학부모단체
전북	유치원장, 중앙정부 정책정책과 교육위원회	중앙정부 정책정책과 학부모또는학부모단체
전남	중앙정부 정책정책, 도 재정능력	중앙정부 정책정책, 전문가/학자
경북	중앙정부 정책정책, 교육위원회	전문가/학자, 학부모또는학부모단체
경남	중앙정부 정책정책, 교육위원회	전문가/학자, 학부모또는학부모단체
제주	중앙정부 정책정책	학부모또는학부모단체, 전문가/학자

* 374 사례의 1-3순위 응답결과

대전과 전북의 유치원 학부모들은 유아교육정책 결정에서 유치원 원장의 영향력이 크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또한 누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에 대해서는 광주와 전남을 제외한 14개 지역에서 학부모 본인 또는 학부모 단체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치원 원장과 다르게 유치원 학부모들은 본인들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지역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전문가나 학자들이 영향을 줄 것을 희망하였다.

V.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지원의 균형화

지방자치단체들의 육아지원 사업 활성화는 정책 수행의 효율성과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지역 간 격차를 완화시키면서도 지역 내 특수한 요구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장기적인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다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개선책을 중심으로 육아지원 활성화의 방법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가. 모든 영유아대상 비용지원의 균형화 모색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영유아 대상 비용지원은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과 인건비 미지원 보육시설,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에 따라 4가지 형태가 각각 다르다. 즉, 영유아가 어떤 형태의 기관에 취원하고 있는냐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비용 지원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1인당 비용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 차별적이기는 하지만 인건비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투자되는 비용은 인건비지원시설 이용 영유아에 비하여 연령별로 75%에서 85%수준이다. 지방정부별로 월 보육비 총액이 인건비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 간에 0세 아동을 기준으로 영유아 1인당 평균 196천원 수준의 차이가 있다. 인건비 지원액에서는 인건비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간에 0세 아동을 기준으로 영유아 1인당 평균 35천원 수준으로 차이가 있다. 운영비도 시설 간 아동 1인당 평균 3천여원이 환경개선비는 아동 1인당 평균 5천원의 차이가 나타났다. 평가인증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는 가장 지원이 많은 지역과 가장 지원이 작은 지역간에 아동 1인당 약 4천원의 차이가 있다.

연구 결과와 같이 인건비 지원시설이 인건비 미지원시설보다 뚜렷하게 영유아 1

인당 보육비용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들이 어떻게 특수 시책사업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다시 지역간 비용의 차이가 있다. 인건비 지원시설에 많은 지원을 하는 지방정부와 그렇지 않은 지방정부 간에는 0세 아동을 기준으로 영유아 1인당 인건비는 약 200천원의 차이가 있다. 반면, 인건비 미지원시설의 0세 아동을 기준으로 영유아 1인당 인건비는 약 60천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인건비 지원여부에 따른 시설간 지역간 차이는 영유아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보육시설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교사의 안정성과 보육시설의 환경 수준이 차별적으로 경험될 가능성을 크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유치원에서는 더욱 두드러진다. 교육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 국공립유치원과 원비가 자율화되어 있는 사립유치원은 본질적으로 유아 1인당 투입비용 비교가 불가능하다. 더욱이 국공립유치원이라 하더라도 정원을 충족시키는 유치원과 적은 수의 취원아가 있는 유치원 간의 비용을 비교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지역간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와 같이 육아지원기관 간에 또한 지역간에도 뚜렷한 차이를 낳게 하는 아동 1인당 비용의 차이는 육아지원기관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투자 비용에 대한 밀도있는 분석에 기초하여 연령별 영유아에 대한 투자비용의 균형을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나. 지방정부 육아지원 정책 활성화 방안 모색

일본, 미국 등의 국가가 중앙의 지침에 따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독립적인 육아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육아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주요정책은 중앙정부가 관장하고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중앙정부의 정책 가이드라인이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의 실제 사업분석에서도 아직까지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 수요자들은 정책 수립시 육아지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수렴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단위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시책 사업을 살펴보면 보육정책 담당 공무원들에 의해 기획되고, 시·도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된다. 시·도 보육담당 공무원 회의를 통해서 시·도 사업이 군·구에 전달되고, 군·구 역시 담당 공무원들에 의해 기획되고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개별 시·도와 군·구 담당 공무원들은 시설연합회의 건의사항을 참조하기도 하고 관리감독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서 사업을 기획한다. 하지만 시·도 차원에서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 사업이 그 적용 범위가 넓어 지방정부 내 군·구별 차이를 줄이는 반면 군·구의 특수한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

특수시책은 해가 거듭될수록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는 경향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경기도의 경우 2008년 기초자치단체별 특수 사업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시·도 특수시책을 대폭 축소할 경우가 있다. 특수시책 사업의 수는 특수시책예산 총액과 비례하지는 않지만,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지방정부 보육예산에서 특수시책이 차지하는 비율과는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시·도 전체에 균등하게 지원하는 특수시책 사업이 많은 지방정부는 서울(25개), 인천(24개), 대전(21개), 제주(17개)이며 서울은 군·구의 특수시책도 많은 반면, 인천과 대전은 군·구의 시책이 평균 1-2개이고 제주는 도 특수시책으로 운영한다. 반면 광주(6개), 전남(7개)은 시·도 차원에서 수행되는 특수시책 사업의 보육예산대비 비율도 상대적으로 작고 군·구 역시 평균 1-2개의 특수시책을 운영한다.

시·도 차원의 특수시책은 특수보육시설(장애아영아전담)이나 특수보육종사자에 대한 지원이나 시간 연장형(24시간, 야간)보육시설 및 관련 종사자 지원, 법정 저소득층 아동이 보육 시설에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사업들 중 한두 개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여성지원이나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또는 보육시설 홍보 등의 지방정부별 역점 사업들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군·구의 특수시책은 평균 2-3개이나 서울이 평균 10개, 경기도가 평균 9개, 경남이 평균 7개이다. 군·구 특수시책 사업에는 관내 보육시설종사자 연수 또는 행사 지원, 관내 보육시설 영·유아 행사 지원 사업들을 기본으로 하고 그 밖에 시·도 특수시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들 -재무회계 프로그램 사용료, 평가인증 참여 또는 통과시설에 대한 인센티브-과 시·도 특수시책 사업과 중복되는 각종 치우개선비, 환경개선비, 운영비 지원 사업들이 있다.

그런 점에서 시·도 특수시책과 군·구 특수시책 사업간의 기능분담 및 역할 조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는 중복 지원을 통한 불균등 지원을 완화시킬 수 있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펼쳐져 있는 각종 지원사업을 정리하되, 영유아 1인당 비용에 따라 지원 내역을 항목과 항목별 지원액,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원기능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군·구 특수시책 보다는 시·도 특수시책 사업의 증대는 새로운 보육 수요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적용범위가 넓어 지역 내 형평성을 증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시·도 역점사업과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형 보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 및 군·구 별로 산발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시설 운영비 관련 특수시책들을 종합하여 통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군·구 특수시책 사업은 지역 내 취약점을 개선하는 소규모의 시설 지원 및 학부모에 대한 서비스 등의 사업들을 특화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지역 내 형평성과 수요자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수요자들이 응답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요자 요구에 기초한 군구 정책이 계획되고 시도가 이를 지원하며 그 다음단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도를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중앙정부 정책이 우선되고 그 다음으로 시도 정책과 군구 정책이 이어지는 단계에서 수요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효성있는 사업 수행을 위해서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기능분담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정책 결과 분석을 통한 정책 효율성 증진 방안의 모색

지방자치단체가 만족할만한 정책 효과를 낳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만족할만한 예산액과 수요자의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완전한 참여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 예산은 제한적이고 모든 수요자의 참여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 투입과 서비스 향상의 적정한 결합점을 찾아내고 개선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과 만족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지원정책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가. 수요자 참여에 근거한 정책 추진 강화

영·유아 1인당 비용 또는 유아 1인당 지원액과 수요자 만족도는 명확한 비례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영·유아 1인당 비용에서 인건비 지원시설에 대한 비용과 관련 시설장의 만족도가 일정한 연관성을 보이거나 절대액수의 과다보다는 미지원 시설에 비해서 비용의 상대적 우세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학부모 만족도는 더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수요자 만족도는 지방자치단체별 차이보다는 수요자 집단별- 유치원 원장, 학부모와 보육시설 시설장, 학부모 - 차이가 더욱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지방정부와 시도 교육청은 지역 특수한 정책적 요구들을 수용하여 자체의 육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나가고 있지만 수요자들은 현재 지역의 육아지원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로 중앙정부의 정책 가이드라인을 꼽았고 지방정부 또는 시도 교육청이 지역 요구를 구체화한 특화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알고 있지 못한 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집단은 전반적으로 원장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만족도 수준은 높으나, 보육비 지원 및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만은 상대적인 만족도 수준이 낮다. 또한 원장 집단보다 학부모 집단의 정책 인지도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다. 반면 학부모들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체험되는 보육료나 유아교육비 지원과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만족도는 기대 수준에 따른 평가이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인지도와 만족도가 양의 관계를 갖는다고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행 주체들이 수요자들에게 정책과 사업 내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나. 효율적 자원 배분과 수요자 만족도의 조화를 통한 정책 집행 능력 제고

육아서비스수요자 측면에서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를 만족도 평가로, 공급자 측면에서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효율성으로 각각 측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를 통합적으로 접근하였다. 연구결과 포락으로 구분되어진 단위내에서 비교하였을 때, 16개 보육서비스와 유아교육서비스 단위인 지방정부와 시도 교

육청의 상대적 효율성은 높게 측정되었다. 보육서비스의 경우 8개 지방정부가 시도 교육청의 경우 11개가 만족할만한 투입대 산출의 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아지원 정책을 수행하는 지방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한정된 예산으로 적정한 수준의 양적인 사업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고 지방정부의 경우 적정한 수준의 평가인증 시설을 보유함으로써 질적인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된 8개의 지방정부와 5개의 시도 교육청의 경우 예산을 집행하는 분야 간의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방정부의 효율성은 67%에서 99%에 이르는 반면, 시도 교육청의 경우는 64%에서 71%에 이른다. 지방정부 보다 시도 교육청이 효율적인 지역의 개수는 더 많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효율성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방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투입 변수의 산출 방식이 상이하여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도 교육청에서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간 예산 지원의 형평성이 다소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도 교육청의 취원을 제고에 사업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16개 자치단체별로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해 평균값과 F값을 이용한 차이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 성과평가결과와 통합한 결과 상대적 효율성과 만족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육아지원은 네 개의 집단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바람직한 상태로 효율성과 만족도가 모두 높은 집단은 3개 지방정부이고 만족도는 높으나 효율성이 낮은 경우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통제(control)가 필요한 집단은 5개 지방정부이다. 효율성은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경우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배려(consideration)와 함께 지역내에서 육아 서비스 수요에 대한 더 세밀한 파악이 필요한 집단은 5개 지방정부이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로 효율성과 만족도 모두가 낮은 상태로 양자를 모두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집단이 3개 지방정부이다. 유아교육정책과 관련하여 효율성과 만족도가 모두 높은 집단은 4개 시도교육청이고 만족도는 높으나 효율성이 낮은 집단은 2개 시도교육청이다. 효율성은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집단은 7개 시도교육청이다. 그리고, 효율성과 만족도 모두가 낮은 집단이 3개 시도교육청이다.

영유아에 대한 서비스의 저발전으로 인해 지금까지는 유아교육 및 보육 예산의

총량 변화에 관심을 두어왔다. 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요구에 대한 정책 대응성은 예산 총량의 증가분이 선행될 때에 만이 주관적인 만족도도 증대될 것이라고 가정되어 왔다. 하지만, 육아지원정책의 집행 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단순히 육아서비스의 수요나 공급의 격차뿐만 아니라 일정한 투입으로부터 최대의 산출을 생산하거나 일정한 산출에 대한 최소한의 투입으로부터 달성될 수 있다는 효율성의 차원과 서비스 질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가 종합적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 육아서비스 공급의 양이 많다고 해도 그 지역 영유아에 전달되어 나타나는 서비스의 산출이 적다면 육아 서비스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없으며, 반대로 육아 서비스 공급의 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더라도 지역 영유아에게 전달되어 나타나는 육아 서비스 산출이 높다면 육아 서비스 수준이 낮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육아 서비스의 지나친 공급경쟁은 투입만 확대시킬 뿐, 산출(performance)에는 이전과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별 지방자치단체들은 효율성과 만족도 모두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보육시설과 유치원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건위(2005). 기초자치단체정보화의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5(1), 29-56.
- 김성중(2000). 지방공공서비스의 생산 효율성 구조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2), 47-65.
- 김성중(2002). 지방정부 지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사회개발비지출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4(3), 699-718.
- 김성중 고승희(2001). 지방공공서비스의 생산 효율성 분석: 생활폐기물처리업무에 대한 DEA기법의 적용. **한국공공정책연구**. 10, 3-26.
- 김안제 외(2007). 『선진 지방자치 발전과 균형발전 연구』. 행정자치부.
- 김용민(2004). 자료포락분석(DEA)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관의 상대적 효율성 측정.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3), 133-53.
- 김재홍(2000). 도농통합행정구역 개편이 지방정부의 효율성 변화에 미친 영향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9(2), 48-66.
- 김재훈(2007). 사회투자와 정부 간 재정관계. 한국지방재정학회 특별세미나 발표 논문.
- 김중성 외(2000). 고객만족에 관한 실증적 연구. **마케팅논집**. 17, 77-98.
- 김철주 박보영(2006).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도래와 복지국가의 현대화. **사회복지정책**. 24, 317-336.
- 김호년(2006). 대구광역시의 보육정책에 관한 연구. **계명연구논집**. 124.
- 나고야시 어린이청소년국 자녀양육가정부 보육과(2006). 名古屋市の保育.
- 나고야시 어린이청소년국 자녀양육가정부 보육과(2006). 名古屋市の保育所長 研修會 資料.
- 나고야시(2007). 나고야시의 보육.
- 나정(2004).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에 대한 총괄적 진단과 분석:OECD의 관점**. 한국교육개발원.

- 남기범(2001).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행정서비스효율성의 변화: 쓰레기수거 서비스에 대한 DEA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0(4), 211-236.
- 남찬섭(2005).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의 필요성 및 방안. 인터넷 참여연대. www.peoplepower21.org/publication
- 남창우·최화식(2005).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및 과제. **한국정책과학회보**. 9(4), 385-407.
- 노화준(2004). **정책분석론**. 서울:박영사.
- 문경주·강성철(2004). DEA를 이용한 사회복지관의 효율성 측정. **한국행정논집**. 16(2), 333-62.
- 문병호(2005). 참여정부 지역사회 아동보육사업과 빈곤청소년 정책. 문병호 의원실.
- 문신용·윤기찬(2004). 사회복지서비스 생산성에 관한 통합적 분석: 자료포락분석(DEA)과 SERVQUAL기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8(6), 201-224.
- 민재형·김진한(1998). 부분 효율성 정보를 이용한 DEA 모형의 투입·산출 요소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과학회지**. 23(3), 75-90.
- 박경숙(2003). 참여정부 초기의 지방분권화 및 참여복지 정책방향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과제. **사회복지정책**. 16, 151-172.
- 박고운·박병현(2007).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 31(12).
- 박기관(2007).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도·농 통합의 성과와 결정요인분석: DEA의 효율성 측정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1(2), 65-93.
- 박창제(1996).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한 효율성 측정: 지방공사 의료원을 중심으로. **보건행정학회지**. 6(2), 91-114.
- 박혜자(2006). 전남의 복지현실과 복지재정 격차 해소방안.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정책원 정책 워크숍 주제 발표자료.
- 박희정·라휘문(2001).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모형의 개발 및 제도화 연구. **지방정부연구**, 5(2).
- 백종만(2006). 사회복지 지방분권 1년의 평가와 대안. 2006년 비평가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 보건복지부(2007).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시행계획.

- 서문희(2006). 일본 보육정책 출장보고서. 미발간 자료.
- 서문희(2007). 『호주의 보육정책』. 육아정책개발센터.
- 송건섭(2003).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평가시스템 구축: 객관적·주관적 평가기준의 통합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3(4).
- 송건섭·이곤수(2004). 광역자치단체의 성과평가: DEA와 SURVEY 방법론 적용. **한국행정학보**, 38(6), 179-200.
- 안상훈(2006). 사회서비스투자국가로의 전환논리: 하나의 비교사회정책학적 서설. 2006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 여성가족부(2004). 선진국 보육정책 실무연수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2008). 2008년 보육사업안내: 각 시도별 2008 특수시책사업현황.
- 오승은(2000). 지방자치단체 기업적 활동의 효율성 분석: 지방공영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 오현숙(2007). 우리나라 지방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비스 주체간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박사논문.
- 우양호·홍미영(2004). 운전면허서비스에 대한 성과평가 모형의 설계와 적용. **지방정부연구**, 8(1).
- 유금록(2000). 공공부문의 상대적 효율성 평가를 위한 자료포락분석. **전북행정학보**, 14(2).
- 유금록(2001). 공적연금제도의 관리효율성 측정. **한국행정학보**, 35(3).
- 유금록(2003). 한국과 일본의 국제행정의 효율성 비교. **한국행정학보**, 37(1), 95-118.
- 유금록(2004). **공공부문의 효율성 측정과 평가**. 서울:대영문화사.
- 유금록(2006). 공공부문의 효율성 평가를 위한 자료포락분석(DEA)에 있어서 효율적 의사결정단위들의 순위 분석. **행정논총**, 44(1), 155-85.
- 유희정(1999). 수요자 입장에서 본 보육정책평가. 한국여성개발원. 99연구보고서 240-13.
- 유희정(2004). 일본, 호주 출장보고서. 미발간 자료.
- 유희정(2006). 일본 보육정책 출장보고서. 미발간 자료.

- 유희정·김은설·유은영(2006).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보고. 2006-02.
- 윤경준(1996). DEA를 통한 보건소의 효율성측정. **한국정책학회보**, 5(1).
- 윤경준(1999). 공공부문 성과측정을 위한 DEA와 확률전선모형의 비교분석: 일선경찰서의 기술 효율성 측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2(4).
- 윤경준(2003). 공공부문 효율성 측정을 위한 DEA의 활용: 평가와 제언. **정부학연구**, 9(2), 7-31.
- 윤경준·최신용·강정석(2005). DEA를 통한 공공조직 벤치마킹 정보의 단계적 도출. **한국행정학보**, 39(2), 233-62.
- 윤기찬(2005). 사회복지서비스 능률성에 관한 비교·평가. **한국행정논집**, 17(1), 187-214.
- 윤영진(2006). 복지재정 분권화의 의의와 정책과제. 2006년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 윤영진·이인재·곽채기·김은정·김태일·박정수·이재원(2007). **복지재정과 시민참여**. 나남출판사.
- 윤홍식(2006).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한국사회복지의 과제: 사적 영역으로부터의 접근. 2006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 이광국·정하영(2004). 삶의 질 지수와 적정인구규모의 상관관계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22, 137-52.
- 이명숙(2005). 한국 보육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수원시 보육사업을 중심으로.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논문.
- 이상섭·김규덕(1998). 자료포락분석(DEA)에 의한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의 상대적 효율성 측정: 쓰레기수거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0(2), 169-187.
- 이상철·고수정·장철영(2006). 조직운영주체별 상대적 효율성 분석: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4(3), 179-205.
- 이원욱·김영오(2004).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질이 성과에 미친 영향. **행정논총**, 42(3), 53-71.
- 이은국 외(2003). **지방정부 생산성 측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집문당.

- 이재원(2007). 복지관련 지방재정의 최근 동향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
건복지동향, 9.**
- 이지영(2003). 보육시설의 재정지원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소재 구
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이창수(2007).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위한 보육정책의 발전방향 연구. 경희대 대학
원 박사논문.
- 이현주·유진영·권영혜(2007).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행정기능 재조정 방안.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이환범·송건섭·김병문(2005).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관리와 평가지표개발: 자료포락
분석(DEA)에 의한 효율성 측정.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4), 275-98.**
- 일본 후생성(2004). 아동, 자녀양육 응원플랜.
- 임동진·김상호(2000). DEA를 통한 지방정부의 생산성 측정: 인력재정과 공공서비스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4(4).**
- 임동진(2001).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한 지방공공 서비스의 생산성 측정과 준거집단
분석. **지방정부연구, 5(1), 49-70.**
- 임동진·김상호(2000). DEA를 통한 지방정부의 생산성 측정: 인력·재정과 공공서비
스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4(4), 217-34.**
- 전용수·최태성·김성호(2002). **효율성 평가를 위한 자료포락분석.** 인하대학교 출판
부.
- 정원주(2005). 보육조례 사례연구-2005년도에 개정된 경기도 보육조례를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15(2).
- 제갈돈 외 2인(200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운영성과 평가. **한국행정논집,
14(2).**
- 조형석·문상호(2007). 지방하수도사업의 효율성 평가: DEA와 Tier분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1(1), 123-51.
- 통계청(2007). 한국의 사회지표.
- 하혜수(1996). 지방정부의 정책산출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삶의 질 지표와 지역경
쟁력지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88). 도시생활의 질 측정 지표에 관한 연구.
- 日本 全國保育協議會(2003). 保育年譜.
- 日本 中央法規(2005). 保育所 運營 핸드북.
- 全國保育團體連絡會·保育研究所 編(2006). 2006 保育白書.
- Banker, R. D., Charnes, A. & Cooper, W. W.(1984). Some Models for Estimating Technical and Scale Inefficiencies in Data Envelopment Analysis. *Management Science* 30, 1078-1092.
- Boussofiane, A., Dyson, R. C. & Thanassoulis, E.(1991). Applied Data Envelopment Analysi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31, 1-15.
- Charnes, A., Cooper, W. & Rhodes, E.(1978). Measuring the 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Unit.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2(6).
- Child Care Bureau(2007).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Cooper, W. W., L. M. Seiford & K. Tone(2000). *Data Envelopment Analysis: A Comprehensive Text with Models, Applications, References and DEA-Solver Software*.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Cooper, W. W., L. M. Seiford & K. Tone(2005). *Introduction to Data Envelopment Analysis and its Uses with DEA-Solver Software and references*. New York: Springer.
- Information Center(2006). National Association for Regulatory Administration, & the National Child Care.
- Roser Steve(1990). *Performance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 London : Longman.
- Seiford, L. M. and Thrall, R. M.(1990). Recent Developments in DEA: The Mathematical Programming Approach to Frontier Analysis. *Journal of Econometrics*. 46(1), 7-38.

부 록

1. 보육시설장용 조사지
2. 보육시설부모용 조사지
3. 유치원장용 조사지
4. 유치원학부모용 조사지

어린이집 원장

시·도번호		지역번호		일련번호			

지방자치단체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현장에서 애 쓰시는 어린이집 원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육아정책개발센터(www.kicce.re.kr)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 육아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2008년도 연구과제로 『지방자치단체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육아지원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효과를 분석하여 육아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질문지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사·도 보육정책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및 개인정보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될 것이며,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8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이 옥

연구팀 : 유희정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이경숙 한신대학교 교수

최진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육아정책개발센터 「지방자치단체육아지원정책 연구팀」

최진 부연구위원 ☎02)730-3816 FAX 02)730-3317

e-mail : connectj@kicce.re.kr

II

정책결정요인

1. 귀 어린이집이 있는 지역의 보육정책에 영향력이 가장 컸다고 생각되는 요인 3가지는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영향력 1순위	영향력 2순위	영향력 3순위

2. 앞으로 정책추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요인 3가지는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바람직한 영향력 1순위	바람직한 영향력 2순위	바람직한 영향력 3순위

보 기	① 중앙정부 정책	② 시장/도지사	③ 시/도의 재정 능력
	④ 시/도 의회	⑤ 시/도 실무담당 공무원	⑥ 시/도 보육위원회
	⑦ 시설장	⑧ 학부모 또는 학부모단체	⑨ 보육 전문가 또는 학자
	⑩ 시/도 발간 신문·지역방송	⑪ 기타()	

III

보육정책의 성공을 위해 기타 요구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IV 귀 어린이집의 보육아동 현원과 시설 유형을 말씀해 주십시오.

1. 아동 현원	() 명							
2. 시설 유형	①국공립	<input type="checkbox"/>	②법인	<input type="checkbox"/>	③법인 외	<input type="checkbox"/>	④개인	<input type="checkbox"/>
	⑤부모협동	<input type="checkbox"/>	⑥가정	<input type="checkbox"/>	⑦직장	<input type="checkbox"/>		
3. 지역	①서울	<input type="checkbox"/>	②부산	<input type="checkbox"/>	③대구	<input type="checkbox"/>	④인천	<input type="checkbox"/>
	⑤광주	<input type="checkbox"/>	⑥대전	<input type="checkbox"/>	⑦울산	<input type="checkbox"/>	⑧경기	<input type="checkbox"/>
	⑨강원	<input type="checkbox"/>	⑩충북	<input type="checkbox"/>	⑪충남	<input type="checkbox"/>	⑫전북	<input type="checkbox"/>
	⑬전남	<input type="checkbox"/>	⑭경북	<input type="checkbox"/>	⑮경남	<input type="checkbox"/>	⑯제주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학부모

시·도번호		지역번호		일련번호			

지방자치단체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개발센터(www.kicce.re.kr)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 육아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2008년도 연구과제로 『지방자치단체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육아지원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효과를 분석하여 육아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질문지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님들의 시도 보육정책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및 개인정보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될 것이며,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8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이 옥

연구팀 : 유희정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이경숙 한신대학교 교수

최 진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육아정책개발센터 「지방자치단체육아지원정책 연구팀」

최 진 부연구위원 ☎02)730-3816 FAX 02)730-3317

e-mail : connectj@kicce.re.kr

II

정책 결정요인

1. 귀하가 사시는 지역의 보육정책에 영향력이 가장 컸다고 생각되는 사항 3가지는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순서대로 골라 적어주십시오

영향력 1순위	영향력 2순위	영향력 3순위

2. 앞으로 정책추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 3가지는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순서대로 골라 적어주십시오

바람직한 영향력 1순위	바람직한 영향력 2순위	바람직한 영향력 3순위

보기	①중앙정부 정책	②시장/도지사	③시/도의 재정 능력
	④시/도 의회	⑤시/도 실무담당 공무원	⑥시/도 보육위원회
	⑦시설장	⑧학부모 또는 학부모단체	⑨보육 전문가 또는 학자
	⑩시/도발간 신문·지역방송	⑪기타()	

III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IV 통계처리를 위한 인적사항

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2. 귀하가 사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25%;">①서울 <input type="checkbox"/></td> <td style="width: 25%;">②부산 <input type="checkbox"/></td> <td style="width: 25%;">③대구 <input type="checkbox"/></td> <td style="width: 25%;">④인천 <input type="checkbox"/></td> </tr> <tr> <td>⑤광주 <input type="checkbox"/></td> <td>⑥대전 <input type="checkbox"/></td> <td>⑦울산 <input type="checkbox"/></td> <td>⑧경기 <input type="checkbox"/></td> </tr> <tr> <td>⑨강원 <input type="checkbox"/></td> <td>⑩충북 <input type="checkbox"/></td> <td>⑪충남 <input type="checkbox"/></td> <td>⑫전북 <input type="checkbox"/></td> </tr> <tr> <td>⑬전남 <input type="checkbox"/></td> <td>⑭경북 <input type="checkbox"/></td> <td>⑮경남 <input type="checkbox"/></td> <td>⑯제주 <input type="checkbox"/></td> </tr> </table>	①서울 <input type="checkbox"/>	②부산 <input type="checkbox"/>	③대구 <input type="checkbox"/>	④인천 <input type="checkbox"/>	⑤광주 <input type="checkbox"/>	⑥대전 <input type="checkbox"/>	⑦울산 <input type="checkbox"/>	⑧경기 <input type="checkbox"/>	⑨강원 <input type="checkbox"/>	⑩충북 <input type="checkbox"/>	⑪충남 <input type="checkbox"/>	⑫전북 <input type="checkbox"/>	⑬전남 <input type="checkbox"/>	⑭경북 <input type="checkbox"/>	⑮경남 <input type="checkbox"/>	⑯제주 <input type="checkbox"/>
①서울 <input type="checkbox"/>	②부산 <input type="checkbox"/>	③대구 <input type="checkbox"/>	④인천 <input type="checkbox"/>														
⑤광주 <input type="checkbox"/>	⑥대전 <input type="checkbox"/>	⑦울산 <input type="checkbox"/>	⑧경기 <input type="checkbox"/>														
⑨강원 <input type="checkbox"/>	⑩충북 <input type="checkbox"/>	⑪충남 <input type="checkbox"/>	⑫전북 <input type="checkbox"/>														
⑬전남 <input type="checkbox"/>	⑭경북 <input type="checkbox"/>	⑮경남 <input type="checkbox"/>	⑯제주 <input type="checkbox"/>														
3. 귀댁 자녀의 연령과 이용 중인 기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만 세																
4. 귀댁의 자녀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① 국공립 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td> <td style="width: 50%;">② 법인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td> </tr> <tr> <td>③ 법인의외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td> <td>④ 개인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td> </tr> <tr> <td>⑤ 부모협동시설 <input type="checkbox"/></td> <td>⑥ 가정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td> </tr> <tr> <td>⑦ 직장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td> <td></td> </tr> </table>	① 국공립 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② 법인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③ 법인의외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④ 개인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⑤ 부모협동시설 <input type="checkbox"/>	⑥ 가정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⑦ 직장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① 국공립 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② 법인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③ 법인의외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④ 개인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⑤ 부모협동시설 <input type="checkbox"/>	⑥ 가정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⑦ 직장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5. 자녀의 어머니는 현재 일을 하고 계십니까?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① 전일제 <input type="checkbox"/></td> <td style="width: 50%;">② 시간제 <input type="checkbox"/></td> </tr> <tr> <td>③ 가족일도움(무급) <input type="checkbox"/></td> <td>④ 전업주부 <input type="checkbox"/></td> </tr> <tr> <td>⑤ 기타 <input type="checkbox"/></td> <td></td> </tr> </table>	① 전일제 <input type="checkbox"/>	② 시간제 <input type="checkbox"/>	③ 가족일도움(무급) <input type="checkbox"/>	④ 전업주부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input type="checkbox"/>											
① 전일제 <input type="checkbox"/>	② 시간제 <input type="checkbox"/>																
③ 가족일도움(무급) <input type="checkbox"/>	④ 전업주부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input type="checkbox"/>																	
6. 귀하는 미취학 자녀가 이용 중인 시설의 운영위원회 또는 부모모임에 참석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① 참석 <input type="checkbox"/></td> <td style="width: 50%;">② 모임있으나 불참 <input type="checkbox"/></td> </tr> <tr> <td>③ 모임없음 <input type="checkbox"/></td> <td>④ 모르겠음 <input type="checkbox"/></td> </tr> </table>	① 참석 <input type="checkbox"/>	② 모임있으나 불참 <input type="checkbox"/>	③ 모임없음 <input type="checkbox"/>	④ 모르겠음 <input type="checkbox"/>												
① 참석 <input type="checkbox"/>	② 모임있으나 불참 <input type="checkbox"/>																
③ 모임없음 <input type="checkbox"/>	④ 모르겠음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원장

시·도번호		지역번호		일련번호			

지방자치단체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현장에서 애 쓰시는 유치원 원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육아정책개발센터(www.kicce.re.kr)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 육아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2008년도 연구과제로 『지방자치단체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육아지원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효과를 분석하여 육아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질문지는 유치원 원장님들의 시도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및 개인정보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될 것이며,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8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이 옥

연구팀 : 유희정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이경숙 한신대학교 교수

최 진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육아정책개발센터 「지방자치단체육아지원정책 연구팀」

최 진 부연구위원 ☎02)730-3816 FAX 02)730-3317

e-mail : connectj@kicce.re.kr

II

정책결정요인

1. 귀 유치원이 있는 지역의 유아교육정책에 영향력이 가장 컸다고 생각되는 요인 3가지는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순서대로 골라 적어주십시오

영향력 1순위	영향력 2순위	영향력 3순위

2. 앞으로 정책추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요인 3가지는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순서대로 골라 적어주십시오

바람직한 영향력 1순위	바람직한 영향력 2순위	바람직한 영향력 3순위

보기	①중앙정부 정책	②시장/도지사	③시/도의 재정 능력
	④시/도 의회	⑤시/도 실무담당 공무원	⑥시/도 교육위원회
	⑦원장	⑧학부모 또는 학부모단체	⑨유아교육 전문가 또는 학자
	⑩시/도발간 신문·지역방송	⑪기타()	

III

유아교육정책의 성공을 위하여, 기타 요구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IV 귀 유치원의 아동 현원과 기관 유형을 말씀해 주십시오.

1. 아동 현원	() 명								
2. 기관 유형	①국공립	<input type="checkbox"/>	②법인	<input type="checkbox"/>	③사립	<input type="checkbox"/>			
3. 지역	①서울	<input type="checkbox"/>	②부산	<input type="checkbox"/>	③대구	<input type="checkbox"/>	④인천	<input type="checkbox"/>	
	⑤광주	<input type="checkbox"/>	⑥대전	<input type="checkbox"/>	⑦울산	<input type="checkbox"/>	⑧경기	<input type="checkbox"/>	
	⑨강원	<input type="checkbox"/>	⑩충북	<input type="checkbox"/>	⑪충남	<input type="checkbox"/>	⑫전북	<input type="checkbox"/>	
	⑬전남	<input type="checkbox"/>	⑭경북	<input type="checkbox"/>	⑮경남	<input type="checkbox"/>	⑯제주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학부모

시·도번호		지역번호		일련번호			

지방자치단체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개발센터(www.kicce.re.kr)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 육아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2008년도 연구과제로 『지방자치단체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육아지원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효과를 분석하여 육아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질문지는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님들의 사도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및 개인정보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될 것이며,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8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이 옥

연구팀 : 유희정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이경숙 한신대학교 교수

최진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육아정책개발센터 「지방자치단체육아지원정책 연구팀」

최진 부연구위원 ☎02)730-3816 FAX 02)730-3317

e-mail : connectj@kicce.re.kr

II

정책결정요인

1. 귀하가 사시는 지역의 유아교육정책에 영향력이 가장 컸다고 생각되는 요인 3가지는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순서대로 골라 적어주십시오

영향력 1순위	영향력 2순위	영향력 3순위

2. 앞으로 정책추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요인 3가지는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순서대로 골라 적어주십시오

바람직한 영향력 1순위	바람직한 영향력 2순위	바람직한 영향력 3순위

보기	①중앙정부 정책	②시장/도지사	③시/도의 재정 능력
	④시/도 의회	⑤시/도 실무담당 공무원	⑥시/도 교육위원회
	⑦원장	⑧학부모 또는 학부모단체	⑨유아교육 전문가 또는 학자
	⑩시/도발간 신문·지역방송	⑪기타()	

III

자녀의 유치원 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IV

통계처리를 위한 인적사항

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2. 귀하가 사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서울 <input type="checkbox"/>	②부산 <input type="checkbox"/>	③대구 <input type="checkbox"/>	④인천 <input type="checkbox"/>
	⑤광주 <input type="checkbox"/>	⑥대전 <input type="checkbox"/>	⑦울산 <input type="checkbox"/>	⑧경기 <input type="checkbox"/>
	⑨강원 <input type="checkbox"/>	⑩충북 <input type="checkbox"/>	⑪충남 <input type="checkbox"/>	⑫전북 <input type="checkbox"/>
	⑬전남 <input type="checkbox"/>	⑭경북 <input type="checkbox"/>	⑮경남 <input type="checkbox"/>	⑯제주 <input type="checkbox"/>
3. 귀댁 자녀의 연령과 이용 중인 기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만	세		
	① 국공립 유치원 <input type="checkbox"/>		② 법인유치원 <input type="checkbox"/>	
	③ 사립 유치원 <input type="checkbox"/>			
4. 귀댁의 자녀는 정부의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③ 잘 모르겠다 <input type="checkbox"/>			
5. 자녀의 어머니는 현재 일을 하고 계십니까?	① 전일제 <input type="checkbox"/>		② 시간제 <input type="checkbox"/>	
	③ 가족일도움(무급) <input type="checkbox"/>		④ 전업주부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input type="checkbox"/>			
6. 귀하는 미취학 자녀가 이용 중인 유치원의 부모모임에 참석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참석 <input type="checkbox"/>		② 모임있으나 불참 <input type="checkbox"/>	
	③ 모임없음 <input type="checkbox"/>		④ 모르겠음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 2008-02

지방자치단체별
육아지원 실태와 효과 분석

발행일 2008년 12월

발행인 조복희

발행처 육아정책개발센터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10층, 11층

전화: 02) 730-707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02) 313-7593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2396-34-9 93330